

의정백서

제4대 전반기 (2006. 7. 1. ~ 2008. 6. 30.)



울산광역시 울주군의의회

Contents



- 의원선서
- 의정방침
- 발간사
- 울주군의 상징물
- 울주군의 특산물
- 울주8경
- 4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 4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 울주군의회 의원 프로필
-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의원선서

의 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의정방향

- 신뢰받는 선진 의회상 구현
- 복지울주를 선도하는 의정실현
- 군정에 대한 발전적 대안 제시

주민의 바람

- 아름다운 울주의 자긍심 고양
- 더불어사는 지역공동체 실현
- 지역균형개발로 생활 불편 해소
- 도·농지역의 평균 소득 증대





존경하는 19만 군민 여러분!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1995년 민선자치의 실시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시간 만큼이나 우리 지방의회를 둘러싼 정치환경, 사회환경은 많이도 변해왔습니다.

특히, 의원 유급제와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등 우리 제4대 의회의 개원과 맞물린 정치환경의 변화는 지금껏 많은 변화의 단초 혹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 역시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보내는 반면 때로는 많은 오해의 씨앗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의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행복한 삶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즉,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을 닦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이지 않아도, 혹은 감시의 눈길을 보내지 않아도, 끊임없는 믿음을 보내준 민의를 바탕으로, 혹은 의원 개개인의 신념에 따라,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무에 따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고 또 한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19만 군민 여러분!

금번 의정백서는 지난 2년간 우리 의회가 어떠한 신념으로 19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대변해 왔고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해왔는지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 것인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나무는 키우는 자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 자란다고 합니다.

처음 일년, 또 일년, 그리고나서 일년, 그 다음 일년 이렇게 4년 여의 시간이 흐르고 난 5년 째에야 겨우 싹을 틔우고 그 싹은 단 몇주만에 수십 미터로 자라며 그 결실인 꽃은 수십년이 지나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과 신뢰로 기다려 주신다면 19만 군민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로 성장해 그 꽃을 찬란히 피울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 1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 장 서 우 규

울주군의 상징물



● **원형** 떠오르는 태양으로 군민의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머리 부분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가장 먼저 조명하고 주도해 나갈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군민의 저력을 태양으로 표현함

▲ **삼각형** 위를 향해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산의 당당한 모습에서 군민의 화합, 안정과 미래에 대한 거시적 사고와 일등 정신을 표현함

● **타원형** 울주군의 보고인 동해를 상징하고 세계화에 앞서가는 군민의 글로벌 정신을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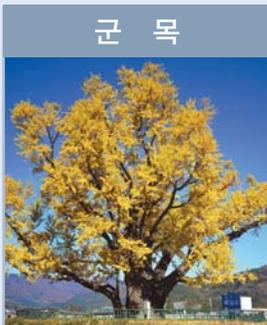
● **해뜨미**

'해'와 '뜨다'의 합성어로 "해가 뜨다"라는 의미임
울주군의 간절곳 일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연스러운 느낌에 발음이 쉽도록 부드러움을 추구한 것이 특징임



● **배꽃**

깨끗하고 고결하며, 품위있는 우리 조상과 의식을 함께 해 온 꽃으로, 순박함과 인정있고 부지런한 군민상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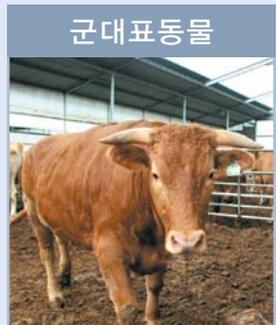
● **은행나무**

힘차고 바르게 뻗어가는 강직성은 즐기게 살아가는 굳건한 군민의 기상을 나타내며, 긴 수명은 울주군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



● **비둘기**

성질이 온순하며 애항심과 협동심이 강하므로 화합과 단결, 상부상조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군민상을 상징



● **한우**

한국의 고유종으로 체질이 건강하고 내병성이 강하며, 몸이 민첩하고 성질이 온순하여 순박하고 근면한 우리군 농촌 지역의 대표 동물임

울주군의 특산물

울주배



서생 으뜸난



상복오리쌀/우렁새약싸살/봉계항우쌀



울주단감



외고산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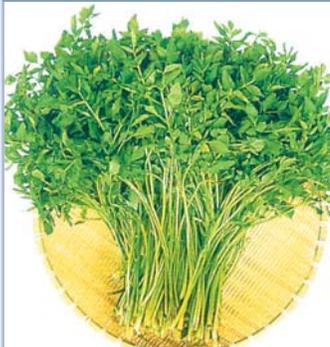
서생미역



방울토마토



언양 미나리



한우불고기





1 가지산 사계 울산의 산 중 최고봉(1,241m)이며 태화강의 발원지로서 우리나라의 산 중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고 사계절 모두 비경을 연출합니다.



2 간절곶 일출 우리나라에서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곳.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3 반구대 산세와 계곡,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절경으로 마치 거북 한 마리가 넘죽 엮드린 형상을 하고 있어 반구대라고 하며, 선사시대 유적인 국보 제285호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가 있어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4 신불산 억새평원 신불산은 광활한 면적의 억새평원인 사자평과 함께 영남알프스의 대표적 억새군락지로서 매우 아름다워 산림청이 선정한 한국의 명산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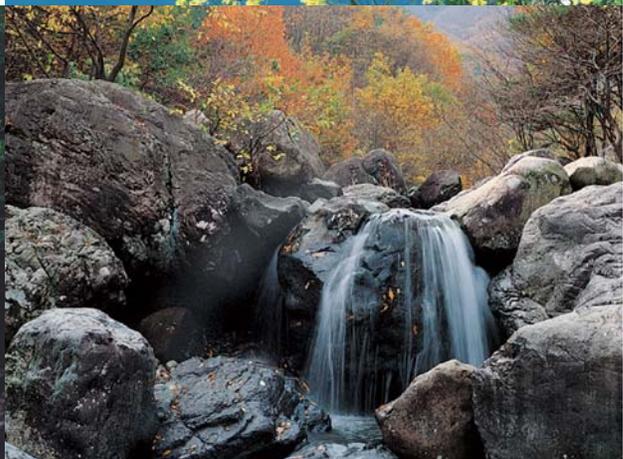
울주 8경



5 선바위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선바위는 기암절벽과 백룡담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입니다. 금강산의 한 봉우리를 옮겨 놓은 듯 검푸른 수면 위로 우뚝 솟은 선바위는 선비들의 울골은 절개처럼 당당한 위풍을 드러냅니다.



6 파래소 폭포 5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이로 인한 하얀 물보라와 산 그림자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며 배내골 깊은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절경입니다. 소의 돌레가 100m나 되며 소의 중심에는 명주실 한타래를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7 대운산 내원암 계곡 깊고 청량한 계곡 속의 수려한 연못과 폭포, 한번 누워보고 싶은 반석들을 품고 있는 비경입니다. 영남 제일의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원암이 있습니다.



8 작괘천 수백평이나 되는 바위가 오랜 세월의 물살에 깎여 움푹 움푹 파인 형상이 마치 술잔을 길어둔 것과 같다고 하여 작괘천이라 하며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릅니다.

제4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2006. 7. 1. ~ 2008. 6. 30.)

■ 의장단



의장 이 몽 원



부의장 송 정 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 충 제



간사 우 순 노



이 순 결



송 정 문



최 인 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 수 선



간사 권 영 호



한 성 율



서 우 규

■ 의회운영위원회

- ▶ 위원장 : 이순결
- ▶ 간 사 : 최인식
- ▶ 위 원 : 한성율, 권영호, 서우규, 우순노

제4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2008. 7. 1. ~)

■ 의장단



의장 서우규



부의장 이순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간사 이순걸



이몽원



조충제



우순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간사 최인식



한성울



이수선

■ 의회운영위원회

- ▶ 위원장 : 이몽원
- ▶ 간 사 : 최인식
- ▶ 위 원 : 한성울, 이수선, 조충제, 우순노

울주군의회의원 프로필

가 선거구 (온산, 온양, 서생)



이 몽 원
(1958.08.13.)

- 남창고등학교 졸업
- 울산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서라벌대학 재학(사회복지과)
- 온산읍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온산읍 농업경영인회장(전)
- 한농연 울산광역시지부 부회장(전)
- 법무부 범죄예방 보호관찰 위원
- 울주군 생활체육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울주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제3대 후반기 울주군의회의 의회운영위원장(전)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의 의장(전)

가 선거구 (온산, 온양, 서생)



이 순 결
(1961.05.20.)

- 울산공업고등학교 졸업
-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재학(사회복지 전공)
- 온양농협 이사(전)
-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하늘소 자연과학 유치원 이사장
- 울산지방검찰청 범죄예방협의회
청소년선도분과 이사
- 울주군 생활체육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간사
- 울주외고산용기축제추진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의 의회운영위원장(전)

가 선거구
(온산, 온양, 서생)



한 성 울
(1952.10.05.)

- 부산경상대학 수료
- 동국대학원 수료
- 온산읍 청년회 회장(전)
- 초대 울산시의회 의원(전)
- 제2대 울주군의회 의원(전)
- 온산읍 발전협의회 회장(전)
- 남울주 라이온스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부회장(전)·자문위원
- 남울주 발전협의회 상임부회장·사무국장
- 바르게살기 울주군협의회 부회장
- 울주산악회 부회장

나 선거구
(범서, 청량, 용촌)



송 정 문
(1960.11.15.)

- 울산공업고등학교 37회 졸업
- 울산전문대학 졸업(현 울산과학대학)
- 울산대학교 졸업(행정학사)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태화학원(홍명고)이사(울산광역시교육청선임)(전)
- 범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굴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울산국립대 울주군 유치위원회 위원(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울주군 등급판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3대 후반기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부의장

울주군의회의원 프로필

나 선거구 (범서, 청량, 용촌)



이 수 선
(1956.10.02.)

- 울산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수료
- 울산기능대학 MBA과정 수료
- 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운영위원(전)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 상임위원
- 뉴라이트연합 인권통일위원
- 범서중학교 천곡장학회 회장
- 범서중학교 운영위원장
- 범서읍체육회 고문
- 울주군 배드민턴 연합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전)

나 선거구 (범서, 청량, 용촌)



최 인 식
(1966.05.13.)

- 학성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청년위원회 울산광역시 부위원장
- 울주군 교육발전협의회 회장
- 울주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전)
- 구영초등학교 운영위원
- 범서 어린이·청소년문화센터 소장
- 울산국립대 울주군 유치위원(전)
- 울주군 보육심의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다 선거구
(언양,삼남,상북,
두동,두서,삼동)



권 영 호
(1958.12.26.)

- 울산경의고등학교 졸업
- 한농연 울산광역시지부 부회장(전)
- 향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상북면 청년회 회장(전)
- 상북면 이장협의회 회장(전)
- 상북농협 감사(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다 선거구
(언양,삼남,상북,
두동,두서,삼동)



서 우 규
(1955.02.20.)

-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 울산기능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두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 두동면 초대, 2대 청년회 회장(전)
- 박제상유적지 복원 추진위원(전)
- 두동면 체육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2대 후반기 울주군의회 운영위원장(전)
- 제3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전)
- 제3대 후반기 울주군의회 부의장(전)

울주군의회의원 프로필

다 선거구
(언양,삼남,상북,
두동,두서,삼동)



조 충 제
(1966.02.09.)

- 울산대학교 졸업
- 한국 자유총연맹 울산시군지부 언양청년회 사무국장, 감사, 부회장(전)
- 한국청년회의소 울주청년회의소 회장(전)
- 국회의원 비서(전)
- 울산광역시 수영협회 부회장(전)
- 한나라당 울산 울주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전)
-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울주군지부 언양상담실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 울산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언양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의 내무위원장(전)

비례대표



우 순 노
(1967.06.10.)

- 향도고등학교 졸업
- 서라벌대학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 한나라당 울주군 지구당 차세대 여성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포순이부단장
- 온산중학교 자모회장(전)
- 여성 유권자 연맹 이사
- 온산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울주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 재무
- 한나라당 울주군 당원협의회 홍보실장
- 울산지방법원 바로미(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울주군 중앙위원
- 울주군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단장

의정활동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제4대 울주군의회 개원 기념 (2006. 07. 04.)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본회의 활동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 활동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제4대 전반기 울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행정사무감사 활동



▲ 의원 정례 간담회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태풍 에위니아 피해지역 현장방문 (2006. 07. 11.)



▲ 의원 정보화 교육 (2006. 08. 29. ~ 09. 01.)



▲ PDP 공장증설 관련 삼성 SDI 방문 (2006. 08. 29.)



▲ 구·군 선출직 친선 체육대회 (2006. 11. 12.)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사회복지시설 위문



▲ 목도 상록수림 자연정화 활동 (2007. 01. 29.)



▲ 울주군청사 이전 벤치마킹을 위한 달성군의회 방문 (2007. 02. 22.)



▲ 나무심기행사 참여 (2007. 03. 23.)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두서화랑체육공원 준공식 참석 (2007. 04. 04.)



▲ 남창 기미 4.8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2007. 04. 08.)



▲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 기자회견 (2007. 04. 16.)



▲ 간절곶 스포츠파크 개장식 참석 (2007. 04. 22.)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경부고속철도공사 가축피해 관련 현장방문 (2007. 04. 24.)



▲ 두서 서하 수목원 조성 현장방문 (2007. 05. 03.)



▲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2007. 08. 20.)



▲ 울주군 서울사무소 방문 (2007. 08. 20.)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울주배 홍보 및 시식회 (2007. 09. 01.)



▲ 태풍 나리 피해대책 종합상황실 방문 (2007. 09. 16.)



▲ 대암댐 상류 국유지 불법훼손 현장방문 (2007. 09. 19.)



▲ 농산물 물류창고건립 현장방문 (2007. 10. 18.)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영어마을 조성관련 고리원자력본부 방문 (2007. 10. 30.)



▲ 온양운동장 및 용기마을주차장 부지 취득관련 현장방문 (2007. 11. 27.)



▲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현장방문 (2007. 11. 28.)



▲ 서생난 중국 첫 수출 기념행사 (2008. 01. 10.)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태안군 기름유출사고현장 자원봉사활동 (2008. 01. 25.)



▲ 울주군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2008. 02. 14.)



▲ 울산암각화전시관 공사현장 방문 (2008. 02. 15.)



▲ 언양 동부주공아파트 지반침하 현장방문 (2008. 03. 07.)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장방문 (2008. 05. 02.)



▲ 태화강 용선대회 참가 (2008. 0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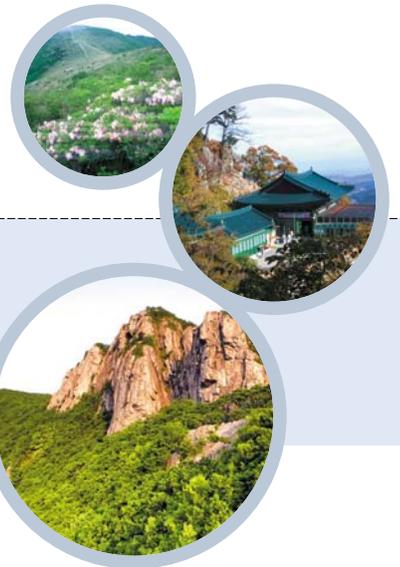
Contents

I. 일반현황

제1장 – 울주군 현황	45
제1절 울주군 연혁	47
제2절 울주군 기본현황	49
제2장 – 울주군의회 현황	57
제1절 울주군의회 연혁	59
제2절 울주군의회 일반현황	62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65

II. 울주군의회 의정활동

제1장 – 울주군의회 운영	77
제1절 회의개최 현황	79
제2절 안건처리 현황	81
제3절 의안처리 현황	94
• 제85회 임시회	94
• 제86회 임시회	97
• 제87회 제1차 정례회	101
• 제88회 임시회	107
• 제89회 제2차 정례회	121
• 제90회 임시회	140
• 제91회 임시회	148
• 제92회 제1차 정례회	165
• 제93회 임시회	174
• 제94회 임시회	183
• 제95회 제2차 정례회	195
• 제96회 임시회	221
• 제97회 임시회	228
• 제98회 임시회	243



제2장 –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261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3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65
•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69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0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2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74
•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76
•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0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81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3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85
제3장 – 행정사무감사	287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89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24

Ⅲ. 기타 의정활동

• 군정질문과 답변	359
• 4분 자유발언	405
• 의원 발의 조례	407
• 발로 뛰는 의정	412
• 뒤돌아보는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	421

Ⅳ. 부록

제4대 의원 후보자별 특표현황	427
------------------------	-----

제1편 | 일반현황



Ujugun Council

| 제1장 | 울주군 현황

| 제2장 | 울주군의회 현황



제 1 장

울주군 현황

제 1 절 • 울주군 연혁

제 2 절 • 울주군 기본현황

제1절 울주군 연혁

≫ 부족국가

- 삼한시대 진한에 속하였으며, 굴아화촌이라는 촌락 형성

≫ 삼국시대

- 신라5대 파사왕 때 굴아화촌에 현 설치
- 경덕왕 16년 이름을 하곡으로 고쳐 임관군에 속함

≫ 고려시대

- 성종 (979~995년) 별호를 학성도호부라 칭함
- 현종 19년(1018년) 울주로 최초 지정

≫ 조선시대

- 태종 13년(1413년) 울주를 울산으로 개칭
- 선조 31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
-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

≫ 근 대

- 1914. 3. 1. 언양군을 울산군에 통합
- 1931. 4. 1. 울산읍으로 승격

≫ 현 대

- 1962. 6. 1. 울산시 승격으로 울산시에서 분리, 울산군을 울주군으로 개칭
- 1963. 1. 1. 울주군 서생면을 동래군에 편입
- 1983. 2.15. 양산군 서생면이 울주군에 편입
- 1991. 1. 1. 울산군으로 명칭 변경
- 1995. 1. 1. 울산시·군 통합되어 울주구로 개칭

- 1995. 3. 2. 농소면이 읍으로 승격
- 1996. 2. 1. 온산면, 언양면이 읍으로 승격
- 1997. 7.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승격(농소읍, 강동면 복구 편입)
- 2001. 3. 1. 온양면, 범서면이 읍으로 승격

제2절 울주군 기본현황

1. 일반현황

(2008. 6. 30. 현재)

≫ 면적 및 행정구역

읍·면 별	면 적(km ²)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반
계	755.1	118	336	475	1,750
운 산 읍	37.446	13	39	17	139
연 양 읍	68.772	15	35	42	228
운 양 읍	63.940	10	34	45	246
범 서 읍	77.145	10	58	61	519
서 생 면	36.816	10	20	24	66
청 량 면	59.901	9	28	51	163
웅 촌 면	51.970	9	26	26	81
두 동 면	63.484	8	15	41	42
두 서 면	78.865	9	17	39	42
상 북 면	123.367	13	22	56	88
삼 남 면	31.055	5	26	45	111
삼 동 면	62.359	7	16	28	25

※ 울산광역시 : 1,057.1 km²

≫ 토 지 (총면적 : 755.1 km²)

지 목 별	면적(km ²)	지번수	지 목 별	면적(km ²)	지번수
전	23.2	35,155	공장용지	14.7	1,742
답	80.5	76,404	목장용지	6.7	1,289
임 야	532.1	47,361	도 로	18.6	41,049
대 지	15.4	34,855	잡 종 지	5.8	3,312
과수원	9.8	4,210	기 타	48.3	30,223

≫ 세대 및 인구

읍·면별	세대수	인 구 수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8,561	189,745	97,142	92,603	4,682	3,548	1,134
온산읍	8,551	22,652	12,114	10,538	1,584	1,288	296
언양읍	8,932	24,243	12,298	11,945	224	133	91
온양읍	7,703	22,342	11,371	10,971	264	171	93
범서읍	17,268	55,611	28,116	27,495	209	87	122
서생면	3,037	7,210	3,736	3,474	113	83	30
청량면	5,628	15,185	7,864	7,321	434	286	148
웅촌면	3,731	9,020	4,699	4,321	764	662	102
두동면	1,708	3,855	1,980	1,875	68	53	15
두서면	1,682	3,642	1,814	1,828	196	160	36
상북면	3,642	9,152	4,636	4,516	258	184	74
삼남면	5,791	14,907	7,537	7,370	326	229	97
삼동면	888	1,926	977	949	242	212	30

※ 주민등록상 인구임(울산광역시 : 385,442세대 / 1,120,249명)

2. 행정조직

(2008. 7. 28. 현재)

≫ 기 구

본 청	4국, 1실, 19과 (86담당)
의 회	1과 (3전문위원, 1담당)
읍 · 면	4읍, 8면 (51담당)

≫ 공무원 정원

(단위 : 명)

계	본청	의회	보건소	읍·면
732	448	16	68	200

≫ 직급별 정원현황

(단위 : 명)

계	일 반 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소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이하			
732	634	6	36	154	193	245	79	12	1

≫ 연도별 변동사항(2008.1. 현재, 현원)

(단위 : 명)

2000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77	575	572	584	630	672	722	734	744

3. 예산규모

(2008년 당초예산 기준)

≫ 2008년도 예산 363,997백만원 · 재정자립도 56.8%

○ 일반회계 ⇒ 323,361백만원

〈 세 입 〉	
계	: 323,361백만원(100%)
• 지방세	: 136,351 (42.1%)
• 세외수입	: 47,582 (14.7%)
• 지방교부세	: 30,000 (9.3%)
• 재정보전금	: 20,180 (6.2%)
• 보조금	: 89,248 (27.7%)

〈 세 출 〉	
계	: 323,361백만원(100%)
• 정책사업	: 262,804 (81.3%)
• 인력운영비	: 42,374 (13.1%)
• 기본경비	: 3,445 (1.0%)
• 재무활동	: 3,214 (1.0%)
• 예비비등	: 11,524 (3.6%)

○ 특별회계 ⇒ 50,452백만원

○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544백만원	(1.3%)
○ 의료급여기금	142백만원	(0.3%)
○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16,875백만원	(41.5%)
○ 주차장	269백만원	(0.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9,182백만원	(47.2%)
○ 수질개선	61백만원	(0.2%)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3,370백만원	(8.3%)
○ 기반시설	193백만원	(0.5%)

4. 도시기반시설

(2008. 6. 30. 현재)

≫ 주택

(단위 : 호)

읍·면별	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주거용 건물내	주 택 보급율
계	65,513	24,297	36,056	1,029	2,916	1,215	102.00%
온산읍	7,119	2,455	3,464	341	716	143	88.87%
언양읍	7,999	3,000	3,421	504	849	225	95.60%
온양읍	7,414	1,870	5,128	8	279	129	102.74%
범서읍	18,138	2,062	15,776	52	151	97	112.13%
서생면	2,758	2,202	289	45	84	138	96.94%
청량면	4,630	1,910	2531	0	116	73	87.82%
웅촌면	3,341	1,950	1238	16	86	51	95.59%
두동면	2,048	1,593	0	0	423	32	128.00%
두서면	1,850	1,819	0	12	0	19	117.41%
상북면	3,777	2,353	1191	39	45	149	110.71%
삼남면	5,566	2,262	3018	12	167	107	102.60%
삼동면	873	821	0	0	0	52	104.95%

≫ 국토이용계획 현황

(단위 : km²)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755.1	396.015	32.03	284.141	42.876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km²)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396.015	17.879	0.858	32.385	344.893

※ 개발제한구역 : 152.188km²

≫ 도 로

(단위 : m, m², %)

도 로 명	노선수	구분	총연장	중용 연장	도 로 포 장		미개설	미확장	
					포장	%			
계	2,044	연장	1,891,761	180,759	798,399	42	220,600	695,503	220,600
		면적	32,053,983	6,189,690	9,833,945	31	887,800	15,058,398	887,800
고속국도	2	연장	41,140	-	41,140	100	-	-	-
		면적	1,316,580	-	1,316,580	100	-	-	-
일반국도	5	연장	145,476	1,250	131,333	90	-	12,893	-
		면적	2,859,915	25,000	2,412,160	84	-	422,755	-
국가지원 지방도	1	연장	13,500	600	-	100	-	-	-
		면적	87,750	3,600	-	100	-	-	-
울산광역시도	1,872	연장	1,038,445	163,509	198,026	19	-	677,910	-
		면적	23,336,738	6,037,890	2,682,005	12	-	14,616,843	-
군 도	28	연장	295,100	15,400	271,900	92	23,200	-	23,200
		면적	2,396,600	123,200	2,175,200	91	98,200	-	98,200
농어촌도로	136	연장	358,100	-	156,000	44	197,400	4,700	197,400
		면적	2,056,400	-	1,248,000	61	789,600	18,800	789,600

≫ 자동차 등록

(단위 : 대)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57,171	39,837	4,212	12,613	509

≫ 국가공업단지

구 분		온산공단
면 적 (천 m ²)	총 면 적	17,283
	공장용지	14,870
업체수	입 주	293개
	가 동	256개
생 산 액		2008. 6월 누계 : 174,283억원
수 출 액		2008. 6월 누계 : 9,173백만\$
고 용		13,171명

≫ 농공단지

단 지 별	조성규모(m ²)	입 주		
		업체수	면적(m ²)	종업원수
계	330,800	26	209,840	2,396
상북농공단지	138,550	8	91,863	1,006
두서농공단지	122,650	15	97,820	1,086
두동농공단지	69,600	3	20,157	304

≫ 아동보육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정 부 지 원 보 육 시 설					민 간	가 정	직 장
	계	국공립	법 인	종 교	영아전담			
시 설 수	23	7	7	4	5	65	39	1
이용인원	1,514	492	527	278	217	3,127	603	36

≫ 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지회
시 설 수	377	10	1	2	356	7	1
이용인원	37,652	862	40	300	17,500	950	18,000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계	병 원				의 원				조산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소계	일반	치과	한의원				
147	14	1	6	7	114	55	31	28	0	1	9	9

≫ 교육기관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유치원	초등(분교)	중등	고등	대학
학교수	111	51	36	13	11	1
학생수	38,143	3,543	18,814	7,026	6,574	2,186



제 2 장

울주군의의회 현황

- 제 1 절 • 울주군의의회 연혁
- 제 2 절 • 울주군의의회 일반현황
- 제 3 절 •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제1절 울주군의회 연혁

1. 울주군의회 연혁

»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 1948.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9. 7. 4.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 1952. 4.25. 전국 초대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울산 56명)
- 1952. 5.10. 전국도의회 의원선거
- 1956. 8. 8. 전국 시·읍·면장 및 제2대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울산 50명)
- 1956. 8.13. 전국 도의회 의원선거
- 1960.12.12. 전국 도의회 의원선거
- 1960.12.19. 전국 제3대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울산 50명)
- 1960.12.26. 시·읍·면장 및 도의회 의원선거
- 1960.12.29. 도지사 선거
- 1961. 9. 1. 지방의회 해산(5.16 군사혁명포고 제4호)

» 울산시 승격 이후

- 1962. 6. 1. 울산시 승격
- 1991. 3.26. 시·군 기초의회 의원선거(울산군 14명)
- 1991. 4.15. 제1대 울산군의회 개원
- 1991. 6.20. 시·도 광역의회 의원선거
- 1991. 7. 8. 제1대 경상남도의회 개원

≫ 울산시·군 통합이후

- 1995. 1. 1. 울산시·군통합
- 1995. 1.10. 울산시·군통합 초대 울산시의회 개원(64명)
- 1995. 6.27. 전국 4대 지방선거 실시(시·도지사, 시·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 1995. 7.10. 제2대 경상남도의회 개원
- 1995. 7.11. 제2대 울산시의회 개원

≫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 1997. 7.15. 울산광역시 승격
- 1997. 7.15. 제1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개원(14명)
- 1998. 6. 4.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 지방선거 실시
- 1998. 7. 8. 제2대 울주군의회 개원(12명)
- 2002. 6.13.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 지방선거 실시
- 2002. 7. 8. 제3대 울주군의회 개원(13명)
- 2006. 5.31. 시장,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4대 지방선거 실시
- 2006. 7. 4. 제4대 울주군의회 개원(10명)

2. 역대 의장단

≫ 의장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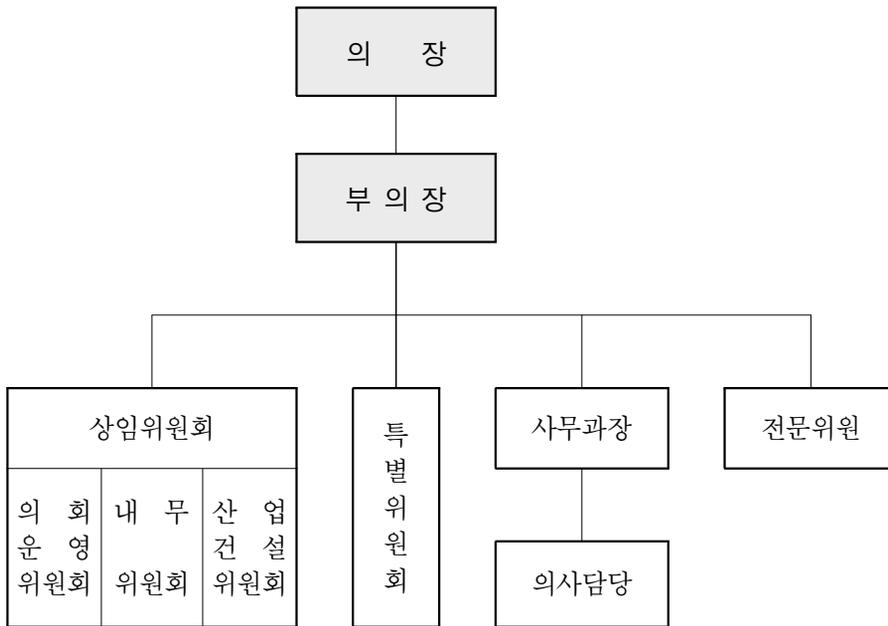
구 분	대 수	지 역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경 상 남 도 울 산 군	1대	삼남	박명순	1932.09.13.	1991.04.15. ~ 1992.07.15.	
	2대	농소	한성두	1941.03.31.	1992.07.16. ~ 1993.04.14.	
	3대	온양	오세홍	1945.03.28.	1993.04.15. ~ 1996.12.31.	
울산광역시 울 주 군	1대	언양	김광수	1946.03.28.	1997.07.15. ~ 1998.06.30.	
	2대	전반기	범서	이정우	1936.11.07.	1998.07.08. ~ 2000.07.07.
		후반기	언양	변양섭	1946.09.28.	2000.07.08. ~ 2002.06.30.
	3대	전반기	언양	변양섭	1946.09.28.	2002.07.08. ~ 2004.06.30.
		후반기	서생	김용원	1948.01.01.	2004.07.08. ~ 2006.06.30.
	4대	전반기	가선거구	이몽원	1958.08.13.	2006.07.04. ~ 2008.06.30.
		후반기	다선거구	서우규	1955.02.20.	2008.07.04. ~ 2010.06.30.

≫ 부의장 명단

구 분	대 수	지 역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경 상 남 도 울 산 군	1대	서생	김용원	1948.01.01.	1991.04.15. ~ 1991.10.24.	
	2대	웅촌	이동석	1950.04.28.	1991.10.25. ~ 1993.04.14.	
	3대	언양	김광수	1946.03.28.	1993.04.15. ~ 1996.12.31.	
울산광역시 울 주 군	1대	범서	이정우	1936.11.07.	1997.07.15. ~ 1998.06.30.	
	2대	전반기	언양	변양섭	1946.09.28.	1998.07.08. ~ 2000.07.07.
		후반기	서생	이보근	1951.07.10.	2000.07.08. ~ 2002.06.30.
	3대	전반기	청량	김철준	1956.10.09.	2002.07.08. ~ 2004.06.30.
		후반기	두동	서우규	1955.02.20.	2004.07.08. ~ 2006.06.30.
	4대	전반기	나선거구	송정문	1960.11.15.	2006.07.04. ~ 2008.06.30.
		후반기	가선거구	이순걸	1961.05.20.	2008.07.04. ~ 2010.06.30.

제2절 울주군의회 일반현황

1. 의회기구



≫ 의원정수

선거구명	계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구역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의원정수	10명	3명	3명	3명	1명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사무 과장	전문 위원	의사 담당	전문 위원				사무원	속기	운전
정원	16	1	2	1	1	4	1	0	1	4	1
현원	16	1	2	1	1	4	0	1	1	4	1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 4대 전반기

위원회별	위원수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의회사무과
내무위원회	5명	기획예산실, 총무국, 생활지원국, 보건소,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4명	기업유치단,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 4대 후반기

위원회별	위원수	소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의회사무과
내무위원회	5명	기획예산실, 총무국, 생활지원국, 보건소,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4명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2. 의회시설

>> 의회동 3층

제1회의실 (118.80㎡)	내 무 위원장실 (45.00㎡)	의회운영 위원장실 (45.00㎡)	산업건설 위원장실 (45.00㎡)	제2회의실 (113.40㎡)	
복 도					
X	집행부 대기실 (34.20㎡)	X	화 장 실	화 장 실	의원집무실 (124.20㎡)

>> 의회동 4층

본회의장 (316.00㎡)	의회 자료실 (40.50㎡)	전문위원실 (40.50㎡)	부의장실 (40.50㎡)	부속실 (36.00㎡)	의장실 (72.00㎡)
	기계실	복 도			
	X	화 장 실	화 장 실	의회사무과 (124.20㎡)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1. 지방의회의 권한

의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과 선거권, 청원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이 있다.

≫ 의결권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써 자치단체 또는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및 개정·폐지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 17가지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 행정감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 자료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자율권과 선거권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조직권, 의사자율권, 의원신분사정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다.

≫ 청원수리권

의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거나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과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의견표명권(의견제시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서류제출(자료) 요구권

행정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전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전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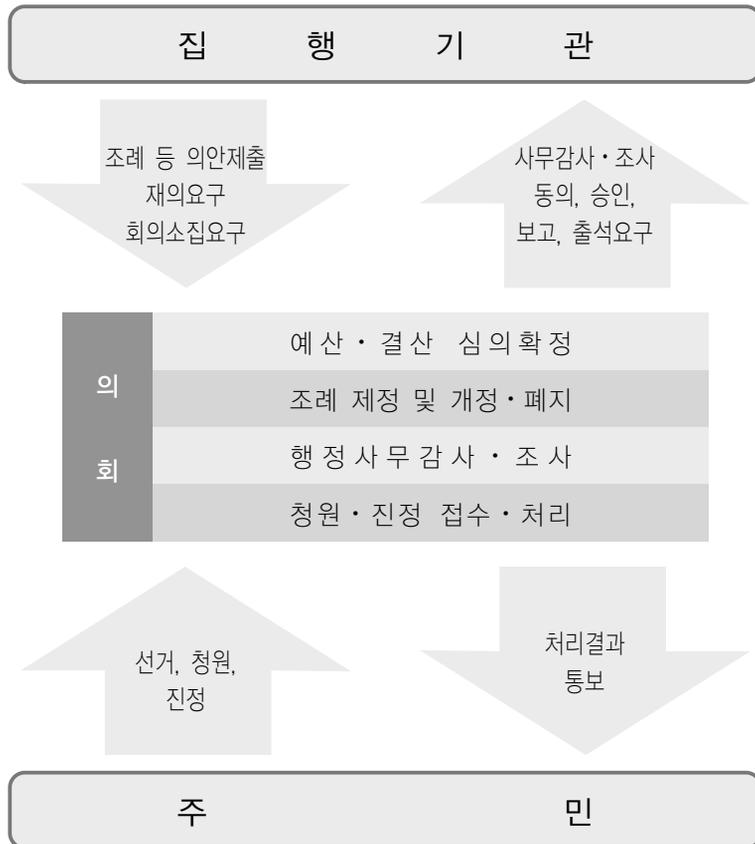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전 심사와 관련되는 질의를 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2. 지방의회의 역할

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 예산안 의결, 결산안 승인, 청원·진정 처리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 행정사무감사·조사, 동의, 승인, 보고



3. 지방의회 소집 및 회기

가. 소집권자

- 의회 의장
- 총 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

나. 소집 요구권자

- 정례회 : 별도 소집 요구하지 않음
- 임시회 :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 시

다. 소집기간

- 정례회 : 연 2회 50일 이내
 - 제1차 정례회 : 매년 7월 둘째 월요일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셋째 월요일
- 임시회 : 연 100일 이내 중 정례회 회기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단,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연장 가능)

라. 집회공고

- 집회일 5일전까지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게시판 게시로 공고

마. 부의안건 공고

-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부의안건이 있을 때 사전 공고

4. 지방의회 운영

가. 의사일정

- 전체일정 :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 의사일정 변경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결정

나.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

안 건	발 의 정 족 수	의 결 정 족 수
일 반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5 이상 • 의원 10인 이상 • 군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재 의 요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임 시 회 소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 이상 • 군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내 임시회 소집
위원회 폐기안건을 본 회의 부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 이상 • 의장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회 의 비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3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휴회 중 회의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3 이상 • 의장이 필요 또는 군수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가 있으면 회의재개
자치단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 불신임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1/4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징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5. 의안 등 처리절차

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조례제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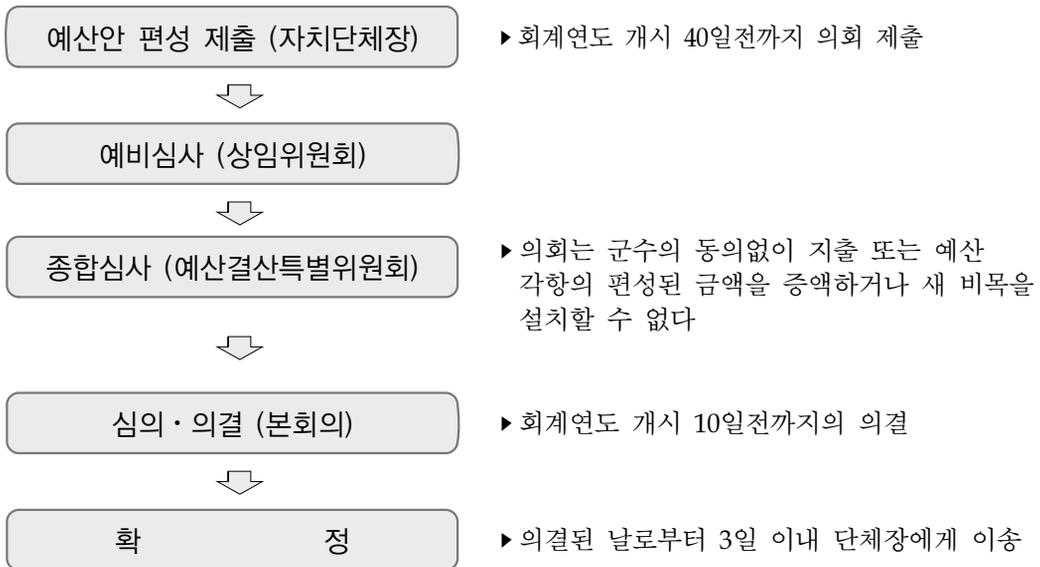


나.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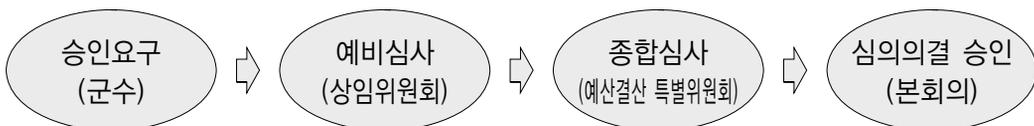
예산은 일정한 회계연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화폐 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조직의 재정 상태를 묘사한 정보이다. 예산은 자치단체장이 편성·제출하며, 지방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의결한다.

결산승인은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예산·결산안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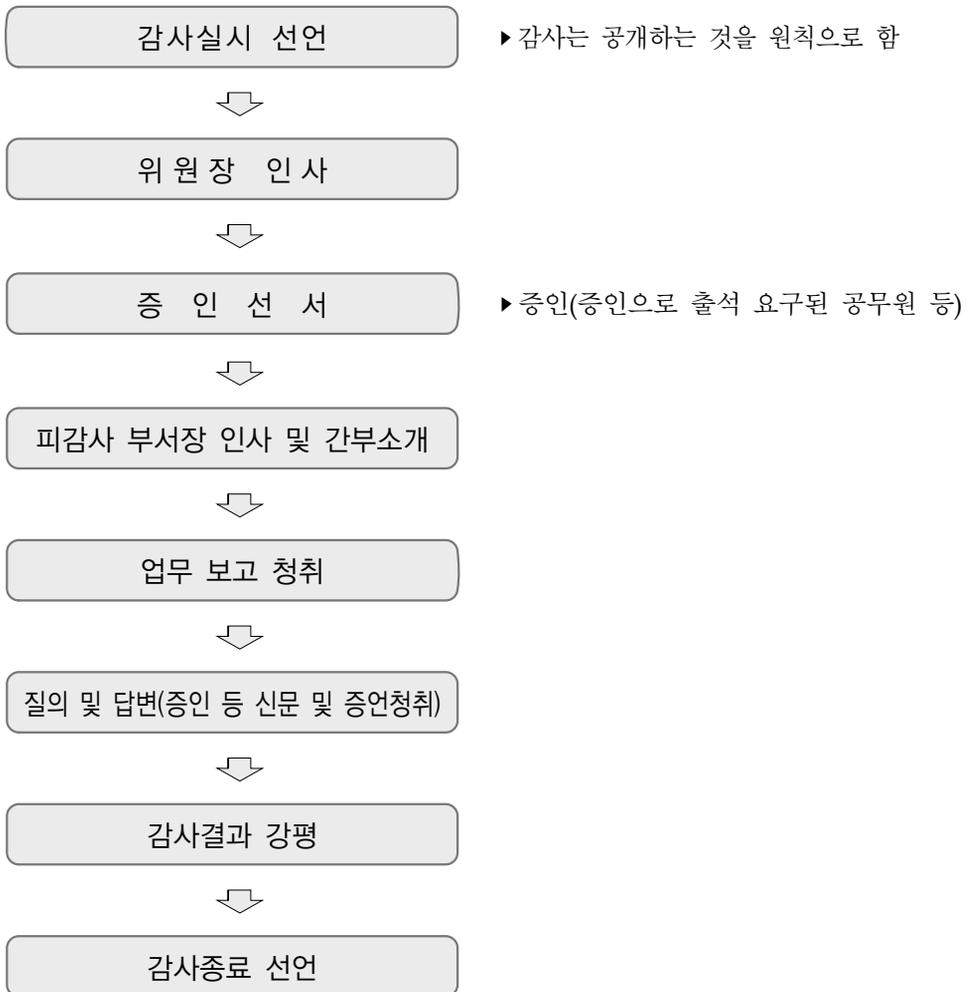
[결산승인 절차]



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절차]



라. 청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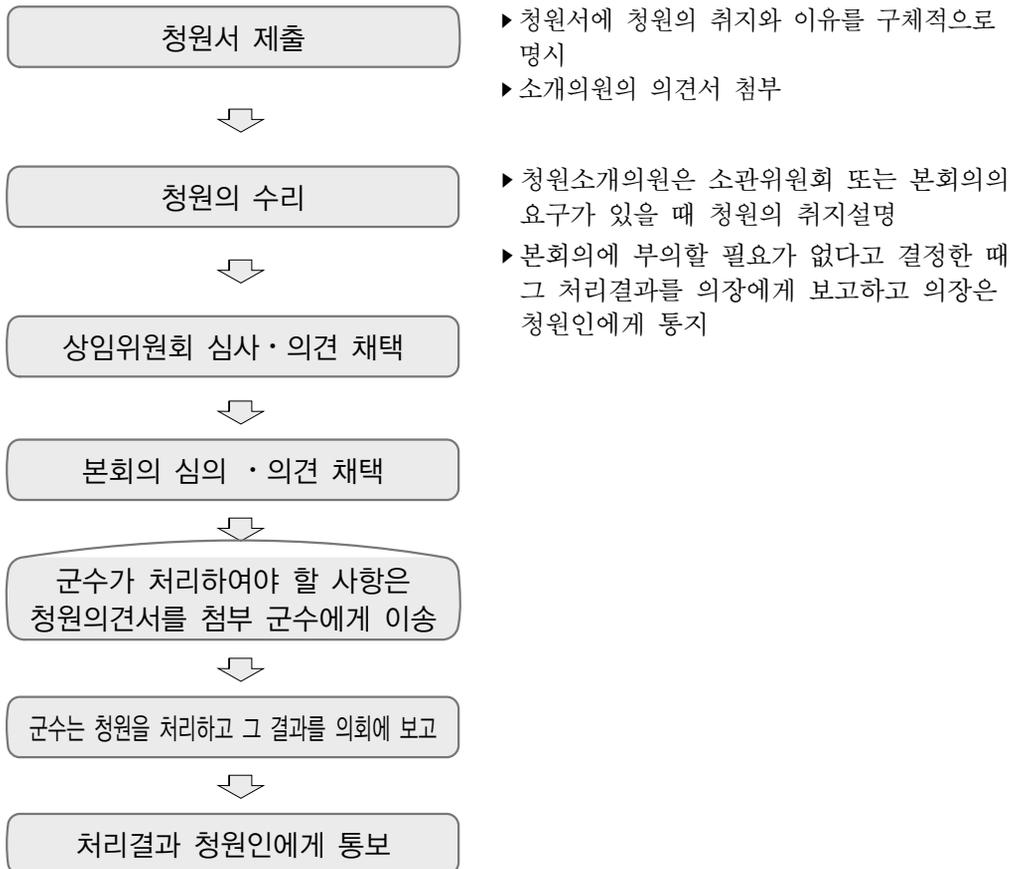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청원이 아래에 해당될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 처리 절차]



제2편 | 울주군의회 의정활동



Ujugun Council

| 제1장 | 울주군의회 운영

| 제2장 | 예산 및 결산 처리현황

| 제3장 | 행정사무감사



제 1 장

울주군의회의 운영

제 1 절 • 회의 개최 현황

제 2 절 • 안건 처리 현황

제 3 절 • 의안 처리 현황

제1절 회의 개최 현황

1. 총괄

구분	회기수			회의일수		
	계	정례회	임시회	계	정례회	임시회
계	14회	4회	10회	172일	84일	88일
2006.07.01. ~ 12.31.	5회	2회	3회	65일	41일	24일
2007.01.01. ~ 12.31.	6회	2회	4회	76일	43일	33일
2008.01.01. ~ 06.30.	3회		3회	31일		31일

2. 회기 일정표

구분	회수별	회기	회의일수
2006년	제85회 임시회	2006.07.04. ~ 07.05.	2일
	제86회 임시회	2006.07.18. ~ 08.01.	15일
	제87회 제1차 정례회	2006.09.04. ~ 09.11.	8일
	제88회 임시회	2006.10.11. ~ 10.17.	7일
	제89회 제2차 정례회	2006.11.20. ~ 12.22.	33일
2007년	제90회 임시회	2007.01.29. ~ 02.05.	8일
	제91회 임시회	2007.04.30. ~ 05.14.	15일
	제92회 제1차 정례회	2007.07.09. ~ 07.18.	10일

구 분	회 수 별	회 기	회의일수
	제93회 임시회	2007.10.15. ~ 10.19.	5일
	제94회 임시회	2007.11.12. ~ 11.16.	5일
	제95회 제2차 정례회	2007.11.19. ~ 12.21.	33일
2008년	제96회 임시회	2008.01.28. ~ 02.05.	9일
	제97회 임시회	2008.04.24. ~ 04.30.	7일
	제98회 임시회	2008.05.21. ~ 06.04.	15일

제2절 안건 처리 현황

1. 회기별 안건 처리 현황

년 도	회 기	기 간	일수	계	조례· 규칙	예산· 결산	군정 질문	기타
총 계			172	168	107	11	4	46
2006년	소 계		65	43	21	5		17
	제85회	07.04. ~ 07.05.	2	2	2			
	제86회	07.18. ~ 08.01.	15	4		1		3
	제87회	09.04. ~ 09.11.	8	8	6	2		
	제88회	10.11. ~ 10.17.	7	9	5			4
	제89회	11.20. ~ 12.22.	33	20	8	2		10
2007년	소 계		76	88	59	5	4	20
	제90회	01.29. ~ 02.05.	8	6	5		1	
	제91회	04.30. ~ 05.14.	15	20	15	1	2	2
	제92회	07.09. ~ 07.18.	10	10	6	2		2
	제93회	10.15. ~ 10.19.	5	10	6			4
	제94회	11.12. ~ 11.16.	5	14	13			1
	제95회	11.19. ~ 12.21.	33	28	14	2	1	11
2008년	소 계		31	37	27	1		9
	제96회	01.28. ~ 02.05.	9	5	3			2
	제97회	04.24. ~ 04.30.	7	14	12			2
	제98회	05.21. ~ 06.04.	15	18	12	1		5

2. 안건별 처리결과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85회 임시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07.01.	최인식의원 외 2명	2006.07.04.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6.07.01.	최인식의원 외 2명	2006.07.04.	원안가결
제86회 임시회	6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07.06.	울주군수	2006.08.01.	수정가결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06.07.07.	울주군수	2006.08.01.	원안가결
	8	울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6.07.14.	이순걸의원 외 2명	2006.07.18.	원안가결
	9	울주 연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06.07.19.	울주군수	2006.08.01.	의 견 서 채 택
제87회 제 1 차 정례회	3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07.03.	울주군수	2006.09.11.	원안가결
	5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006.07.05.	울주군수	2006.09.11.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 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08.03.	울주군수	2006.09.11.	원안가결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 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2006.08.03.	울주군수	2006.09.11.	수정가결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08.23.	울주군수	2006.09.11.	원안가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08.23.	울주군수	2006.09.11.	원안가결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 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08.25.	송정문의원 외 3명	2006.09.11.	원안가결
	1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 에 관한 조례안	2006.08.25.	이순걸의원 외 2명	2006.09.11.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88회 임시회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2006.08.03.	울주군수	2006.10.17.	수정가결
	15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2006.08.25.	울주군수	2006.10.17.	원안가결
	1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06.09.28.	울주군수	2006.10.17.	수정가결
	1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09.28.	울주군수	2006.10.17.	수정가결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 지조례안	2006.09.29.	울주군수	2006.10.17.	원안가결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09.29.	울주군수	2006.10.17.	원안가결
	2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 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6.09.29.	울주군수	2006.10.17.	수정가결
	2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 조에 관한 조례안	2006.10.02.	송정문의원 외 4명	2006.10.17.	원안가결
	24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6.10.11.	이순걸의원 외 2명	2006.10.11.	원안가결
제89회 제 2 차 정례회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 례안	2006.10.25.	울주군수	2006.12.15.	수정가결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10.25.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10.25.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28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	2006.11.07.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29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006.11.08.	송정문의원 외 2명	2006.12.15.	원안가결
	30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안	2006.11.13.	울주군수	2006.11.28.	부 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89회 제 2 차 정례회	3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11.15.	울주군수	2006.12.15.	수정가결
	33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6.11.15.	울주군수	2006.11.20.	보 고
	34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6.11.15.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35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6.11.15.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36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6.11.15.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37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6.11.15.	울주군수	2006.11.28.	심사보류
	37-1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정계획안	2006.12.07.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38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11.15.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39	울산광역시 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11.16.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40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11.21.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41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6.11.20.	이순걸의원 외 3명	2006.11.20.	원안가결
	4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11.28.	최인식의원 외 5명	2006.12.15.	원안가결
	4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11.30.	울주군수	2006.12.15.	원안가결
	45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12.08.	울주군수	2006.12.22.	수정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0회 임시회	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12.06.	울주군수	2007.02.05.	원안가결
	46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7.01.17.	울주군수	2007.02.05.	원안가결
	47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회 청구에 관한 조례안	2007.01.17.	울주군수	2007.02.05.	원안가결
	48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1.25.	울주군수	2007.02.05.	원안가결
	49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 구의 건	2007.01.25.	이순걸의원 외 2명	2007.01.29.	원안가결
	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1.31.	울주군수	2007.02.05.	원안가결
제91회 임시회	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04.05.	이순걸의원 외 7명	2007.05.04.	수정가결
	53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2007.04.05.	울주군수	2007.05.04.	수정가결
	54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 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7.04.05.	울주군수	2007.05.04.	원안가결
	55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05.	울주군수	2007.05.14.	수정가결
	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05.	울주군수	2007.05.14.	수정가결
	57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04.	원안가결
	58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 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04.	원안가결
	59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04.	원안가결
	60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14.	원안가결
	6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04.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1회 임시회	62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02.	심사보류
	63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007.04.18.	울주군수	2007.05.04.	수정가결
	6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04.20.	울주군수	2007.05.04.	수정가결
	65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04.20.	울주군수	2007.05.14.	수정가결
	6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007.04.23.	송정문의원 외 8명	2007.05.04.	원안가결
	6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4.23.	최인식의원 외 5명	2007.05.04.	원안가결
	68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04.24.	울주군수	2007.05.04.	원안가결
	69	군정질문(소규모 산업단지 및 목도상록수림과 관련하여)	2007.05.02.	한성율의원	2007.05.04.	질 문
	70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04.30.	이순걸의원 외 3명	2007.04.30.	원안가결
	71	군정질문(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하여)	2007.05.10.	서우규의원	2007.05.14.	질 문
제92회 제 1 차 정례회	72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5.02.	울주군수	2007.07.18.	수정가결
	73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05.02.	울주군수	2007.07.18.	원안가결
	74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5.02.	울주군수	2007.07.18.	원안가결
	75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밧음·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6.20.	울주군수	2007.07.18.	원안가결
	7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06.27.	울주군수	2007.07.18.	원안가결
	77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7.06.25.	울주군수	2007.07.18.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2회 제 1 차 정례회	78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007.06.26.	울주군수	2007.07.18.	원안가결
	79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7.05.	울주군수	2007.07.18.	수정가결
	80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 자 지원 조례안	2007.07.09.	송정문의원 외 6명	2007.07.18.	원안가결
	81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7.07.06.	이순걸의원 외 3명	2007.07.09.	원안가결
제93회 임시회	8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07.07.26.	울주군수	2007.10.17.	부 결
	84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7.09.17.	울 산 광역시장	2007.10.19.	의 건 서 채 택
	86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9.27.	울주군수	2007.10.19.	수정가결
	87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9.27.	울주군수	2007.10.19.	원안가결
	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안	2007.09.27.	울주군수	2007.10.19.	원안가결
	9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안	2007.10.08.	송정문의원 외 2명	2007.10.19.	원안가결
	91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07.10.09.	울주군수	2007.10.15.	보 고
	93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 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0.09.	울주군수	2007.10.19.	원안가결
	94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7.10.01.	이순걸의원 외 3명	2007.10.15.	원안가결
	9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 인의 건	2007.10.18.	3개 상임위원장	2007.10.19.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4회 임시회	8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안	2007.09.27.	울주군수	2007.11.16.	수정가결
	9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0.26.	울주군수	2007.11.16.	원안가결
	9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0.26.	울주군수	2007.11.16.	수정가결
	98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	2007.10.26.	울주군수	2007.11.16.	수정가결
	10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한성욱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한성욱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0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서우규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서우규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최인식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최인식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권영호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우순노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11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9.	우순노의원 외 5명	2007.11.16.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121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7.11.12.	이순걸의원 외 3명	2007.11.12.	원안가결
제95회 제 2 차 정례회	8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07.10.08.	울주군수	2007.12.05.	원안가결
	9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007.10.08.	울주군수	2007.12.13.	수정가결
	99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8.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00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예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8.	울주군수	2007.12.13.	수정가결
	1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 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08.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0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 리 및 운영 조례안	2007.11.08.	울주군수	2007.12.13.	수정가결
	103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2007.11.09.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04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7.11.09.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05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안	2007.11.09.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06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안	2007.11.09.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07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안	2007.11.09.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1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2007.11.13.	울주군수	2007.12.05.	원안가결
	11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11.13.	울주군수	2007.12.05.	수정가결
11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 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15.	이순걸의원 외 8명	2007.12.13.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5회 제 2 차 정례회	120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회 임명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007.11.09.	권영호의원 외 5명	2007.12.13.	원안가결
	122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16.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23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16.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16.	울주군수	2007.12.13.	원안가결
	125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16.	울주군수	2007.12.13.	수정가결
	126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7.11.16.	울주군수	2007.12.13.	수정가결
	127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7.11.19.	이순걸의원 외 3명	2007.11.19.	원안가결
	1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 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	2007.11.16.	이순걸의원 외 2명	2007.12.13.	원안가결
	12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11.28.	이순걸의원 외 8명	2007.12.13.	원안가결
	130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12.04.	울주군수	2007.12.21.	원안가결
	13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07.12.11.	울주군수	2007.12.21.	원안가결
	132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안	2007.12.11.	울주군수	2007.12.21.	원안가결
	13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 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2007.12.07.	울주군수	2007.12.21.	원안가결
제96회 임시회	13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01.11.	이수선의원 외 5명	2008.02.05.	수정가결
	135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8.01.17.	울주군수	2008.02.05.	수정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6회 임시회	136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01.17.	울주군수	2008.02.05.	원안가결
	137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01.21.	울주군수	2008.02.05.	원안가결
	138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01.28.	이순걸의원 외 3명	2008.01.28.	원안가결
제97회 임시회	1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8.04.04.	울주군수	2008.04.30.	원안가결
	144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4.10.	울주군수	2008.04.30.	원안가결
	145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04.11.	울주군수	2008.04.30.	원안가결
	147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4.17.	울주군수	2008.04.30.	원안가결
	148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08.04.17.	울주군수	2008.04.30.	원안가결
	14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4.17.	울주군수	2008.04.30.	원안가결
	150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2008.04.23.	이순걸의원 외 8명	2008.04.30.	원안가결
	151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4.18.	이순걸의원 외 5명	2008.04.30.	원안가결
	15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04.18.	최인식의원 외 5명	2008.04.30.	원안가결
	15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04.18.	한성율의원 외 5명	2008.04.30.	원안가결
	15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04.18.	우순노의원 외 5명	2008.04.30.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7회 임시회	15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기및의회의 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 칙안	2008.04.18.	서우규의원 외 5명	2008.04.30.	원안가결
	156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사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2008.04.18.	권영호의원 외 5명	2008.04.30.	원안가결
	158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 구의 건	2008.04.24.	이순걸의원 외 3명	2008.04.24.	원안가결
제98회 임시회	139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 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03.13.	송정문의원 외 4명	2008.06.04.	원안가결
	1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2008.03.13.	송정문의원 외 4명	2008.06.04.	원안가결
	146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04.17.	울주군수	2008.06.04.	수정가결
	157	신고리 원전 건설을 위한 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08.04.21.	울주군수	2008.06.04.	의 건 서 채 택
	1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5.07.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16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08.05.07.	울주군수	2008.06.04.	의 건 서 채 택
	16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05.09.	울주군수	2008.06.04.	수정가결
	162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 획 변경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수정가결
	16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 례 폐지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164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 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16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회수	의안 번호	의 안 명	발의(접수) 일자	발의 (제출)자	처리현황	
					의결일자	결과
제98회 임시회	16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 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16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168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원안가결
	169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수정가결
	1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5.14.	울주군수	2008.06.04.	수정가결
	171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안	2008.05.20.	서우규의원 외 8명	2008.05.21.	결 의 문 채 택
	17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 구의 건	2008.05.21.	이순걸의원 외 3명	2008.05.21.	원안가결

제3절 의안 처리 현황

■ 제85회 임시회 (2006. 7. 4. ~ 7. 5.)

1. 개회배경

제85회 임시회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4대 의회 개원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2006년 6월 28일 의회사무과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2006년 7월 4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7.4. (화) 10:00	<p>◀ 제1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제8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제85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장 이몽원 부 의 장 송정문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 2006.7.4.~7.5.(2일간)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성윤의원, 이순걸의원
14:00	개원기념행사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7.5. (수) 10:00	<p>◀ 제2차 본회의 ▶</p> <p>1. 제4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p> <p>2. 제4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p>	<p>1. 상임위원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무위원장 조충제 •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선 •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걸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1. 최인식 의원 외 2명
- 의결일자 : 2006. 7.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개정과 의원정수 조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재조정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위원 조정(안 제2조)
 - 의회운영위원회 7명 → 6명
 - 내무위원회 6명 → 5명
 - 산업건설위원회 6명 → 4명
-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조정(안 제3조)
 - 내무위원회 : 문화공보담당관실 삭제, 생활지원국 신설
 - 산업건설위원회 : 경제사회국 → 경제국, 사회복지사무소 폐지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3항)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1. 최인식 의원 외 2명
- 의결일자 : 2006. 7.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중선거구제 시행에 따른 의석배정 기준 변경(안 제3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
(안 제72조 ~ 74조, 제84조, 제84조의1, 제87조, 제88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86회 임시회 (2006. 7. 18. ~ 8. 1.)

1. 개회배경

제86회 임시회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순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7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거쳐 2006년 7월 18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7.18. (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6.7.18.~8.1. (15일간) 2. 원안가결 3. 제안설명 • 부군수 이선범 4. 7명으로 구성 5. 선임 • 송정문의원, 이수선의원
2006.7.19. (수) 10:00	◀ 제2차 본회의 ▶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보 건 소】	1. 업무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 • 총무과장 오세곤 • 회계정보과장 김지태 • 지방세과장 박영태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 보건소장 이영갑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7.20. (목) 10:00	<p>◀ 제3차 본회의 ▶</p> <p>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p> <p>【경 제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과 ○ 환경관리과 ○ 자원위생과 ○ 농 산 과 ○ 축수산과 <p>【생활지원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과 ○ 복지사업과 ○ 문화관광과 <p>【건설도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설 과 ○ 도 시 과 ○ 건 축 과 ○ 산 립 과 ○ 재난관리과 	<p>1. 업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국장 김종득 • 지역경제과장 홍대의 • 환경관리과장 최수미 • 농산과장 변동구 • 축수산과장 정대화 •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 복지사업과장 임덕철 • 문화관광과장 변갑섭 • 건설도시국장 최광해 • 건설과장 김동훈 • 도시과장 최재진 • 건축과장 정인동 • 산림과장 우규성 • 재난관리과장 최광원
2006.7.21.	상임위원회 활동	
2006.7.22. ~ 7.23.	휴 일	
2006.7.24. ~ 7.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6.8.1. (화) 11:00	<p>◀ 제4차 본회의 ▶</p> <p>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p> <p>2.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p> <p>3.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p>	<p>1. 원안가결</p> <p>2. 의견서채택</p> <p>3. 수정가결</p>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8. 1.

2) 제안이유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송항 어촌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간절곶 공원계획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청결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 건립(신축)계획

구분	소재지	소유자	부지면적	건립규모	사업주체
건물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산28번지	울주군수	1,545㎡	2층1동 바닥면적 : 816㎡ 연면적 : 1,632㎡	울주군수

-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국비 (균특)	시비	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장 건립 ○ 해수인입 및 배수시설 ○ 전기 및 배관 	1,810	905	453	452	2006.12. ~ 2007.8.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발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1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8. 1.

2) 제안이유

-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단지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수립한 특구발전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골자

- 특구의 명칭 :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 특구의 위치 : 울주군 언양·봉계 지역
 - － 언양지역 :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어음리 일원
 - － 봉계지역 : 두동면 봉계리 일원
- 특구면적 : 168,009m²
- 특화사업 주요내용
 - － 한우번식기반조성 및 종축개량사업
 - －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 － 한우불고기 축제 특성화 사업
 - － 한우불고기 이미지 제고 사업
- 총 투자규모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군비	민자
10,236	1,725	1,557	5,731	1,223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 제87회 제1차 정례회 (2006. 9. 4. ~ 9. 11.)

1. 개회배경

제8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006년 9월 4일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9.4. (월) 11:00	◀ 제1차 정례회 ▶ 1.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6.9.4.~9.11.(8일간) 2. 원안가결 3. 7명으로 구성 4. 선임 • 권영호의원, 조충제의원
14:00	상임위원회 활동	
2006.9.5. ~ 9.7.	상임위원회 활동	
2006.9.8.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6.9.11. (월) 11:00	◀ 제2차 정례회 ▶ 1.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안가결 7. 수정가결 8.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 읍·면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군의회 의원 당연직 고문 조항 삭제
- 타 읍·면의 위원 및 고문은 당해 읍·면의 위원 및 고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 기업하기 좋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기업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개발, 기업유치와 관련된 민원 일괄처리 및 방향 설정,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통상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 기업인 시상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함
-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
 -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우선 지원
 - －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 －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 군 직영 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 － 군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산업기반시설·기업유치·판로·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사화합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및 통상전문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군수의 재량행위 및 위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항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에 한정하도록 관련 내용 일부를 수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 조정
 - － 지방세납세 증명서 : 1통 300원 → 1건 800원
 -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1통 300원 → 1건 800원
 -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 : 300원 → 800원
 -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1호 300원 → 1주택 800원
 -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1호 300원 → 1주택 8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본 조례에 신설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던 발급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 6. 23. 일부개정·공포되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2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
-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5. 송정문 의원 외 3인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수수당의 지급액을 월 20,000원에서 월 30,000원으로 인상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5. 이순걸 의원 외 2인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연간 회의총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도록 함
-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함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월요일에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월요일에 집회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하도록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88회 임시회 (2006. 10. 11. ~ 10. 17.)

1. 개최배경

제88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6년 10월 11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10.11. (수)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8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6.10.11.~10.17. (7일간) 2. 원안가결 3. 선임 • 서우규의원, 우순노의원
14:00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2006.10.12. ~10.16.	상임위원회활동	
2006.10.17. (화) 11:00	◀ 제2차 본회의 ▶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4.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수정가결 4. 원안가결 5. 수정가결 6. 수정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원안가결 8. 원안가결 9.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2006. 2.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자원봉사활동 범위 규정
 -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전,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타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 규정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규정

-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
-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
 -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
 - 자원봉사센터내 운영위원회를 둠.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둠
-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가능
-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또는 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가입
 -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보험료 지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센터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고 사무국 구성원의 수를 2명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센터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함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의안번호 제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8. 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증진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4년)
- 사업분야 : 5개 분야 20개 사업
- 사업목표
 - － 군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사업 선정
 - － 군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 노후 시설의 개선과 최신장비 도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중점사업 내역 : 3개 사업
 - － 흡연을 저하를 위한 표적집단 관리사업
 - － 출산안정화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 － 장애예방 재활교육사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2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외 2건의 2006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지역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온양읍이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제안계획에 따라 온양읍민을 위한 지역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문화활동의 장소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상호교류증진 및 애향심 고취로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득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요구가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청소년들이 생활권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함은 물론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자질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과제로 추진하여 온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인건비·원자재 값 상승, 설계면적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사항임
- 『남창어린이집 신축』은 1990년 남창 새마을유아원으로 신축된 시설로써 1992년 남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노후화로 인한 건물 벽체 균열과 누수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습도 상승 등)하여 재원 아동들의 건전육성 저해 및 안전사고 초래를 사전 방지코자 현 시설 철거 후 신축하여 저 출산 대책의 일환인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공립보육 기회를 확대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재산

시설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지 역 커뮤니티 센 터	위 치	온양 남창 29-3번지 외 5필지		
	토 지	6,037㎡(1,826평)	6,037㎡	
	건 물	지하1층/지상3층 3,300㎡(998평)	지하1층/지상3층 4,959㎡(1,500평)	증 1,659㎡(501평)
	사 업 비	7,000백만원	9,600백만원	증 2,600백만원
	사업기간	2004~2006년	2004~2007년	
청 소 년 수 려 관	위 치	삼남 교동 292번지 외 3필지		
	토 지	9,923㎡(3,025평)	9,923㎡	
	건 물	지하2층/지상3층 4,000㎡(1,210평)	지하2층/지상3층 5,533㎡(1,673평)	증 1,533㎡(463평)
	사 업 비	8,800백만원	11,500백만원	증 2,700백만원
	사업기간	2002~2006년	2002~2007년	
남 창 어 린 이 집	위 치	온양 운화 47-8번지		국·시비지원사업 2006년 결산추경 예산확보
	토 지	231㎡(70평)		
	건 물	지상3층 396㎡(120평)		
	사 업 비	751백만원 (국비 : 217 시비 : 108 군비 : 426)		
	사업기간	2006~2007년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건은 향후 국·시비 확보방안 강구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고, 그 외는 원안가결함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2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서생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면청사 신축』은 1984년 신축된 서생면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해안지역의 특수성으로 배관부식 및 누수 등 청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부지협소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등으로 부지 확장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여건·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 청사와 연접한 부지에 신축코자 하며, 면청사 부지확보 시 복지센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보건지소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서생면복지센터 신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함
-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신축』은 원전 건설단계부터 원전 주변 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조사·확인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임
- 『서생면보건지소 신축』은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 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의료 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범서읍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은 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구유입 및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나 읍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하여 읍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범서읍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 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의료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1985년 신축된 면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등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누수 등 청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부지협소로 인한 주차공간의 부족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웅촌면 보건지소』는 1988년 울산C.C에서 신축 기부채납한 주민복지센터 일부를 개조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계획에 의거 의료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공공청사 예정지는 현재 경지 정리된 생산녹지 지역이나 장치들 도시계획 변경을 군정 중점과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웅촌면의 신흥도심으로 개발예정된 지역으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 되므로 조기에 부지확보가 필요함

- 『상복운동장 대체부지 매입』은 기존 상복운동장 부지가 길천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됨에 따라, 상복운동장 조성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매입』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유인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문화를 보존, 발굴 및 계승하여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문화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서생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서생면 신암리 산69-15번지 외 5필지
- 부지면적 : 9,998㎡(3,025㎡) - 취득2,323㎡+기존 면청사 및 보건지소 702㎡
- 소요예산 : 6,420백만원
- 시설계획
 - 면사무소/복지센터 층별 면적 및 용도

구 분	면사무소		복지센터		공용사용면적		공유면적		비고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용도	
계	555평	163	153		158		81		
1	185	89	26	노인회실 사무실	43	식당 화장실	27	엘리베이터 계단실 홀	중앙북도 좌우배열
2	185	52	80	컴퓨터실 청소부방	26	소회의장 화장실	27		
3	185	22	47	중대부 취합동실	89	다목적실 화장실	27		

-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보건지소 층별 면적 및 용도

구 분	규 모	층별 면적 및 용도			비 고
		층수	면적(평)	용 도	
신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지상3층 150평	1	50	사무실/주민접견실	
		2	50	장비보관실/실험·분석실	
		3	50	회의실/위원장 및 위원실	
보 건 지 소	지상2층 150평	1	97	사무실/진료실/창고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
		2	53	공중보건의 숙소	

나) 범서읍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범서읍 천상리 442-2번지 외 10필지(현청사 철거 후)
- 부지면적 : 7,812㎡(2,363㎡) - 취득1,196㎡+기존 읍청사 및 보건지소 1,167㎡
- 소요예산 : 6,993백만원
- 시설계획 : 현대식 건축물 1,983㎡(200평×4층=800평)

구 분	규 모	구 조	층별 면적 및 용도			비 고
			층수	면적(평)	용 도	
읍사무소	지하1 지상3층 800평	철근 콘크 리트	지하1	200	문서고/창고/기계실	
			1	200	민원실/사무실/전산실/식당	
			2	200	회의실/자료실/휴게실/ 취미활동실	
			3	200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지상2층 150평	"	1	97	사무실/진료실/창고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
			2	53	공중보건의 숙소	

다) 웅촌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 소요예산 : 1,709백만원

○ 취득대상 토지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용도지역
합 계		11,393		
웅촌면 곡천리 231-1	답	3,779	양재오	생산녹지지역
웅촌면 곡천리 231-2	답	840	한무웅	생산녹지지역
웅촌면 곡천리 231-3	답	2,364	“	생산녹지지역
웅촌면 곡천리 231-4	답	410	“	생산녹지지역
웅촌면 곡천리 233-5	답	4,000	오덕도	생산녹지지역

라) 상북운동장 대체부지 매입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산86-1번지 일원
- 사 업 량 : 부지매입 40,000m² - 울주군
운동장 부지조성공사(토석채취 80만m²정도) - 광역시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 총사업비 : 1,000,000천원(부지보상비)

마)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물매입

- 위 치 : 온양읍 삼광리 657-1번지(구 삼광분교)
- 면 적 : 토지 6,614m²(2,001평), 건물 7동 816.81m²(247.08평)
- 추정가격 : 770,000천원
 - 토지 701,084천원(6,614m²×106,000원 - 실 거래가격)
 - 건물 61,750천원(247평×250,000원 - 가 감정가격)
 - 감정평가 수수료 등 7,166천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상북운동장 부지매입건은 부지조성 후 울산광역시와 운동장의 규모, 부속 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문서화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고 그 외는 원안가결함

■ **울산광역시울주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가 사업의 완료에 따른 자금의 소진과 추가적인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2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상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006.4.28.)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안 제1조의2 및 별표1 신설)

- 시장사용권의 상속 또는 양도 신고사항 삭제(안 제3조)
- 시장사용권 양도금지규정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없이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를 “상속·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로 변경(안 제4조)
- 사용료 반환에 관한 단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설비의 원상회복한 사유를 추가하여 보완(안 제10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의거 “시장관리인”을 “시장관리자”로 변경하고, 시장관리자 요건과 업무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함(안 제11조)
- 위탁징수의 계약체결을 “시장변영회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상인회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읍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9. 29. 읍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안 제5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세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세입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있어 울주군의 타 특별회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분임경리관을 도시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과 “부담금의 사용제한” 관련조항이 중복성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6. 송정문 의원 외 4인
- 의결일자 : 2006. 10. 17.

2)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2조)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군세수입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함(안 제3조)
-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울주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 위원회는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함(안 제9조)
-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검사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6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89회 제2차 정례회 (2006. 11. 20. ~ 12. 22.)

1. 개회배경

제89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및 조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순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11월 9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6년 11월 20일에 개회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6.11.20.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8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6.11.20.~12.22. (33일간) 2. 원안가결 3. 제안설명 • 울주군수 임창섭 4. 보고 • 부군수 이선범 5. 7명으로 구성 6. 선임 • 이순걸의원, 한성율의원
2006.11.21. ~11.27.	상임위원회 활동	
2006.11.28. ~12.14.	상임위원회 활동	
2006.12.15. (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 8.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0.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11.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수정계획안 14.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원안가결 6. 수정가결 7. 원안가결 8. 원안가결 9. 원안가결 10. 원안가결 11. 원안가결 12. 원안가결 13. 원안가결 14. 원안가결 15. 수정가결 16. 수정가결
2006.12.18. ~ 12.20.	상임위원회 활동	
2006.12.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6.12.22. (금) 11:00	◀ 제3차 본회의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결과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걸 2.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및 제7조)

- 평생학습협의회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 원 장 : 부군수
 -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군 본청의 평생학습담당 국장(당연직), 군의원과 관할교육청 평생학습담당 공무원(5급이상),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 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안 제6조)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생학습에 관하여 군수가 토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의 임기(안 제8조)
 - 2년, 연임가능(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함)
- 회의소집(안 제10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지원 (안 제11조)

나)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안 제12조)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안 제13조)
-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안 제14조)
 - －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
 - － 평생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가능 (위탁기간 3년,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재위탁 가능)
-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제15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협의회 불참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고 평생학습과 관련한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중 군의회 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함

■ 울산광역시 읍·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25. 읍·면·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과 세원확충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과제로 정책우위 없이는 고용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군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를 군의 제일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2006. 9.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업유치단이 승인되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기업유치단 신설(안 제4조)
 - －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팀을 분리하여 기업유치단 설치, 부군수 밑에 두도록 함
- 기업지원 업무를 기업유치단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제1호)
- 자원위생과를 경제국에서 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조정함(안 제7조의3)
 - － 국간의 업무량을 조정하여 업무의 상호연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원위생과를 경제국에서 생활지원국 소속으로 조정
 - 경 제 국(4과) :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산과, 축수산과
 - 생활지원국(4과) :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원위생과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0. 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과 세원확충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과제로 정책우위 없이는 고용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군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기업유치를 군의 제일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2006. 9.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업유치단이 승인되어 기업유치단 신설 등에 따른 필요 증원인력 8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읍	면
현행	726	444	16	69	87	110
조정	734	452	16	69	87	110
증감	증8	증8	-	-	-	-

○ 직급별 조정

구분	계	정무	일 반 직							별정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726	1	1	5	35	152	191	151	92	12	86
조정	734	1	1	5	36	153	195	152	93	12	86
증감	증8	-	-	-	증1	증1	증4	증1	증1	-	-

○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6명)

- 당초 2006. 12. 31. → 변경 2008. 12. 31.
- 2005. 9. 22일 공포된 조례 제385호 부칙 제2항
 - 집행기관의 정원 4명(일반직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관련 인력 1명(행정7급)
 - ▷ 소나무재선충 방제인력 3명(임업7급, 임업8급, 임업9급)
- 2005. 12. 26일 공포된 조례 제390호 부칙 제2항
 - 집행기관의 정원 6명중 2명(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 ▷ 복식부기 확대시행 전담인력 2명(행정7급, 전산8급)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지역 관광기념품의 전시·판매 공간을 확충하여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생산업체의 판로 확대와
-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전시판매관은 울주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위탁운영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 의한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 전시판매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 전시판매관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운영비는 수탁자부담원칙을 규정함(안 제10조)
-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10으로 함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항)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8. 송정문 의원 외 2인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군지역 가입자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함(제3조)
-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하도록 함(제4조)
-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제7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1. 28.

2) 제안이유

- 2001년도 온산읍정 자문위원회로부터 건의가 되어 농수산물공판장과 주민 편의시설을 건립, 지역주민들에게 복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 기공식 직후 주민들로부터 도서관, 예식장 추가건립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

3) 주요골자

- 토지

소재지	면적	매입비주체	비고
온산읍 덕신리 429번지	3,412m ²	울주군수	

- 건물

구분	건축규모	예산액 (백만원)	매입비주체	비고
당초	지상2층/2,432.67m ²	2,301	울주군수	
변경	지상3층/3,369.37m ²	3,565	울주군수	

4) 심사결과 : 부결

■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942,756	계	942,756
용 자 금 회 수	2,000	고유목적사업비	71,800
예 치 금 회 수	910,756	예 치 금	870,956
이 자 수 입	30,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424,977	계	424,977
예 치 금 회 수	410,702	고유목적사업비	10,000
이 자 수 입	14,275	예 치 금	414,977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151,925	계	151,925
예 치 금 회 수	106,599	고유목적사업비	40,793
이 자 수 입	45,326	예 치 금	111,132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의안번호 제37-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시보조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251,756	계	251,756
예치금회수	221,756	고유목적사업비	50,000
이자수입	5,000	예치금	201,756
기타수입	25,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7년도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 1/100
 -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2,893,900	계	2,893,900
출 연 금	816,431	고유목적사업비	911,588
예치금회수	1,982,312	예치금	1,982,312
이자수입	95,157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정(안 제4조제3호 ~ 제5호)
 - 3. 경리관 : 총무국장 → 경제국장
 - 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 지역경제과장
 -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교통업무담당주사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2006. 12. 31일까지 감면시한인 본 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 12.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감면대상을 조정하여 군세감면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종전과 동일(2006. 12. 31.이전) ⇒ 17건

감 면 내 용	감면세목	감면 정도	조문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면제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	면제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50%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면제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경감	제1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50%	제12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세	면제	제13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	경감	제14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제20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	50%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재산세	경감	제2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제25조

- 감면 조정(2007. 1. 1.이후) ⇒ 1건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이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안 제15조)

- 신설 ⇒ 2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경감, 사업소세 면제토록 함(안 제19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농공단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 경감하도록 함(안 제23조)

- 조문수정 ⇒ 4건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8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2조)

- 폐지 ⇒ 2건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제23조의6)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제23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28. 최인식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702호, 2006.10.17.)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1일당)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현지교통비(1일당)를 조정함
(10,000원 → 20,000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4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3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어학연수와 동등한 영어교육의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빈부의 차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현황

위 치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486-1번지 외 22필지
토 지 면 적	23필지 48,777m ²
건 물 면 적	별도계획
사 업 비	5,500백만원(군비, 일반회계)
사 업 기 간	2006 ~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	자연녹지지역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0회 임시회 (2007. 1. 29. ~ 2. 5.)

1. 개최배경

제90회 임시회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순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6년 1월 17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7년 1월 29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1.29.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7.1.29.~2.5.(8일간) 2. 원안가결 3. 선임 • 최인식의원,송정문의원
2007.1.30. (화) 10:00	◀ 제2차 본회의 ▶ 1.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담당관실 】 【 기업유치단 】 【 보 건 소 】 【 총 무 국 】 ○ 총무과	1. 업무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 • 기업유치단장 정무득 • 보건소장 이영갑 • 총무국장 이삼재 • 총무과장 최동식
2007.1.31. (수) 10:00	◀ 제3차 본회의 ▶ 1.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총 무 국 】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1. 업무보고 • 총무국장 이삼재 • 회계정보과장 김지태 • 지방세과장 김인근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 경 제 국 】 ○ 지역경제과 ○ 환경관리과 ○ 농 산 과 ○ 축수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국장 김종득 • 지역경제과장 한동욱 • 환경관리과장 이훈환 • 농산과장 심성호 • 축수산과장 이성호
2007.2.1. (목) 10:00	◀ 제4차 본회의 ▶ 1.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생활지원국 】 ○ 생활지원과 ○ 복지사업과 ○ 문화관광과 ○ 자원위생과 【 건설도시국 】 ○ 건 설 과 ○ 도 시 과	1.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지원국장 오세곤 • 생활지원과장 이순옥 •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 문화관광과장 송성찬 • 자원위생과장 곽기수 • 건설도시국장 최광해 • 건설과장 김동훈 • 도시과장 정인동
2007.2.2. (금) 10:00	◀ 제5차 본회의 ▶ 1. 200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도시국 】 ○ 건 축 과 ○ 산 림 과 ○ 재난관리과	1.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도시국장 최광해 • 건축과장 이춘근 • 산림과장 고영명 • 재난관리과장 임덕철
15:00	상임위원회 활동	
2007.2.5. (월) 11:00	◀ 제6차 본회의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2. 5.

2) 제안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06. 9. 18일 제정경제부로부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 지정 고시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조례 목적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과 관련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 － 특구내에 홍보용 지주 이용 간판의 상단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0m를, 1면의 면적은 50㎡를, 간판합계 면적은 150㎡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 가능
 - － 특구내에 특화사업 관련 홍보용 간판의 조명을 함께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장소 등을 완화(안 제19조의2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2. 5.

2) 제안이유

-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도서관 위치 및 기능(안 제2조)
 - － 위 치 :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6-2번지 일원
 - － 기 능(안 제4조)
 -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공중예의 이용
 -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등
- 운영위원회
 - －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운영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 위원회의 기능(안 제8조)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도서관 이용
 - 사용료(안 제15조)
 - 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자료의 열람·대출 : 무료
 - 도서관 자료 복사 : A4 30원, B4·A3 40원(1매 단면 기준)
 - 변상책임(안 제16조)
 - 도서관 자료와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 자료 관리
 - 자료 대출(안 제17조)
 -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과 공무원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대출 가능
 -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안 제20조)
 -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2. 5.

2) 제안이유

- 지난 2006. 1. 11.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정함(안 제2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2. 5.

2) 제안이유

- 2005. 12. 7일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으로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관장사무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 2006. 4.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83조의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또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마약류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사무,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 추가(안 별표1)
-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추가(안 별표1)
 - － 산후조리업의 신고, 승계, 보고·출입·검사, 시정명령, 과태료 등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재산세 통합 등으로 인한 근거법령 변경부분 반영 및 위임사무명 조정(안 별표2)
 - －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삭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추가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무 추가(안 별표2)
 - －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확인조사
-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신설(안 별표3)
 - － 의회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 3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2. 5.

2) 제안이유

- 아파트 재건축으로 복원되어 행정리 신설이 필요한 온양읍과 신 택지조성 및 공동주택 입주로 주민수가 급증하여 행정리 신설이 필요한 범서읍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리장 정수 계를 322에서 324로 변경
- 온산읍 우봉리란을 전부 삭제하고, 온산읍 덕신리 행정리 “대한리”를 “동원”으로 명칭변경하고, 온산읍 덕신리에 행정리 “천지”를 신설하여 리장 정수 28을 29로 개정
- 온양읍 운화리에 행정리 “태화1리”에서 “태화1,3리”로 분리 신설하고 리장 정수 4를 5로, 온양읍 망양리 행정리 “망양”을 “망양1리”로, “원동1리”를 “망양2리”로, “원동2리”를 “망양3리”로 명칭변경하고, 온양읍 리장 정수 계 31을 32로 개정
- 범서읍 구영리에 행정리 “푸른1리”, “푸른2리”를 신설하고, 리장 정수 10을 12로, 범서읍 리장 정수 계 48을 50으로 개정
- 서생면 신암리에 행정리 “비학”을 삭제하고, 리장 정수 3을 2로, 서생면 리장 정수 계 21을 20으로 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1회 임시회 (2007. 4. 30. ~ 5. 14.)

1. 개최배경

제91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순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4월 16일 소집공고를 거쳐 2007년 4월 30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4.30.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7.4.30.~5.14. (15일간) 2. 원안가결 3. 선임 • 한성율의원, 이승춘·노진석·김영상공인회계사 4. 제안설명 • 부군수 이선범 5. 7명으로 구성 6. 선임 • 이수선의원, 권영호의원
14:00	상임위원회 활동	
2007.5.1. ~ 5.3.	상임위원회 활동	
2007.5.4. (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정질문의 건	2. 원안가결 3. 수정가결 4. 수정가결 5. 원안가결 6. 원안가결 7. 원안가결 8. 원안가결 9. 원안가결 10. 수정가결 11. 수정가결 12. 원안가결 13. 군정질문 • 한성울의원
2007.5.7. ~ 5.9.	상임위원회 활동	
2007.5.10. ~ 5.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7.5.14. (월) 11:00	◀ 제3차 본회의 ▶ 1.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2. 수정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 5. 군정질문의 건	3. 수정가결 4. 수정가결 5. 군정질문 • 서우규의원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5. 이순걸 의원 외 7명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 확실시 되는 현실 속에서 젊고 힘찬, 인구 30만 울주 건설에 걸맞는 성장 동력의 경쟁력확보와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건강보험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4조)
- 건강보험의 지원 절차 및 자격 상실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7조)
- 보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건강보험의 만기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만기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부담부분이 있는 경우의 조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안 제10조 중 단서 일부를 수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이 2006.5.24 제정·시행됨에 따라
- 울주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고는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해야 하며,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별표)
-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위촉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하기로 함(안 제4조)
- 금고지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서에 의거 약정체결하며, 약정서에는

수납금 송금·이체,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계약해지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약정기간은 3년으로 규정함(안 제6조)

- 금고는 회계별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등 자금 운용상황을 작성하여 상·하반기로 보고토록 함(안 제8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인원 및 대상의 일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안 제4조제3항 중 일부 내용 수정함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14조의2 신설)
 - － 1. 징 수 관 : 총무국장
 - － 2. 분 입 징 수 관 : 총무과장
 - － 3. 경 리 관 : 총무국장
 - － 4. 분 입 경 리 관 : 총무과장

- 5. 지 출 원 : 새마을업무 담당
- 6. 수입금지출원 : 새마을업무 담당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14.

2) 제안이유

- 총액인건비제에 부응하고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로교통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원위생과를 폐지하며, 그에 따른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실·국 조정
 - 명칭변경 : 경제국 ⇒ 지역경제국(안 제3조)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예산실(안 제4조)
- 과 조정
 - 신 설 : 도로교통과, 위생과
 - 폐 지 : 자원위생과
 - 명칭변경 : 산림과 ⇒ 산림공원과
 - 이 관 : 산림과(건설도시국 ⇒ 생활지원국)
- 분장사무 조정
 - 환경미화, 재활용, 위생행정, 공중위생, 식품위생, 한우불고기 특구에 관한 사무 추가 ⇒ 지역경제국장
 - 지역경제국장 분장사무중 교통지도, 상수도관리에 관한 사무 ⇒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장 분장 사무 중 산림의 조림, 육림관리, 산림녹지보호, 산림이용지도 등에 관한 사무 ⇒ 생활지원국장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공원과를 지역경제국으로 하고(안 제6조제1항), 환경관리과를 생활지원국으로(안 제6조의2제1항) 각각 수정하고, 환경미화, 재활용을 환경관리과로(안 제6조의2제2항), 오수를 건설과로(안 제7조제2항) 각각 수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14.

2) 제안이유

- 총액인건비제에 부응하고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로교통과, 위생과를 신설하고, 여유기구인 자원위생과를 폐지하며, 군정 4대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지방 이양사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증원 인력 24명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읍	면
현행	734	452	16	69	87	110
조정	758	473	16	69	89	111
증감	증24	증21	-	-	증2	증1

○ 직급별 조정

구분	계	정무	일반직							별정	기능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734	1	1	5	36	153	195	152	93	12	86
조정	758	1	1	5	37	158	203	156	100	12	85
증감	증24	-	-	-	증1	증5	증8	증4	증7	-	감1

- 영어마을 건축담당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 2005년 12월 26일 조례 제390호 부칙으로 규정된 한시정원 중 지방행정혁신 관련 인력(균형발전) 2명(일반직 6급 1명, 7급 1명)을 정원에 포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경쟁력 있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순증24명에서 3명을 감하여 순증21명으로 하고,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함

■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이장자녀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선 단일화(안 제7조)

- “학교장 또는 리장”에서 “이장”에게 지급하도록 단일화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지급정지 사유 중 명확하지 않은 문구 정비
- “리장”을 “이장”으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5조 및 제7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새마을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장학금의 종류 축소(안 제2조)
 - 장학금의 종류 중 “우등생”은 “일반”으로 개정하고, “특기생 장학금”은 삭제
- 장학생 선정방법 변경(안 제4조)
 - 지회장과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 ⇒ 지회장이 추천, 군수가 선정
- 장학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급시기 조정(안 제7조)
 -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제1항 제1호 ~ 제3호)
 - 지급정지 사유 중 명확하지 않은 문구 정비
- 조례명 등 일부 미비 된 문구 정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역모기지 실시주택 및 울산항만공사설립에 따른 개별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군세 감면 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6조의2 신설)
 - －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고령자(배우자 포함)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소유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
-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안 제18조의2 신설)
 - －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면제 및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1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05.8.4.공포, 2006.1.1.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구성 조정(안 제10조 제3항)
 - － 총무국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부칙 제2항)
 - － 제명 띄어쓰기와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6. 1. 11.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의 나이를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나이를 조정
 - － 20세 ⇒ 19세 (안 제2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1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군 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및 위원선정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조 내지 제5조)
 - － 위원회 및 선정단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회의 및 의견청취 등(안 제6조 내지 제9조)
 - － 위원회 및 선정단의 회의 및 관계전문가 및 읍·면 주민 대표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 수당 및 운영세칙(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 위원 및 단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부칙
 - － 유효기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읍·면 주민대표를 포함시키고 관계전문가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문 일부를 수정함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6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2건의 2007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은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어학 연수와 동등한 영어교육의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빈부의 차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심의를 득하고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나, 감정 평가 결과 부지매입비가 증액되었고,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영어마을 건립을 위한 협의시 건립부지는 우리군이 확보하고 건물은 한수원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으로 협의되었으나, 최종(2007.02.20.) 협의과정에서 한수원에서 건축비 등(20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인 인격도야를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관을 확립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 건축연면적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사항임
- 『구 전관저수지 매각』은 용도폐지되어 잡종지인 전관저수지에 대하여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장증설 중인 삼성SDI(주)에 매각하여 기업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취득(처분)재산

시설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울주 영어마을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위 치	서생면 명산리 486-1 외 22필지		
	토 지	48,777m ²	48,694m ²	감 83m ²
	건 물	—	지하1층/지상3층 9,900m ²	
	사 업 비	5,500백만원	23,700백만원	증 18,200백만원
	사업기간	2006~2008	2006~2008년	
청소년수련관	위 치	삼남 교동 292번지 외 3필지		
	토 지	9,923m ²		매입완료
	건 물	지하2층/지상3층 4,000m ²	지하2층/지상3층 5,533m ²	증 1,533m ²
	사 업 비	8,800백만원	11,500백만원	증 2,700백만원
	사업기간	2002~2006년	2002~2008년	
구 전관저수지 매각	위 치	삼남면 방기리 675번지 외 16필지		
	토 지	9,605m ²		
	건 물	—		
	사 업 비	매각 - 1,700백만원 개량비 공제 - 350백만원		
	사업기간	2007년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제외 하였으며, 구 전관저수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23. 송정문 의원 외 8명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윤리강령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23. 최인식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과 관련하여 기업유치단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별 소관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조정(안 제3조제2항)
 - － 산업건설위원회 : 기업유치단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2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4.

2) 제안이유

- 「건축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대형건축물 내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을 구체화 하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과 복합형 상가를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5항, 제6항)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심의대상에 포함
- 건축위원회의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 건축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항·제4항 및 안 제11조제3항)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의2 신설)
 - －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공사비의 1%를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치금으로 예치 등

- 건축허가 수수료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 함(안 제15조의3)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의2 신설)
 -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안 제49조의2 신설)
 -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안 제51조제2항)
 - － 도시미관을 위한 맞벽 건축 시 위해요소 예방을 위하여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제1항)
 - －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의 전면도로의 너비적용 기준을 구체화 함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3조제3항 및 제5항)
 - －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완화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2회 제1차 정례회 (2007. 7. 9. ~ 7. 18.)

1. 개회배경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위해 2007년 7월 9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7.9.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7.7.9.~7.18. (10일간) 2. 원안가결 3. 7명으로 구성 4. 선임 • 조충제의원, 서우규의원
2007.7.10. ~ 7.13.	상임위원회 활동	
2007.7.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7.7.18. (수) 11:00	◀ 제2차 본회의 ▶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청맞춤·면사무소소재지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수정가결 5.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수정가결
	7.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안가결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및 모범 이·반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직권면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리장” → “이장”(조례전반)
- 이·반장의 직권 면직 및 해촉 규정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6조)
- 이·반장의 임무규정을 실정에 맞게 조정(안 제7조)
- 이·반장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 2 신설)
 - － 모범 이·반장 표창수여,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지원근거 마련
 - － 복무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 단체보험 가입규정 신설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인하여 안 부칙 제2조 제4항 삭제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고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소액으로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세 세율을 조정하고, 일부 띄어쓰기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2,000원”을 “3,500원”으로 인상
(안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와 자구(字句)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5. 2.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2005.8.4.공포, 2006.1.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05.12.30.공포, 2006.1.1.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각 부서에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되어 있어 물품사용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자가 없었으나, 각 실·단·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안 제3조제2항, 안 제21조 ~ 안 제23조)
- 기증품의 취득시 주관부서에서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수령
 - 울산광역시울주군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
 - ⇒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안 제11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언양읍·온양읍 및 두서면사무소의 소재지가 구획정리나 합병 등으로 인한 지번 변동사항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언양읍사무소 소재지를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73번지”에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8-2번지”로 변경
- 온양읍사무소 소재지를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55번지”에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 253-1번지”로 변경
- 두서면사무소 소재지를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82-6번지”에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81-12번지”로 변경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7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2건의 2007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은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어학 연수와 동등한 영어교육의 효과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빈부의 차이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심의를 득한 후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영어마을 건립을 위한 협의 시 건립부지는 우리군이 확보하고 건물은 한수원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토록 하는 조건으로 협의되었으나, 최종(2007.02.20.) 협의과정에서 한수원에서 건축비 등(200억원)을 지원하고 건물을 우리군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전인적인 인격도야를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관을 확립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 건축연면적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사항임
- 『재경부 소유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재산 상에 건축되어 있는 공공청사(두동면사무소, 삼남면 주민자치센터, 삼동 보건진료소)를 미 대부 사용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의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으로 무단 점유·유희지에 대한 민간위탁(자산관리공사)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청사 부지의 민간위탁시 사용료 납부 등이 예상되며 민간위탁 이전 청사의 재건축 등에 대비하여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처분)재산

시설별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울주 영어마을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위 치	서생면 명산리 486-1 외 22필지		
	토 지	48,777m ²	48,694m ²	감 83m ²
	건 물	—	지하1층/지상3층 9,900m ²	
	사 업 비	5,500백만원	23,700백만원	증 18,200백만원
	사업기간	2006~2008	2006~2008년	
청소년수련관	위 치	삼남 교동 292번지 외 3필지		
	토 지	9,923m ²		매입완료
	건 물	지하2층/지상3층 4,000m ²	지하2층/지상3층 5,533m ²	증 1,533m ²
	사 업 비	8,800백만원	11,500백만원	증 2,700백만원
	사업기간	2002~2006년	2002~2008년	
재경부 소유 공공청사 부지매입	위 치	두동면 구미리 647-6번지 외 2필지		
	토 지	2,757m ²		
	건 물	—		
	사 업 비	719백만원		
	사업기간	2007~2008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7.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리·반의 명칭변경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2조와 관련 별표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일부개정
 - － 이장 정수 계를 “324”에서 “326”으로 변경,
 - － 온양읍 대안리에 행정리 기존 “연안2리”를 “연안4리”로 명칭변경하고, 기존 “연안 1, 3리” 일부(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상가 및 일반주택지역)를 “연안 2리”로 조정하며, 기존 “솔밭3리”를 “솔밭4리”로 명칭변경하고, 기존 “솔밭1리” 일부(아파트단지)를 “솔밭 3리”로, 남은 구획정리지구와 일반주택지역을 통합하여 조정하며, 기존 “솔밭2리” 일부(아파트단지 제외)를 “솔밭 1리”로 이장 정수 “9”를 “11”로 하고, 온양읍 이장 정수 계 “32”를 “34”로 개정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같은 회기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제4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 중 개별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설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7. 9. 송정문 의원 외 6명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25참전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6.25참전 유공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대상 및 사업(안 제3조 및 제4조)
-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3회 임시회 (2007. 10. 15. ~ 10. 19.)

1. 개최배경

제9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5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10.15.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4. 제9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7.10.15.~10.19. (5일간) 2. 원안가결 3. 보고 • 부군수 신장열 4. 선임 • 우순노의원, 이순걸의원
14:00	의회운영위원회	
2007.10.16. ~ 10.18.	상임위원회 활동	
2007.10.19. (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수정가결 4.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안 7.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원안가결 6. 원안가결 7. 의견서채택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7. 2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0. 17.

2) 제안이유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를 정함(안 제5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정함(안 제6조)
-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인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인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심사결과 : 부결

5) 부결사유

- 상습 침수, 산사태 등 재해위험예상지역은 우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으로 사유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음

■ 온산국가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8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17. 울산광역시장
- 의결일자 : 2007. 10. 19.

2) 제안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되고 『항만법』에 의거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로 중복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 현실여건상 조선업계 선박 건조 수주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장용지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작업효율성 저하는 물론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척하여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로서 조선건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사항임

3) 주요골자

- 사업현황
 - － 매립목적 : 조선시설용지(공업용지) 조성

- 조선시설 블록조립장 및 적치장, 물양장시설
 -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 우봉리 일원
 - － 면 적 : 232,730㎡(북측 206,730㎡, 남측 26,000㎡)
- 변경사유
 -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에서 제척하여 조선건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견서 요지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할 시 매립공사로 인하여 해양환경 변화 및 강양, 진하 등 인근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환경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 인근어장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 및 피해발생 시 피해 보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공장 근로자 숙소가 필요할 경우 숙소를 온산 지역 일원에 건립하는 등 주거지역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할 것
- 매립되는 지역 어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
- 직원 출퇴근 차량 주차장을 공장부지내 확보토록 노력할 것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0. 19.

2)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별 공포·시행(2006.4.28. 법률제7941호, 법률제7942호, 법률제7943호) 및 개정(2007.1.19. 법률제8247호)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노래연습장업 등록 건당 20,000원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건당 5,000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건당 20,000원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건당 5,000원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건당 20,000원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건당 5,000원
- 게임제공업 등록 및 허가 건당 20,000원
-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및 변경허가 건당 5,000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건당 20,000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건당 20,000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건당 5,000원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변경신고) 건당 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 건당 15,000원
-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건당 1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건당 20,000원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건당 5,000원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영화상영관 등록 1건 15,000원을 20,000원으로,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을 5,000원으로 조정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을 신설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0. 19.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0호)이 2007.6.1.개정 시행됨에 따라
- 울주군의 금고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금고지정의 방법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조정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금융기관을 지정
 - －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을 지정
- 금고의 지정절차 중 공고일 “90일”을 “60일”로 조정함
- 금고의 약정절차 중 약정일 “10일”을 “20일”로 조정함
-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안(의안번호 제8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0. 19.

2) 제안이유

- 지하수법(2005.5.31.), 동법 시행령(2005.11.30.), 동법 시행규칙(2005.12.21.)등이 개정공포 되어
- 2007.7.1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관리조례를 제정·운영토록 규정

3) 주요골자

-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금액산정 기준(안 제4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안 제12조)
-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산정방법 등을 규정(안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2조 ~ 안 제24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8. 송정문 의원 외 2명
- 의결일자 : 2007. 10. 19.

2) 제안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피해보상요건 및 대상(안 제3조)
- 농작물피해 신고 및 조사(안 제4조)
- 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안 제5조)
-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안 제6조 및 제7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0. 19.

2) 제안이유

- 현행 식품진흥기금의 용자조건이 울산광역시보다 이율이 높고 대부기간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용자 조건과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식품진흥기금 용자조건 조정(안 제8조제1항)
 - － 연리3% 3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
→ 연리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식품진흥기금 관리 공무원의 임명 조정(안 제12조제1항)
 - － 기금출납명령관 : 경제국장 → 지역경제국장
 - －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행정담당주사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4회 임시회 (2007. 11. 12. ~ 11. 16.)

1. 개회배경

제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전심의회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를 위하여 2007년 11월 12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11.12.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7.11.12.~11.16. (5일간) 2. 원안가결 3. 선임 • 한성윤의원, 최인식의원
2007.11.13. ~ 11.15.	상임위원회 활동	
2007.11.16. (금) 11:00	◀ 제2차 본회의 ▶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6.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서증인등비용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수정가결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	12. 수정가결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운영조례안	13.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9. 2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구활성화 촉진 기여

3) 주요골자

- 군수의 책무와 지원
- 특화사업의 기본원칙
- 특구발전추진위원회 설치
- 특구 홍보대사 위촉
- 특구운영의 평가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특구관련단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구관련단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배치되는 관련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법 조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유사내용을 포함하는 조문을 통합하였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2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16호, '06.12.30. 공포·시행)되고,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07.7.30.)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쓰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28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되,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율 적용(안 제31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 제39조)
 - － 사유건물의 경우 준공을 필한 경우에만 매각하도록 매각범위 축소
 - － 건물별 매각면적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
 - －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 － 제5호 자구수정(제1항 삭제로 인한 매각기준 면적 명시)
- 분수림의 설정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함에 따라 삭제함(안 제43조)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안 제63조)
 - － 총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필지별 300~600만원 한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2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불합리한 행정리 명칭과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위해 리·반의 명칭변경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2조와 관련 별표의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일부개정
 - － 이장 정수 계를 “326”에서 “336”으로 변경,
 - － 언양읍 구수리에 행정리 기존 “대동”을 “대암”으로 명칭변경하고,
- 범서읍 구영리에 행정리 기존 “대리”를 “대리1리”로 명칭변경하고, “대리 2, 3, 4, 5, 6, 7, 8리”를 신설하고, 기존 “점촌1리”에서 “점촌9리”를 분리 신설하고, 이장 정수 “12”를 “20”으로, 범서읍 이장 정수 계 “50”을 “58”로 개정
- 삼남면 교동리에 행정리 기존 “벌장”에서 “대진”, “태봉”으로 분리 신설하고, 이장정수 “8”을 “10”으로, 삼남면 이장 정수 계 “24”를 “26”으로 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10.4일자 전부개정 공포로 조례 본문 제1조(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로 수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2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기업하기 좋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안 제3조 내지 제5조)
 - － 자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 자금용자 및 관리(안 제6조 내지 제8조)
 - － 용자계획수립, 금융기관협조용자 및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 및 보고(안 제9조 내지 제11조)
 - －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및 위탁기관의 관련 자료보고에 관한 사항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약칭의 위치가 바뀌어 관련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법률상 정의가 없는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용자 지원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용자조건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음

■ 울산광역시을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한성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안 제1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한성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안 제1조)
-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조정(안 제3조제2항)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서우규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
-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조정
(안 제2조제2호·안 제2조제4호)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서우규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 및 자구(字句)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최인식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안 제1조) 및 자구(字句)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최인식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안 제1조·제4조·제5조)
- 일부 자구(字句)수정(안 제1조·제4조·제5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권영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안 제1조·제5조·제9조·제11조, 별표)
- 일부 자구(字句)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우순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명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1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우순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1. 16.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명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및 자구(字句)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5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19. ~ 12. 21.)

1. 개최배경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보고 및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해 2007년 11월 19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11.19.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7.11.19.~12.21. (33일간) 2. 원안가결 3. 제안보고 • 부군수 신장열 4. 보고 • 부군수 신장열 5. 7명으로 구성 6. 선임 • 송정문의원, 이수선의원
2007.11.20. ~ 12.4.	상임위원회 활동	
2007.12.5. (수) 11:00	◀ 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17호)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89호)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균정질문의 건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수정가결 4. 균정질문 • 이순걸의원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7.12.6.	상임위원회 활동	
2007.12.7. ~ 12.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7.12.13. (목) 11:00	<p>◀ 제3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광역시울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4.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수정가결 6. 수정가결 7. 원안가결 8. 수정가결 9. 원안가결 10. 원안가결 11. 원안가결 12. 수정가결 13. 원안가결 14.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15.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6.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 원안가결 16. 원안가결 17. 원안가결 18. 원안가결 19. 수정가결 20. 제안설명 • 부군수 신장열
2007.12.14. ~ 12.18.	상임위원회 활동	
2007.12.19.	대통령 선거일	
2007.12.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7.12.21. (금) 11:00	◀ 제4차 본회의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결과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이순걸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8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5.

2) 제안이유

- 응촌면 공공청사 부지매입은 1985년 신축된 면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 센터, 회의실 등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누수 등 청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응촌면 보건지소는 1988년 울산C.C에서 신축 기부채납한 주민복지 센터 일부를 개조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계획에 의거 의료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 신축청사 예정지는 현재 경지 정리된 생산녹지 지역이나 장치들 도시계획 변경을 군정 중점과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응촌면의 신흥 도심으로 개발 예정된 지역으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부지확보가 필요
- 추가매입 대상부지는 당초 공공청사 계획부지에 포함되었으나 지주와의 보상협의 문제로 제척한 부지이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매입 요구와 부정형 부지의 추가매입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함

3) 주요골자

- 위 치 : 응촌면 곡천리 231-1번지 외 6필지
- 부지면적 : 15,281㎡(기 취득 11,393, 추가매입 3,888)
- 시설계획

구 분	규 모	구 조	총별 면적 및 용도			비 고
			층수	면적(㎡)	용 도	
면사무소	지상3층 1,322㎡	철근콘 크리트	1	450	민원실/사무실/전산실/식당	
			2	450	주민자치센터/문서고/창고	
			3	422	대회의실/중대본부	
보건지소	지상2층 496㎡	"	1	320	사무실/진료실/창고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
			2	176	공중보건의 숙소	

- 소요예산 : 3,924백만원
(부지매입 622백만원/부지조성 150백만원/청사신축 3,152백만원)
- 재원조달 : 3,924백만원

- 부지매입(보상, 조성비포함) 및 면청사 신축 : 3,172백만원(일반회계)
- 보건지소 신축비 : 752백만원(국·시비 및 일반회계)
(국비 : 278, 시비 : 237, 군비 : 237)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협의체 업무담당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유급간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 조문의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수정

3) 주요골자

- 협의체의 간사를 협의체업무담당에서 대표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13조의 “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함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내용 중 간사의 업무를 대표협의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실무협의체의 사무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와 제14조(수당 등)의 순서를 변경함

■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07.1.5. 대통령령 제19829호)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에 따라 울주군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울주군 도로의 점용료도 현실화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1)
 -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량신고자(일명 쓰파라치)에 의한 담배꽂초투기 등 단순 위반행위에 대하여 포상금이 대부분 소진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방법 및 기준을 조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전문개정(2007.4.11., 법률 제8471호)됨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에서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로 지급하고 포상금액을 과태료처분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3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1만원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상품권) 지급으로 개정(안 제23조제1항)
-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월 10만원, 연간 5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신고자가 익명이거나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방법을 사업장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토록 개정(안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다량신고자의 영리목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 제23조제3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1인당 월 10만원, 연간 50만원”을 “1인당 월 10만원, 세대당 연간 50만원”으로 수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처리 하고 있으나,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및 감량화 유도를 위하여 “배출중량제” 시행에 따른 개정된 사항, 『폐기물관리법』개정 등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중 감량의무사업장 영업장 면적변경(안 제2조 제2호)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 지정·고시(안 제4조제1항)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재질·규격 변경(안 제10조)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안 제12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른 사항 등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0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늘어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방안을 강구하여 대단위 체육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3) 주요골자

- 울주군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 현황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 부과
- 사용료의 감면대상
-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체육시설 위탁관리 근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사용허가 및 사용시간, 사용료의 감면, 위탁관리 조항을 조정하여 군민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960,030	계	960,030
용 자 금 회 수	1,000	고유목적사업비	1,800
예 치 금 회 수	929,030	용 자 금	70,000
이 자 수 입	30,000	예 치 금	888,23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437,034	계	437,034
예 치 금 회 수	421,239	고유목적사업비	10,000
이 자 수 입	15,795	예 치 금	427,034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137,174	계	137,174
예 치 금 회 수	132,845	예 치 금	137,174
이 자 수 입	4,329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제65조, 제71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수립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과징금 및 시보조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206,592	계	206,592
예 치 금 회 수	196,592	고유목적사업비	4,410
이 자 수 입	4,000	예 치 금	202,182
기 타 수 입	6,000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0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8년도 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 운용규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4,568,358	계	4,568,358
출 연 금	917,828	고유목적사업비	1,049,566
예 치 금 회 수	3,518,792	예 치 금	3,518,792
이 자 수 입	131,738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1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5.

2) 제안이유

- 『온양운동장 부지취득』의 1건의 2007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온양운동장 부지취득』은 온양읍이 2004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제안 계획에 의거 운동장을 조성하여 읍민들의 체력증진,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의 상호교류증진 및 애향심 고취로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 『옹기마을 주차장 부지취득』은 행정자치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상호 협의한 옹기문화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지역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2009년 세계 옹기엑스포 축제 및 매년 옹기 축제 시 관광객을 위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주요골자

시설별	구 분	내 역
온 양 운 동 장 부 지 취 득	위 치	온양읍 고산리 839-1번지 외 28필지
	토 지	19,905m ²
	건 물	-
	사 업 비	3,580백만원
	사업기간	2007~2008
옹 기 마 을 주 차 장 부 지 취 득	위 치	온양읍 고산리 819-1번지 외 34필지
	토 지	33,711m ²
	건 물	-
	사 업 비	3,570백만원
	사업기간	2007~2008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1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5.

2) 제안이유

-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4건의 2008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은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2002년도에 조성 완료하여 주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운동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사업비 600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마사구장을 확장하여 인조잔디로 시설을 개량하였으나, 각종 대회 및 운동경기 시 주차장 부지 협소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매년 가중되고 있어 조기에 지역주민들의 시설물 이용 편의제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농경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은 2004년 행자부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목적으로, 삼남면 교동리 385번지 외 6필지 8,400㎡에 총사업비 4,683백만원(특교 600, 군비 4,083)으로 농수산물 유통직판장 건립을 계획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대형할인매장에 비하여 경쟁력과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울산원협에서 대형 하나로마트 건립추진으로 사업주체인 삼남농협이 2007. 11월 직판장 설명회 시 사업포기 의사로 직판장 건립은 중단상태에 이르렀으며, 울주군은 배, 단감, 시설채소, 쌀 등 주산지로서 농산물 보관 시설이 부족하여 수확기 위주 출하로 인한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보관 시설 확충으로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농산물 물류창고를 건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시설별	구 분	내 역	비 고
온 산 운 동 장 주 차 장 조성 공사 부지매입	위 치	온산읍 덕신리 980-1번지 외 2필지	
	토 지	6,373m ²	
	건 물	-	
	사 업 비	800백만원	
	사업기간	2008	
농 산 물 물 류 창 고 건 립	위 치	삼남면 방기리 590-3번지	
	토 지	1,426m ²	균유지
	건 물	1동/2층 827m ²	
	사 업 비	800백만원	
	사업기간	2008~2009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온산운동장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농산물물류창고 건립의 건은 건립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위치와 규모의 적정성 파악 등 보다 심도 있는 자료검토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외하였음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5. 이순걸 의원 외 8명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 년도의 의정활동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정수당 변경(조례안 제5조제1항)
-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을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9. 권영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2007.5.17.공포, 2008.1.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정(안 제1조·제3조·제10조)
-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최근 이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장 선출을 둘러싼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기 조정을 통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이·반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반장 임기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이·반장 임기 조정(안 제5조)
 - 현 행 : 임기 2년, 연임 가능
 - 변 경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2008년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군세사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6조의2)
 - － 연간종합소득을 부부합산종합소득으로, 주택가액을 주택공시가격으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9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감면사항이나,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로 이관(안 제10조의2)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15조)
 - － 2007. 12. 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 12. 31. 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에서 승용자동차로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2008.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 2009. 12. 31.까지 100분의33을 경감(안 제15조제1호)
 -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 외)는 2008. 12. 31.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33을 경감, 2009. 12. 31.까지 100분의16을 경감(안 제15조제2호)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부동산”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17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으로 함(안 제18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 개정 공포됨에 따라
-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기준 조정
 - －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 1건 300원 → 1건 5,000원
 - －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 1건 300원 → 1건 3,000원
 - －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5,000원 → 1건 30,000원
 -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5,000원 → 1건 10,000원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1건 10,000원 → 1건 20,000원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1건 10,000원 → 1건 30,000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장애인의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의 감면과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노인 인구의 복지확대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 10호)
- 장애인의 의료지원확대 차원에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1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 발급 시 감면(안 제14조제2항제12호)
- 일부 미비된 문구 정비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신설안인 제14조제2항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삭제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이순걸 의원 외 2명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야 할 사업과 시설물에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 업무를 이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심의를 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28. 이순걸 의원 외 8명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연간 회의 총 일수를 10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안 제3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안번호 제13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1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21.

2) 제안이유

- 온양 옹기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온양옹기회관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0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효율적인 옹기회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요내용 : 온양옹기회관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의회 동의
- 대상물건
 - － 소재지 :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491-3번지 외 1필지
 - － 규 모 : 대지 3,492㎡, 건물 736.64㎡(1층 16.64, 2층 720)
※ 3층 189.14㎡ 외고산마을회관으로 사용(무상사용 허가대상에서 제외)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무상사용예정자 : 온양옹기회관 운영위원회(배영화 외 9명)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3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1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21.

2) 제안이유

- 군청사는 1979년 건축된 노후 건물이며 지속적인 직제 확대에 의한 사무 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근 현대스포츠타운 일부를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 제2별관 1층을 농협 울주군지부에 임대하고 있어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된 바 있음
- 군청사 이전과 관련 2006년 계획된 별관 신축공사를 철회하고 부족한 사무 공간을 외부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및 협소한 사무공간 재배치와 연계 별관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임

3) 주요골자

- 위 치 : 후문입구 주차장 부지(구선관위)
- 구조 및 면적 : 철골 1동/3층 721.78㎡
 - － 1층 : 계단실(30.78㎡), 주차장(10면)
 - － 2층 : 사무실(346.36㎡)
 - － 3층 : 사무실(344.64㎡)
- 사무실 배치계획 : 5~6개과 수용(임차 사무실 해소 및 3개과 수용)
- 사 업 비 : 500,000천원 정도
- 시행방법 : 농협 울주군지부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21.

2)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2006. 12. 28. 개정(법률 제8098호), 2007. 6.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4급이상 공직자의 위원회 관할대상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 －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군 소속 5급 이하 공직자로 변경
- 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10조)
 - －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및 위원회의 활동 등을 보고하도록 명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6회 임시회 (2008. 1. 28. ~ 2. 5.)

1. 개회배경

제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 심의 등을 하기 위해 2008년 1월 28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8.1.28. (월) 11:00	◀ 제1차 본회의 ▶ 1.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9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원 선임의 건	1. 원안가결 • 회기 2008.1.28.~2.5.(9일간) 2. 원안가결 3. 선임 • 권영호의원, 조충제의원
2008.1.29. (수) 10:00	◀ 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기업유치단】 【보 건 소】	1. 업무보고 • 부군수 신장열 • 기획예산실장 김지태 • 기업유치단장 조수관 • 보건소장 이영갑 • 보건과장 강희애
15:00	상임위원회 활동	
2008.1.30. (수) 10:00	◀ 제3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 무 국】 ○ 총 무 과 ○ 회계정보과 ○ 지방세과 ○ 민원지적과	1. 업무보고 • 총무국장 이진벽 • 총무과장 송성찬 • 회계정보과장 이춘근 • 지방세과장 박경준 • 민원지적과장 송동석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8.1.31. (목) 10:00	◀ 제4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국】 ○ 지역경제과 ○ 위 생 과 ○ 농 산 과 ○ 축수산과 ○ 산림공원과	1. 업무보고 • 지역경제국장 김치진 • 지역경제과장 박인철 • 위생과장 최종범 • 농산과장 심성호 • 축수산과장 이성호 • 산림공원과장 김호기
2008.2.1. (금) 10:00	◀ 제5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생활지원국】 ○ 문화관광과 ○ 생활지원과 ○ 복지사업과 ○ 환경관리과	1. 업무보고 • 생활지원국장 김용섭 • 문화관광과장 김동명 • 생활지원과장 이외옥 • 복지사업과장 최재전 • 환경관리과장 이훈환
2008.2.4. (월) 10:00	◀ 제6차 본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도시국】 ○ 건 설 과 ○ 도로교통과 ○ 도 시 과 ○ 건 축 과 ○ 재난관리과	1. 업무보고 • 건설도시국장 김영태 • 건설과장 임차만 • 도로교통과장 이석철 • 도시과장 홍대의 • 건축과장 이진동 • 재난관리과장 엄주석
2008.2.5. (화) 11:00	◀ 제7차 본회의 ▶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수정가결 2. 수정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11. 이수선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2. 5.

2)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 및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향군인에 대한 행사초청,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 표창, 위문 등에 대한 예우 규정(안 제4조)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5조)
- 보조금 지원 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안 제6조)
-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안 제7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책무에 강제적 의미를 완화하고자 관련조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조항 일부를 수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2. 5.

2)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등(안 제3조~제5조)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제8조)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제10조)
-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제21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안 제22조~제23조)
- 울주군 새주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31조)
- 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 등(부칙)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요지

-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로 인해 행정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어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관련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새주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을 9명으로 상향 조정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3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2. 5.

2) 제안이유

-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 조정
 - －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 70,000원 → 100,000원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과 그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 50,000원 → 100,000원
 -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 30,000원 → 40,000원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과 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30,000원 → 40,000원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3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 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2. 5.

2) 제안이유

- 『서생면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의 1건의 2008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서생면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은 추가부지가 당초 공공청사 부지에 포함되었으나 보상협의를 되지 않아 제척된 부지이며, 부지 조성공사 후 3개의 공공청사(면청사 및 복지센터, 보건지소, 원전감시센터) 배치결과 건축법에 의한 인근 부지와 이격거리, 도시계획선 등으로 주건물인 면청사 및 복지센터가 부지 중앙 배치가 불가피하며, 서생면 이장단에서 원전주변지역기본지원금으로 부지를 추가확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공공청사 건립을 건의함에 따라 추진코자 하며,
- 『공유재산 매각』은 구 울주군보건소 및 올림푸스 관사를 매각코자하며 구 보건소는 2006년 2월 용도 폐지되어 창고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리 및 보수가 되지 않아 퇴색,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올림푸스 관사는 20년 된 아파트로 2급 관사로 활용하다가 현재 공실상태에 있으며 시설이 노후하고 민선시대 관외 관사의 존치가치 저하 등으로 매각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서생면 공공청사부지 추가매입

- 추가매입 부지현황

소 재 지	지적(m ²)	지목	소유자	소요예산 (천원)	비 고
계	1,294			1,100,000	부지조성비 포함
서생면 신암리 245	515	전	문정화	500,000	농지
서생면 신암리 산68	504	임야			
서생면 신암리 243	275	대지	최영식	600,000	식당

○ 청사 건립 현황

- － 위 치 : 서생면 신암리 산69-15번지 외 5필지
- － 부지면적 : 9,299㎡(기존 8,005, 추가 1,294)
- － 주요시설 : 면청사 및 복지회관(복합건물), 원전감시센터, 보건지소

○ 추가매입 부지 재원확보

- － 신고리원전 3·4호기가 2007년 9월 16일 실시승인 됨에 따라 승인 시점이후 지원되는 추가분 원전주변지역기본지원금 11억원을 서생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추가지원금 전액을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에 사용토록 결정

나) 공유재산(구 보건소 및 올림푸스 관사) 매각

○ 매각대상 재산현황

구 분	소 재 지	면 적	신축(매입) 년 도	예정가 (백만원)	비고
구 울주군 보 건 소	남구 신정동 1223-2번지	토지-855㎡ 건물(1동/3층) 1022.7㎡	1982	1,238	
올림푸스 관 사	남구 신정동 1656-1 올림푸스골든1010호	건물-84.76㎡(25.6평) 대지권(772,500분의 3,452)	1988	250	

○ 매각 예정금액

- － 구 울주군보건소 : 1,238백만원(가 감정가)
- － 올림푸스 관 사 : 250백만원(실 거래가)

○ 매각 방법 :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공개입찰(온비드)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7회 임시회 (2008. 4. 24. ~ 4. 30.)

1. 개회배경

제9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안전심의회 현장 방문,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전을 심사하기 위해 2008년 4월 24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8.4.24. (목) 11:00	<p>◀ 제1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 2008.4.24. ~ 4.30. (7일간) 원안가결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순결의원, 이성춘 · 노진석 · 김영삼공인회계사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우규의원, 우순노의원
2008.4.25. ~ 4.29.	상임위원회 활동	
2008.4.30. (수) 11:00	<p>◀ 제2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6.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 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위원회 재회부
	12.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원안가결
	13. 울산광역시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원안가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안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명칭, 종류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3조)

명 칭	종 류	위 치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울주군 온양읍 발리 279-2번지
삼남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499-168번지

-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군수가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5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군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5백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안 제 11조의3)

-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20조제5항 신설)
-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서 군수가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로 조정(안 제21조제1항)
- 주행세 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담보규정 신설(안 제39조의4제3항 신설)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4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삼동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의 1건의 2008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삼동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은 울산광역시의 종합장사시설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된 면청사이전사업으로 현청사의 협소와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지소 의료기반 확충 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의료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외고산옹기마을 사업부지 추가매입』은 전통옹기문화의 전승발전과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방, 가마 정비를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공방, 가마소유주가 상이한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함

3) 주요골자

- 가) 삼동면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삼동면 하잠리 966번지 외 14필지
- 부지면적 : 7,969㎡
- 소요예산 : 5,002백만원
- 시설계획 : 현대식 건축물 1,818㎡(550평)

구 분	규 모	구 조	층별 면적 및 용도			비 고
			층수	면적(평)	용 도	
면사무소	지하1 지상3층 400평	철근콘 크리트	지하1	40	문서고/창고/기계실	
			1	120	민원실/사무실/전산실/식당	
			2	120	회의실/자료실/휴게실/ 취미활동실	
			3	120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지상2층 150평	"	1	97	사무실/진료실/창고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
			2	53	공중보건의 숙소	

나) 외고산옹기마을사업부지 추가매입

- 취득 토지 현황 : 온양읍 고산리 산119-24번지 외 2필지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용도지역
합 계	3필지	5,900	1,880		
온양읍 고산리 산119-24	임	2,516	484	김재욱	제1종일반주거지역
온양읍 고산리 산119-32	임	640	566	"	"
온양읍 고산리 500-7	잡	2,744	830	"	"

- 매입 건물(공방, 가마) 현황

위 치	지 번	부지면적 (㎡)	건물현황(㎡)	비 고
온양읍 고산리	산119-24외 2필지	1,880	1층 3동 625㎡	토지구와 건물주 상이
			- 공방 215㎡	
			- 공방 219㎡	
			- 가마 191㎡	

- 소요예산 및 재원
 - － 부지 및 건물매입 : 404백만원
 - － 재원 : 전액 군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욕구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제1장 총칙】

가) 자본금(안 제4조)

- 공단의 자본금은 1억원으로 하고 군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나) 정관의 주요 기재사항(안 제5조)

- 사업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2장 사업】

가) 사업(안 제7조)

-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 사회복지시설, 읍·면·자치단체의집, 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제3장 임원 및 직원】

가) 임원(안 제9조)

-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
- 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함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나) 이사장(안 제10조)

-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다) 이사(안 제11조)

- 당연직이사 2명(군의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함
-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

라) 감사는 군의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함(안 제12조)

마) 직원의 임면(안 제17조)

-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제4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가) 설 치 :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이사장 임명시까지 존속(안 제18조, 제19조)

나) 구 성 : 7명으로 구성(안 제19조제1항)

- 군수 추천 2명
- 군의회 추천 2명
- 공단 이사회 추천 3명

다)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안 제19조제3항)

- 경영전문가
-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 공인회계사
 -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 위원장 선출 :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0조)
- 마) 회의(안 제22조)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회의 시작(5명),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4명)
- 바) 이사장후보의 추천(안 제23조)
- 선정방법 : 위원회에서 결정
 - 후보자 수 : 2명 이상

【제5장 재무회계】

- 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6조)
-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
- 나) 수입 및 정산(안 제27조)
- 수입 : 군 전입금, 위탁사업 대행 수수료, 그 밖의 재원
 - 정산 : 대행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즉시 군 세입으로 납입
- 다) 감독(안 제28조)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 공단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 －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장 보칙】

- 가) 공무원의 파견(안 제31조)
-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 가능

【부칙】

- 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공단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안 제3조)

4) 심사결과 : 위원회로 재회부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의 일부개정(2007.8.3.)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2.4.)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리계관리조례 중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수리계의 해산기준에 대하여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를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로,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편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 일부 미 정비된 문구 정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충렬공박제상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군민의 충, 의, 효, 열에 대한 전인교육효과 및 역사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렬공박제상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의 원활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념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14조 ~ 제19조)
-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제24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다양한 재해유형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검토위원의 기술 및 경험적노하우가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현장출장 등 시간·경제적 유발요인이 따르므로 현지 출장비 명목 등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수당 지급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서면검토 위주의 심사원칙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서면검토시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안 제13조)
-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의 사용 등 “법률 용어” 순화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안번호 제150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23. 이순걸 의원 외 8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행정자치부 자치분권팀-1543, 2006.11.7.)에 따라 적합한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공무국외여행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심사내용 및 심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51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8. 이순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의 도입에 따라 결산검사의 범위에 재무보고서를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52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8. 최인식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규칙 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규범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골자

-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

(안 제1조, 안 제15조, 안 제72조, 안 제84조, 안 제84조의1)

- 제명 및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을주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3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8. 한성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규칙 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규범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골자

- 제명 및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을주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4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8. 우순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규칙 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골자

- 제명 및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5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8. 서우규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규칙 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규범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골자

- 제명 및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156호)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18. 권영호 의원 외 5명
- 의결일자 : 2008. 4. 3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규칙 제명과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어문규범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골자

-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수정(안 제1조)
- 제명 및 일부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제98회 임시회 (2008. 5. 21. ~ 6. 4.)

1. 개회배경

제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08년 5월 21일에 개최하였다.

2. 의사일정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8.5.21. (수) 11:00	<p>◀ 제1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제9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기 2008.5.21.~6.4. (15일간) 원안가결 제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군수 신장열 7명으로 구성 결의문 채택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순걸의원, 한성윤의원
14:00	상임위원회 활동	
2008.5.22. ~ 5.29.	상임위원회 활동	
2008.5.30. ~ 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8.6.3.	상임위원회 활동	

일 시	의 사 일 정	심 의 결 과
2008.6.4. (수) 11:00	<p>◀ 제2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 조례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신고리원전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가결 2. 원안가결 3. 원안가결 4. 원안가결 5. 원안가결 6. 원안가결 7. 원안가결 8. 원안가결 9. 수정가결 10. 수정가결 11. 의견서채택 12. 원안가결 13. 의견서채택 14. 수정가결 15. 수정가결 16. 수정가결

3. 주요안건 처리결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13. 송정문 의원 외 4명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 및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자치단체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40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3. 13. 송정문 의원 외 4명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으로 군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문화원의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사업비 지원 및 재산 대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역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지원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신고리 원전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57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21.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신고리 원전 건설에 따른 기타시설용지(고리본부 물양장 신축) 조성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군자치단체 의회 의견 제출 요구가 있어 서생면 신암리 고리원전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골자

- 건 명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 위 치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고리원전지구 내 전면해상
- 매립면적 : 5,564㎡
- 용 도 : 물양장 3,121㎡(L=110m), 방파제 2,443㎡(L=290m)
- 기 간 : 2009. 5. ~ 2010. 10.
-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견서 요지

- 고리본부 물양장 신축공사 대상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고리원전단지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편해기물의 해상수송을 위한 물양장과 방파제를 축조하여 운송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도모하고자 하나, 주변일대는 기존 신고리원전 4개기 공사와 함께 해상에서도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인근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화산리 일대의 생활환경 및 농작물 피해에다 신암리, 나사리 앞 해상 생태계 변화초래로 어장피해가 예상되고,
- 물양장 신축공사장 주변해역에는 양식어업과 어선어업 등이 아직 활발한 곳으로, 공사완료 후 방사선편해기물을 해상수송 할 경우 위험물질 수송으로 어민들의 불안감과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연안어업 활동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 농수산물생산자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서생배, 서생란, 양송이, 각종 수산물의 브랜드가치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을 염려하고 있어 새로운 대규모 물양장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보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에 위치한 방사선편해기물 임시보관시설 인근의 물양장을 이용할 것을 의견제시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비율을 조정하고,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골자

-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비율을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안 제7조제4항제2호)
- 일부 자구 등을 현행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60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7.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110번지 일원에 1975. 10. 8.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결정된지 30여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당해 지역에 공동묘지를 조성함이 불합리한 바, 금회 공동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하고,
-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인하여 화물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터미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도시관리계획(공동묘지)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공동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공동묘지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대	70,479	감)70,479	-	'75.10.8. 경고172호

○ 공동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공동묘지	폐 지	공동묘지로 결정된 지 3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묘 지조성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금회 장기미 집행 시설에 대하여 폐지코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및 사유서

○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	화물자동차 정 류 장	화물터미널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대	-	69,563	69,563	

○ 자동차정류장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5	화물자동차 정 류 장	신 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인근지역 물동량 증 가에 대비하여 화물자동차정류장을 신설하고자 함

4)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5) 의견서 요지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현실적으로 조성이 불합리한 “공동묘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나,
- 현지 지형은 능선으로 소나무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보존녹지로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온산읍 삼평·종곡마을 간 공해차단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용도를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함은 공해차단 녹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현재와 상응한 공해차단녹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62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반구서원 이전복원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외 1건의 2008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반구서원 이전복원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은 포은 정몽주, 희재 이언적, 한강 정구선생의 뜻을 이어받는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반구서원의 이전복원을 위하여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함
현 반구서원은 사연담 건설시 수몰 이전으로 급조되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이 많으며,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13호인 반구서원유허비와의 역사적 관련성 및 일대의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암각화 박물관과 연계할 경우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이전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진하마을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토지매입 및 신축』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2008년도 원전기본지원사업으로 신청되어 2008. 1. 30. 제21차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반구서원 확장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 취득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지적(m ²)	소유지	용도지역	비고
언양 대곡리 884-1	전	2,007m ²	최정, 최병희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언양 대곡리 889-1	묘지	393m ²	최현만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 신축 건축물 현황

지번	규모	연면적(m ²)	구조	용도
언양 대곡리 884-1	지상1층6동	200	목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 사업비 : 1,550백만원(시비 : 650백만원 / 군비 : 900백만원)

나) 진하마을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토지매입 및 신축

○ 취득 토지 현황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용도지역
서생면 진하리 68-1	대지	663.5	663.5	이도엽	일반상업지역

○ 시설계획

- 1층 : 462m²(회센터 및 재래형시장)

- 2층 : 198m²(주민휴게실)

규모	구조	층별 면적 및 용도		
		층수	면적(m ²)	용도
지상2층 60m ²	철근콘크리트	2	1동/660m ²	복지시설 및 공동판매장

○ 사업비 : 990백만원(특별회계 : 원전기본지원사업비)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 요지

- 반구서원 확장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민원 등 제반사항 해소 후 사업시행 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부분은 제외하고 토지 매입 부분만 승인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 사업자금은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유사목적의 사업을 광역단체(농어촌 육성기금)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1973. 6. 7. 울주군조례 제 245호로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 시대적·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5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2007.5.17.공포·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2007.10.4.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제2조)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2007.5.11.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주민등록법」의 전부개정(2007.5.11.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 자구(字句) 수정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제5호)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변경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169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대표적인 일출 관광지인 간절곶의 관광과 먹거리를 결합한 어촌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에 있는 간절곶 관광 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회센터는 울주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회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 원칙을 규정함(안 제7조)
-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을 규정함(안 제8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 요지

- 제정안 제8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는 대부분 요율을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여도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회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므로 삭제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1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이 개정(2007.12.20.)됨에 따른 조례 정비와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대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대상 위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3항)
-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른 감시센터 요원의 자격요건과 업무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 감시센터 요원 중 사무원(행정팀장, 사무보조원)의 임명시 다른 요원의 경우와 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요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안 제15조)

4) 심사결과 : 수정가결

5) 수정 요지

-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3항제4호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 주민대표 사이에 “인근마을”을 삽입하여 “울주군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인근마을 주민대표 5명”으로 수정함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문 채택안(의안번호 제171호)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20. 서우규 의원 외 8명
- 의결일자 : 2008. 5. 21.

2) 제안이유

- 최근 광우병 우려로 인한 우리나라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야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이후 광우병 발생 우려로 인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관계자는 국민 불안에 따른 불안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국제무역사무국 기준 등을 들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 협상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즉각 수입중단 등 검역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국가 검역주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권까지 훼손하고 있고,
- 또한 한우농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 결의하는 바임

4) 심사결과 : 결의문 채택

5) 결의문 요지

- 광우병 위험 등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협상 촉구함
-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소뼈 및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을 반대함

- 우리의 먹거리인 한우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함



제 2 장

예산 및 결산 처리 현황

예산 및 결산처리 현황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6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8. 1.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6년도 예산액 (1회추경 예산)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12,666,451	279,634,498	33,031,953	11.8%
일 반 회 계	289,055,144	262,607,638	26,447,506	10.1%
특 별 회 계	23,611,307	17,026,860	6,584,447	38.7%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43,173	393,265	149,908	38.1%
의료급여기금	180,404	137,157	43,247	31.5%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7,069,651	7,030,000	39,651	0.6%
주 차 장	272,783	220,220	52,563	23.9%

회 계 별	2006년도 예산액 (1회추경 예산)	기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율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4,383,835	8,824,307	5,559,528	63.0%
농공단지조성사업	36	2	34	1700%
수질개선	99,493	98,956	537	0.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1,061,932	322,953	738,979	228.8%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예산심의내역				확정예산액
		삭감액		예비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12,666,451	0	792,597	11,841,284	12,633,881	312,666,451
일반회계	289,055,144	0	760,297	6,059,695	6,819,992	289,055,144
특별회계	23,611,307	0	32,300	5,781,589	5,813,889	23,611,307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543,173	0	0	148,948	148,948	543,173
의료급여 기금	180,404	0	0	13,500	13,500	180,404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7,069,651	0	32,300	0	32,300	7,069,651
주차장	272,783	0	0	50,463	50,463	272,783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14,383,835	0	0	5,566,815	5,566,815	14,383,835
농공단지 조성사업	36	0	0	36	36	36
수질개선	99,493	0	0	0	0	99,493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	1,061,932	0	0	1,827	1,827	1,061,932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7회 제1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3.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1.1.~12.3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합 계	423,837,445,034	268,552,097,370	155,285,347,664
일반회계	373,241,726,570	243,987,853,230	129,253,873,340
특별회계	50,595,718,464	24,564,244,140	26,031,474,324

- 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55,285,347,664	52,497,536,110	14,216,458,450	40,855,364,660	5,511,459,800	42,204,528,644
일반회계	129,253,873,340	49,424,079,110	13,734,877,730	24,670,264,940	5,494,858,490	35,929,793,070
특별회계	26,031,474,324	3,073,457,000	481,580,720	16,185,099,720	16,601,310	6,274,735,574

4. 심의결과

가. 세입·세출결산

○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입잔액 ㉢=㉠-㉡
합 계	423,837,445,034	268,552,097,370	155,285,347,664
일반회계	373,241,726,570	243,987,853,230	129,253,873,340
특별회계	50,595,718,464	24,564,244,140	26,031,474,32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420,388,388	220,480,000	199,908,388
의료급여기금	138,832,272	73,595,810	65,236,462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549,604,910	5,170,900	544,434,010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6,000,651,340	240,000,000	5,760,651,340
주차장	271,502,630	223,938,470	47,564,1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8,378,834,818	20,118,184,740	18,260,650,078
농공단지조성	15,155,276	15,118,740	36,536
수질개선	7,137,000	6,600,000	537,00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4,813,611,830	3,661,155,480	1,152,456,350

○ 세 입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합 계	422,188,601,080	442,863,696,974	423,837,445,034	865,615,280	19,026,251,940
일반회계	371,572,733,770	391,359,600,750	373,241,726,570	864,761,310	18,117,874,180
특별회계	50,615,867,310	51,504,096,224	50,595,718,464	853,970	908,377,760

○ 세 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22,188,601,080	307,967,832,030	268,552,097,370	107,569,359,220	46,067,144,490
일반회계	371,572,733,770	277,330,252,240	243,987,853,230	87,829,221,780	39,755,658,760
특별회계	50,615,867,310	30,637,579,790	24,564,244,140	19,740,137,440	6,311,485,730

○ 잉여금내역

(단위 : 원)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155,285,347,664	52,497,536,110	14,216,458,450	40,855,364,660	5,511,459,800	42,204,528,644
일반회계	129,253,873,340	49,424,079,110	13,734,877,730	24,670,264,940	5,494,858,490	35,929,793,070
특별회계	26,031,474,324	3,073,457,000	481,580,720	16,185,099,720	16,601,310	6,274,735,574

나. 기금결산

○ 총괄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합계	2,868,624,484	371,290,410	2,831,176,180	2,459,885,770	3,239,914,894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13,004,819	-5,101,560	2,898,440	8,000,000	107,903,259
노인복지기금	106,589,575	5,900	5,900	0	106,595,475
식품진흥기금	166,556,650	65,858,170	118,442,170	52,584,000	232,414,820
재해대책기금	1,873,854,310	-1,873,854,310	520,497,460	2,394,351,770	0
재난관리기금	608,619,130	2,184,382,210	2,189,332,210	4,950,000	2,793,001,340

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권현황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계	1,908,059,952	337,000,000	346,694,192	1,898,365,760
일반회계	179,000,000	0	0	179,000,000
특별회계	1,729,059,952	337,000,000	346,694,192	1,719,365,760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377,284,030	220,000,000	264,410,000	1,332,874,030
의료급여기금	3,197,852	0	1,526,712	1,671,140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33,908,070	5,000,000	3,103,460	35,804,6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14,670,000	112,000,000	77,654,020	349,015,980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도말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원금)+이자

○ 채무현황 : 해당없음

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193,837,084,686	10,654,997,740	16,763,800	204,475,315,626
행정재	186,355,486,686	10,422,929,840	900,000	196,777,516,526
공공용 재산	135,910,156,912	9,240,822,840	900,000	145,150,079,752
공용 재산	50,445,329,774	1,182,107,000	0	51,627,436,774
기업용 재산	0	0	0	0
보존 재산	864,634,000	78,829,100	0	943,463,100
잡종 재산	6,616,964,000	153,235,800	15,863,800	6,754,336,000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증 가		감 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986	3,839,136,000	96	441,845,000	58	578,001,000	1,024	3,702,980,000
업무용	835	2,182,285,000	74	119,371,000	46	480,495,000	863	1,821,161,000
사업용	151	1,656,851,000	22	322,474,000	12	97,506,000	161	1,881,819,000

마. 금고의 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액	세출액	잔액	비고
합 계	423,837,445,034	268,552,097,370	155,285,347,664	공공예금 환매채 등
일반회계	373,241,726,570	243,987,853,230	129,253,873,340	
특별회계	50,595,718,464	24,564,244,140	26,031,474,32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420,388,388	220,480,000	199,908,388	
의료급여기금	138,832,272	73,595,810	65,236,462	
국민기초생활안정기금	549,604,910	5,170,900	544,434,010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6,000,651,340	240,000,000	5,760,651,340	
주차장	271,502,630	223,938,470	47,564,1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8,378,834,818	20,118,184,740	18,260,650,078	
농공단지조성	15,155,276	15,118,740	36,536	
수질개선	7,137,000	6,600,000	537,00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4,813,611,830	3,661,155,480	1,152,456,350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7회 제1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7. 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9. 1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일 반 회 계	441,900,000	415,496,130	412,686,130	6,821,000	22,392,870

4. 심의결과

- 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결정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2,381,906,000	441,900,000	415,496,130	412,686,130	6,821,000	22,392,870

- 특별회계 : 집행실적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89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15.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7년 예산액	2006년 예산액 (당 초)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19,442,417	279,634,498	39,807,919	14.2%
일 반 회 계	295,400,253	262,607,638	32,792,615	12.4%
특 별 회 계	24,042,164	17,026,860	7,015,304	41.2%
새마을소득특별지원	389,060	393,265	△4,205	△1.0%
의료급여기금	142,106	137,157	4,949	3.6%
종합장사시설주변 지역지원	7,058,128	7,030,000	28,128	0.4%
주차장	220,220	220,220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5,238,913	8,824,307	6,414,606	72.6%
농공단지조성사업	0	2	△2	△100%
수질개선	79,737	98,956	△19,219	△19.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464,000	322,953	141,047	43.6%
기반시설	450,000	0	450,000	신설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예산심의내역				확 정 예산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19,442,417	175,000	11,482,335	4,924,738	16,389,186	319,267,417
일 반 회 계	295,400,253	175,000	10,865,417	2,687,263	13,534,793	295,225,253
특 별 회 계	24,042,164	0	616,918	2,237,475	2,854,393	24,042,16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389,060	0	0	84,340	84,340	389,060
의 료 급 여 기 금	142,106	0	0	14,306	14,306	142,106
종합장사시설주변 지 역 지 원	7,058,128	0	0	0	0	7,058,128
주 차 장	220,220	0	0	16,936	16,936	220,2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5,238,913	0	616,918	1,706,181	2,323,099	15,238,913
농공단지조성사업	0	0	0	0	0	0
수 질 개 선	79,737	0	0	0	0	79,737
댐 건설 및 주변 지 역 지 원	464,000	0	0	0	0	464,000
기 반 시 설	450,000	0	0	415,712	415,712	450,000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9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2. 8.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6. 12. 22.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제1회 추경)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68,894,435	312,666,451	56,227,984	18.0%
일 반 회 계	322,048,788	289,055,144	32,993,644	11.4%
특 별 회 계	46,845,647	23,611,307	23,234,340	98.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43,173	543,173	0	—
의 료 급 여 기 금	180,404	180,404	0	—
중 합 장 사 시 설 주 변 지 역 지 원	7,069,651	7,069,651	0	—
주 차 장	272,783	272,783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7,618,175	14,383,835	23,234,340	161.5%
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36	36	0	—
수 질 개 선	99,493	99,493	0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1,061,932	1,061,932	0	—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예산심의내역				확 정 예산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 입	세 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68,894,435	0	610,148	49,607,377	50,216,325	368,894,435
일 반 회 계	322,048,788	0	610,148	21,389,755	21,998,703	322,048,788
특 별 회 계	46,845,647	0	0	28,217,622	28,217,622	46,845,647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43,173	0	0	148,948	148,948	543,173
의 료 급 여 기 금	180,404	0	0	13,500	13,500	180,404
종합장사시설주변 지역지	7,069,651	0	0	32,300	32,300	7,069,651
주 차 장	272,783	0	0	60,299	60,299	272,78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7,618,175	0	0	27,960,712	27,960,712	37,618,175
농공단지조성사업	36	0	0	36	36	36
수 질 개 선	99,493	0	0	0	0	99,49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1,061,932	0	0	1,827	1,827	1,061,932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1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4. 20.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5. 14.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352,091,638	319,267,417	32,824,221	10.3%
일 반 회 계	309,522,824	295,225,253	14,297,571	4.8%
특 별 회 계	42,568,814	24,042,164	18,526,650	77.1%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57,854	389,060	268,794	69.1%
의료급여기금	184,745	142,106	42,639	30%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7,058,128	7,058,128	0	—
주 차 장	281,139	220,220	60,919	27.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3,438,193	15,238,913	18,199,280	119.4%
수 질 개 선	85,755	79,737	6,018	7.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413,000	464,000	△51,000	11%
기 반 시 설	450,000	450,000	0	—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예산심의내역				확 정 예산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 입	세 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52,091,638	0	6,326,548	15,212,624	21,539,172	352,091,638
일 반 회 계	309,522,824	0	512,048	4,085,616	4,597,664	309,522,824
특 별 회 계	42,568,814	0	5,814,500	11,127,008	16,941,508	42,568,81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657,854	0	0	353,134	353,134	657,854
의료급여기금	184,745	0	0	15,700	15,700	184,745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7,058,128	0	0	0	0	7,058,128
주차장	281,139	0	0	16,577	16,577	281,13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33,438,193	0	5,814,500	10,325,885	16,140,385	33,438,193
수질개선	85,755	0	0	0	0	85,755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	413,000	0	0	0	0	413,000
기반시설	450,000	0	0	415,712	415,712	450,000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92회 제1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5.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1. 1~12. 3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481,234,594,636	291,125,622,658	190,108,971,978
일 반 회 계	414,240,929,650	275,829,496,060	138,411,433,590
특 별 회 계	66,993,664,986	15,296,126,598	51,697,538,388

4. 심의결과

가. 세입·세출 결산

○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입잔액 ㉢=㉠-㉡
합	계	481,234,594,636	291,125,622,658	190,108,971,978
일	반 회 계	414,240,929,650	275,829,496,060	138,411,433,590
특	별 회 계	66,993,664,986	15,296,126,598	51,697,538,388
기 타 특 별 회 계	새 마을 소득 특별 지원	602,817,628	284,023,090	318,794,538
	의 료 급 여 기 금	183,821,440	142,575,220	41,246,220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12,814,071,598	1,980,408,560	10,833,663,038
	주 차 장	253,155,750	202,236,480	50,919,270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51,413,601,200	11,658,138,235	39,755,462,965
	농 공 단 지 조 성	36,530	0	36,530
	수 질 개 선	99,493,000	93,752,620	5,740,380
	댐건설및주변 지역 지원	1,626,667,840	934,992,393	691,675,447

○ 세 입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합 계	476,463,794,220	501,371,154,236	481,234,594,636	335,424,030	20,136,559,600
일반회계	409,878,009,780	433,431,344,940	414,240,929,650	335,424,030	19,190,415,290
특별회계	66,585,784,440	67,939,809,296	66,993,664,986	0	946,144,310

○ 세 출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76,463,794,220	327,035,436,963	291,125,622,658	120,023,345,220	65,314,826,342
일반회계	409,878,009,780	304,797,705,985	275,829,496,060	98,576,205,630	35,472,308,090
특별회계	66,585,784,440	22,237,730,978	15,296,126,598	21,447,139,590	29,842,518,252

○ 잉여금내역

(단위 : 원)

회계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90,108,971,978	54,043,603,740	7,314,576,970	58,665,164,510	4,911,796,920	65,173,829,838
일 반 회 계	138,411,433,590	53,501,962,260	5,370,975,830	39,703,267,540	4,878,728,300	34,956,499,660
특 별 회 계	51,697,538,388	541,641,480	1,943,601,140	18,961,896,970	33,068,620	30,217,330,178

나. 기금 결산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B)=(C-D)	수납액(C)	지출액(D)	
합 계	3,239,914,894	1,111,060,138	2,038,260,738	927,200,600	4,350,975,032
기초생활보장기금	0	955,330,080	1,017,330,080	62,000,000	955,330,080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07,903,259	307,141,280	307,141,280	0	415,044,539
노 인 복 지 기 금	106,595,475	5,960	5,960	0	106,601,435
식 품 진 흥 기 금	232,414,820	7,980,958	7,980,958	0	240,395,778
재 난 관 리 기 금	2,793,001,340	△159,398,140	705,802,460	865,200,600	2,633,603,200

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권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1,872,813,190	620,251,120	565,842,110	1,927,222,200	
일 반 회 계	179,000,000	185,000,000	109,000,000	255,000,000	
특 별 회 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1,304,443,320	280,000,000	390,650,000	1,193,793,320
	의료급여기금	1,671,140	0	40,000	1,631,1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51,720,000	93,251,120	65,651,120	379,320,000
기 초 생 활 보 장 기 금	35,978,730	62,000,000	500,990	97,477,740	

※ 당해연도말 현재액 = 전년말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원금)+이자

○ 채무현황 : 해당없음

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합 계	204,475,315,626	22,693,798,774	3,937,483,140	223,231,631,260
행정 재산	196,777,516,526	22,387,534,024	3,695,687,390	215,469,363,160
공공용 재산	145,150,079,752	22,079,307,554	3,695,687,390	163,533,699,916
공용 재산	51,627,436,774	308,226,470	0	51,935,663,244
기업용 재산	0	0	0	0
보존 재산	943,463,100	0	0	943,463,100
잡종 재산	6,754,336,000	306,264,750	241,795,750	6,818,805,000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원)

구분	전년도 말 보유 현황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보유 현황	
			증 가		감 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10	1,843,265,890	31	375,383,000	20	142,144,200	221	2,076,504,690

※ 전년도말 현재액의 차액은 행정자치부의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기준 변경('06. 12. 27)으로 전년도말 현재 포함된 814건 1,859,714,110원을 정수물품에서 제외

마. 금고의 결산

○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세 입 액	세 출 액	잔 액
합 계	481,234,594,636	291,125,622,658	190,108,971,978
일반회계	414,240,929,650	275,829,496,060	138,411,433,590
특별회계	66,993,664,986	15,296,126,598	51,697,538,388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02,817,628	284,023,090	318,794,538
의료급여기금	183,821,440	142,575,220	41,246,220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12,814,071,598	1,980,408,560	10,833,663,038
주차장	253,155,750	202,236,480	50,919,2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1,413,601,200	11,658,138,235	39,755,462,965
농공단지조성	36,530	0	36,530
수질개선	99,493,000	93,752,620	5,740,38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1,626,667,840	934,992,393	691,675,447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92회 제1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2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7. 1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 반 회 계	6,670,291,000	1,949,773,240	1,156,290,940	5,489,996,390	24,003,670

4. 심의결과

- 일반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결정액	지 출 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21,998,703,000	6,670,291,000	1,949,773,240	1,156,290,940	5,489,996,390	24,003,670

- 특별회계 : 집행실적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95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13.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액	2007년 예산액 (당 초)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64,850,824	319,267,417	45,583,407	14.3%
일 반 회 계	324,214,577	295,225,253	28,989,324	9.8%
특 별 회 계	40,636,247	24,042,164	16,594,083	69.0%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44,295	389,060	155,235	39.90%
의료급여기금	141,776	142,106	-330	0.23%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16,874,669	7,058,128	9,816,541	139.08%
수질개선	61,112	79,739	-18,625	△23.3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3,370,000	464,000	2,906,000	626.29%
주차장	269,000	220,220	48,780	22.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181,895	15,238,913	3,942,982	25.87%
기반시설	193,500	450,000	-256,500	△57.00%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예산심의내역				확 정 예산액
		삭 감 액		예 비 비		
		세입	세출	편성액	확정액	
합 계	364,850,824	853,000	31,973,744	4,484,869	35,605,613	363,997,824
일 반 회 계	324,214,577	853,000	9,135,664	3,242,055	11,524,719	323,361,577
특 별 회 계	40,636,247	0	22,838,080	1,242,814	24,080,894	40,636,247
새마을소득특별지원	544,295	0	0	139,575	139,575	544,295
의료급여기금	141,776	0	0	8,700	8,700	141,776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16,874,669	0	8,016,300	0	8,016,300	16,874,669
수질개선	61,112	0	0	0	0	61,112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	3,370,000	0	0	0	0	3,370,000
주차장	269,000	0	0	66,237	66,237	269,000
발전전소 주변지역지원	19,181,895	0	14,821,780	859,140	15,680,920	19,181,895
기반시설	193,500	0	0	169,162	169,162	193,500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5회 제2차 정례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2. 04.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7. 12. 21.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7년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381,185,441	352,091,638	29,093,803	8.3%
일 반 회 계	329,190,518	309,522,824	19,667,694	6.4%
특 별 회 계	51,994,923	42,568,814	9,426,109	22.1%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57,854	657,854	0	0.0%
의료급여기금	192,286	184,745	7,541	4.1%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7,058,128	7,058,128	0	—
주 차 장	281,139	281,139	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3,989,700	33,438,193	551,507	1.6%
수 질 개 선	85,755	85,755	0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9,446,524	413,000	9,033,524	2187.3%
기 반 시 설	283,537	450,000	△166,463	△37.0%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삭 감 액		확정예산액
		세 입	세 출	
합 계	381,185,441	0	0	381,185,441
일 반 회 계	329,190,518	0	0	329,190,518
특 별 회 계	51,994,923	0	0	51,994,923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57,854	0	0	657,854
의료급여기금	192,286	0	0	192,286
종합장사시설주변 지역지	7,058,128	0	0	7,058,128
주 차 장	281,139	0	0	281,1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3,989,700	0	0	33,989,700
수 질 개 선	85,755	0	0	85,75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9,446,524	0	0	9,446,524
기 반 시 설	283,537	0	0	283,537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8회 임시회)

1. 심의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5. 9. 울주군수
- 의결일자 : 2008. 6. 4.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울주군의회 의결을 득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432,453,113	363,997,824	68,455,289	18.81%
일 반 회 계	382,001,084	323,361,577	58,639,507	18.13%
특 별 회 계	50,452,029	40,636,247	9,815,782	24.16%
새마을소득특별지원	748,498	544,295	204,203	37.52%
의료급여기금	186,883	141,776	45,107	31.82%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16,874,669	16,874,669	0	—
수질개선	68,014	61,112	6,902	11.29%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3,370,000	3,370,000	0	—
주차장	425,885	269,000	156,885	58.3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8,584,580	19,181,895	9,402,685	49.02%
기반시설	193,500	193,500	0	—

4. 심의결과

○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삭 감 액		확정예산액
		세 입	세 출	
합 계	432,453,113	37,500	6,978,597	432,453,113
일 반 회 계	382,001,084	37,500	6,978,597	382,001,084
특 별 회 계	50,452,029	0	0	50,452,029
새마을소득특별지원	748,498	0	0	748,498
의료급여기금	186,883	0	0	186,883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16,874,669	0	0	16,874,669
수질개선	68,014	0	0	68,014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3,370,000	0	0	3,370,000
주차장	425,885	0	0	425,8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8,584,580	0	0	28,584,580
기반시설	193,500	0	0	193,500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 3 장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 2006년 행정사무감사 (제89회 제2차 정례회)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군정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 제고 및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의회에 부여된 역할수행에 충실하고자 함

2. 감사 실시 기간 : 2006. 11. 21. ~ 11. 27.(7일간)

3. 감사 실시 장소 : 의회 및 읍·면 회의실

4. 감사대상기간 사무 : 2005. 11. 1. ~ 2006. 10. 31.(1년)

5.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대상 기관 (부서)	감 사 반	감사장소
계	32개 부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부서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5명	제1회의실
내무위원회	21개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국 4, 생활지원국 3, 보건소, 읍·면 12)	내무위원장 외 4명	제1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	10개부서 (경제국 5, 건설도시국 5)	산업건설위원장 외 3명	제2회의실

6. 감사 실시 절차

-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현지 확인 (검증)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질의 및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8. 감사 실시 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계	176	8	76	92
시 정	96	6	32	58
건 의	80	2	44	34
모 범 사 례	—	—	—	—

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의 회 사 무 과	1	의원과 주민 대표자와의 간담회 계획수립 추진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과 주민대표자와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2007년도 의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이 나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의원과 주민 대표자와의 읍·면 순회 간담회 계획 수립 추진	건의
	2	각종 행사 의전 준비 철저	○각종 군 단위 행사시 의장님 격려사, 좌석배치, 감 사패 전달에 있어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사전 긴 밀한 협조로 의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이나 행사 참석시 원활한 차량지 원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토·일 요일 군 단위 행사시 의회사무과 공무원(사무과장) 이 직접 참석하여 의원을 보좌하고 행사진행을 점 검하는 등 의회의 위상 제고 노력	시정
	3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예산집행 신용카드 발급	○현재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 무과 등 총 6개 신용카드로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신용카 드가 없어 회기 시 필요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면 예산결 산특별위원장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소관 예산 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시정
	4	도서관리 강화 및 도서실 이동	○현재 전문위원실 옆에 있는 도서실에 각종 행사 소 품과 기자재가 있고 도서 정리정돈 등 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전문서적과 교양도서를 구분하여 도서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수시 로 도서구입 예산으로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의 원 지적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 과 현재 도서실을 의원 집무실로 이동·배치할 것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비고
의 회 사 무 과	5	의장실 등 사무실 리모델링 사전 계획 철저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집무실 등 사무실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 사전에 타 자치단체 의회를 방문 후 관계 부서에서는 세부설계서를 작성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 강구 바람	건의
	6	의회홈페이지 관리 노력	○2006년 홈페이지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의정활동·상임위원회활동·현장답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홍보자료 게재 시기를 일실하여 자료가 게재되지 아니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으므로 향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각종 공지사항이나 업무 및 의원소개 등 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리 우수사례를 파악하여 내실 있고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	시정
	7	예산집행 철저	○2006년도 예산 중 전산개발비의 경우 85,000천원 중 73,917천원을 집행하고 13%인 11,08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다 계상한 부분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그 외 국외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직원 사기 양양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8	각종 업무추진 만전	○분장된 의회사무과 업무의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직원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업무는 재조정하고 전문위원실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울주군의회 위상제고에 최선의 노력	시정

【내무위원회 소관】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 획 감 사 담 당 관	1	예비비 집행철저	○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집행하여야하나, 조직진단용역과 영어마을 타당성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함은 잘못된 것이며, 진하해수욕장 태풍피해복구비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무방하나, 포괄사업비로 집행함. 향후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2	시비확보철저	○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예회관건립 등 확정된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군비가 추가증액되는 사례가 많음. 향후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담당부서에서는 광역시에 사업의 필요성 등 충분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여 군수 등 여러 계통을 통하여 시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관련부서) (시 정)
	3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보면 장기간 미 개최된 위원회가 많으며, 개최실적이 없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장의 자격과 위원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이 국장이고 위원이 군의원인 위원회도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 구성상 적합하지 않음.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4	포괄사업비 집행 철저	○ 동백아파트, 경동청구아파트 관련공사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심사(1천만원 이상)를 받아 시행해야 함에도 포괄사업비로 집행함.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 획 감 사 담 당 관	5	범서 구영리 교통문제 해결방안 강구	○범서 구영리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 광역시와 협조하여 조기에 도로, 교통문제 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장비·인력을 확충하여 청소문제도 해소하 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자원위생과, 건 설 과, 지역경제과) (건 의)
	6	정원의 상근 인력 관리 철저	○정원의 인력관리(상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 되면서 당초 채용 목적이 외근인데도 불구 하고 내근화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7	총액인건비 기준액 초과 해소 만전	○인력·조직관리 만전으로 총액인건비기준 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사업, 복지 관 등 위탁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위탁하여 패널티(교부세삭감)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 리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8	비정규직 운영 철저	○2007. 7. 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정 규직의 장기사역으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9	상부기관의 부당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철저	○정부·감사원·광역시 감사시 부적합한 지 적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이의신청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해명하는 등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하고, 읍·면 공무원의 위상· 긍 지를 가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 획 감 사 담 당 관	10	지방재정공시 철저	○ 지방재정의 투명성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울주군에서는 우수부분만 공시하고 하위 부분은 공시하지 않음. 이는 공시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11	혁신 우수사례 발굴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혁신우수사례 발굴 공무원에게 인사고과 반영,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타 공무원들이 발굴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연구모임을 통한 긍정발전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건 의)
	12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철저	○ 지역 현안사항을 보다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혁신협의회를 연내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13	명예감사관제도 활성화	○ 현재 읍·면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예감사관제도의 각종 제보, 건의사항 등의 실적이 저조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각종 민원성 제보나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시 정)
	14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철저	○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에서 주민의 견수렴현황 및 반영결과 7건 중 1건이 반영됨. 앞으로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15	민간이전 보조금 정산 철저	○민간이전관련 보조금 정산시 물품을 외지업체에서 구입하는데, 지역업체로 전환하고 (건의), 입출금내역 미비, 간이세금영수증 첨부, 거래내역 미비, 형식적인 정산검토 등의 정산증빙서류의 투명성이 없으므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관련부서) (시 정)
총 무 국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읍·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필요에 따라 읍·면간 조정을 통하여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구체적 지원 범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총 무 과 (건 의)
	2	원칙·기준있는 인사운영 철저	○광역시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직원사기가 심각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향후 타 구청 대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여 업무의 원활과 안정, 다면평가의 본래 취지 제고, 중국교환근무자 등 사후 활용제고, 신규 임용자 읍·면 배치로 업무수행의 애로가 있으므로 군과 읍·면과의 교류 확대, 정원부족인원 16명 조속 확보,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전보 검토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총 무 과 (시 정)
	3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사항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고, 향후 한마음체육대회는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변경 시행하되 부족예산은 지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총 무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4	직원 복지지원 만전	○ 발전소특별회계의 일부는 직원복지에 활용 토록 하였음에도 방치하고 있어 직원 임대 아파트 건립 검토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총 무 과 도 시 과 (건 의)
	5	마을 회관 등 관리 철저	○ 일부 마을회관 등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사후 분쟁 소지가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이 없는 16개소 미준공 건물의 정리 방안과 경로당과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복지사업 과로 업무이관하여 일원화하고 미등기 건물 에 대하여는 일제정비를 할 것	총 무 과 복지사업과 (시 정)
	6	직원 고충상담 운영 만전	○ 직원 고충상담을 현재 사이버상으로 하고 있으나,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 보다 쉽고 부담없이 승진 고충 등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총 무 과 (건 의)
	7	장학사업 확대 방안 강구	○ 농협 군급고 장학금을 공무원 자녀는 지급 받는데 저소득층장학금은 이자율 저하 등으 로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지원을 확 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도 지급할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기 바람	총 무 과 (건 의)
	8	각종행사 의전 철저	○ 군행사, 축제 등 각종행사시 의전에 충실을 기하여 의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총 무 과 (시 정)
9	군정홍보지 배부 철저	○ 군정홍보지가 일부지역에 방치로 잘 배부가 되지 않음. 생활정보지 배부방식과 같이 방 안을 검토하고, 배부를 철저히 하여 군정 홍 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	총 무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10	지방계약법 관련 건의	○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라 소액 1천만원이상 계약공사건에 대하여 광역시 군은 지역제한 없이 전자입찰을 함에 따라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음. 이에 대하여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하여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지역 건설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	회계정보과 (건 의)
	11	보존부적합 국공유지 매각 으로 세입증대 방안강구	○ 소규모 국·공유지의 장기적인 대부보다는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는 매각하여 군수입 증대와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것	회계정보과 (건 의)
	12	채납대부료 및 무단점유 관리 만전	○ 대부료 채납을 일소하기 위하여 미징수, 미대부 등 대책을 강구하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회계정보과 (시 정)
	13	3급 관사 조치방안 강구	○ 3급 관사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직원 등에게 임대하거나, 불필요시 매각처분 등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회계정보과 (건 의)
	14	마을방송망 활용 철저	○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방송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재해발생시 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음. 이장이 바뀔 때 마다 인수인계 및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방송망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회계정보과 재난관리과 읍 · 면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15	사회단체사무실 이전방안 강구	○ 현재 각 부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데도 불 구하고 일부 각 단체 등의 사무실이 군청에 입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무실 임차 조정 시 이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회계정보과 (건 의)
	16	군 금고 관리 철저	○ 군 금고 수의계약으로 여타 은행보다 장점이 많지 않은데도 낮은 환원(장학)사업, 여타 은행보다 낮은 대부료 등 특혜시비가 있으 므로 대부료 현실화, 세무조사 및 결과조치, 군 금고 관리조례 제정 등 관리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람	지방세과 회계정보과 (건 의)
	17	채납세 징수철저	○ 지방세 채납액이 증가하여 이월되고 있는데 재산·예금압류, 고액 채납자 관리카드 입 력,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채 납세 감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방세과 (건 의)
	18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 방안 강구	○ 현재 직원에게만 시행되고 있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징수실적 우수마을로 확대하여 우수 마을에 군 인센티브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하 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지방세과 (건 의)
	19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홍보 철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개 읍을 완료하였으나 건물번호에 익숙한 주민이 적고 정착이 안되고 있으므 로 새 도로명, 건물번호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 의)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 철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채납 및 감액에 관하여 선순위 압류, 감액사유예방, 감액건수 최소화 등으로 세 입을 증대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민원지적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21	지적불부합지 해소 추진	○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군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발맞춰 추진하되 개인간의 불부합지로 인한 분쟁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 의)
생 활 지 원 국	1	예비비집행 철저	○ 범서종합복지회관 건립 감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과 태풍 예위니아 피해사망자 위로금을 재난기금(국비)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기획감사 담당관실) (시 정)
	2	평생교육학습도시 기반구축	○ 평생학습도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력, 기구, 조례제정 등 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기획감사 담당관실) (건 의)
	3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방안 강구	○ 농협 군금고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지 방 세 과 (건 의)
	4	기초생활보장 용자금 미상환금 사후관리 철저	○ 기초생활보장기금 용자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음. 재산·소득의 철저한 조사로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처리하고, 지원실적이 저조하므로 저소득층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시 정)
	5	관내 강사 우선 위촉 방안 검토	○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위촉시 타 지역 강사가 많은데 고용창출 측면에서 관내 강사가 우선 위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 활 지 원 국	6	종합장사시설 관련 확약사업 추진철저	○종합장사시설 관련 확약사업 20여개 중 4개 는 완료하고 16개가 남아있는데 추진에 철 저를 기하기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7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철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국·시비 미확보 등 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복지사업과 (시 정)
	8	사회복지시설 건립시 정확한 검토	○울주군내 울산의 70%의 각종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있으며, 수용 수요인원보다 시설이 과다하고, 우리군민의 이용율이 20%에 못미 치며, 군비가 추가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 고, 법인의 재정능력 등을 심사하여 앞으로 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9	업무이관 검토 추진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은 업무성격상 건강증진업무는 보건소에서 사후관리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 검토 추진하기 바람	복지사업과 (보 건 소) (건 의)
	10	어린이 장애인 수용시설 기능보강 검토	○어린이관련 장애인시설에 울주군 수용인원 은 30명중 8명에 불과하고, 입소하고 싶어 도 수요공간이 부족하므로 기능보강 등 방 안을 강구하기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11	예산이월사업 사전 검토 철저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월사업은 사전 제반사 항의 검토가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예산소요 액은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고 추진지연 등 이 없도록 계획입안시 철저히 검토후 처리 되도록 할 것	복지사업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 활 지 원 국	12	감사자료 작성소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산액 계수 착오기재, 미터법 미적용(㎡와 평수혼용기재), 전염병 감염 유소견자 성명기재, 원과 친원 미구분,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체적 사유기재 등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 재확인하여 제출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산 립 과 (건 의)
	13	보육시설 중 미신고 집단급식 시설 점검 철저	○어린이 보육시설 중 수용인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은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미신고된 시설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14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추진	○지체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15	어린이 놀이터 정비·보강 만전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시 어린이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개·보수시 반영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16	보육정책심의 위원회 재구성 검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선정시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경력·자격을 갖춘 능력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나 객관성·공익성이 결여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정비시 이를 적극 반영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17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검토	○장애인복지관 운영결과를 토대로 운영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위탁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 활 지 원 국	18	산악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산악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실질 적인 사업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촉구함	문화관광과 산 립 과 (건 의)
	19	울주문예회관 조속 추진	○울주문예회관이 시비확보 지연, 건축비 상 승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추 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문화관광과 (건 의)
	20	윈드서핑 전국대회 개최 검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울산컵 국제 윈드서 핑대회에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명칭부 여 및 전국대회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21	군수기 체육대회 통합운영 검토	○운동장 체육시설이 여러 곳에 준공 또는 진 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각기 다른 날짜에 개 최되는 16개 종목을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22	울주종합운동장 조속 추진	○울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 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음. 사전 절차이행을 조속히 수행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 람. 아울러 온양운동장 등 읍·면 체육시설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23	“외고산옹기” 지정 축제화 추진	○외고산옹기축제 행사를 동일용어를 사용하 지 못하도록 상표등록(특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24	관광유치단 설치건의	○기업유치단과 같이 관광유치단 설치를 검토 하고, 아울러 전문인력(계약직 등) 확충방안 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기획감사 담당관실)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보 건 소	1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립 추진 철저	○ 남부통합보건지소 부지매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통합보건지소가 빠른 시일내 건립 되어 남부권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 건 소 (시 정)
	2	전염병 예방 방역 소독 철저	○ 4계절 모기유충 발생에 대하여 유충류조사, 정화조 환기구 설치 등 방제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 건 소 (시 정)
	3	출산장려 대책 강구	○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건의 민원이 가장 많으므로 출산장려 대책 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보 건 소 (건 의)
읍 · 면	1	농지전용 긍정적 검토처리	○ 농지전용 심의시 법률 범위내에서 주민행정 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청 량 면 (건 의)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철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시 해당 자격·능력 및 성실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도록 할 것	읍·면공동 (건 의)
	3	해안쓰레기 대책 철저	○ 서생면의 경우 연중 해안쓰레기가 발생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 구해 나가기 바람	서 생 면 축수산과 (시 정)
	4	포괄사업비 집행 철저	○ 포괄사업비를 주민건의에 의하여 일시사역 으로 풀베기사업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 여 추진하도록 하기 바람	서 생 면 (시 정)
	5	복지회관 활용 만전	○ 검단복지회관의 경우 주민활용도가 미흡하 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해당지 역 주민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웅 촌 면 총무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읍·면	6	환경정비 대책 강구	○범서읍의 경우 급격한 주민수의 증가로 생활환경 정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공청소차(쓰레기흡입차)를 구입하여 4개 읍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소요인력을 기준인력의 조정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범 서 읍 자원위생과 기획감사 담당관실 (건 의)
	7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검토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과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예산편성을 검토하기 바람	읍면공통 총무과 (건 의)
	8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자제	○각종 단체행사 격려금 등을 현금봉투로 지급하는 대신에 계좌이체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 행사도 손님들이 카드로 계산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동 면 읍면공통 축수산과 (건 의)
	9	읍면 기술직 충원 검토	○재배정 포괄사업 집행, 세무민원 및 복지민원 등을 읍·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토목, 세무, 사회복지 등 기술직 없는 읍·면에 배치하기 바람	기 획 감 사 담 당 관 실 총 무 과 (건 의)
	10	소독약품 관리 철저	○유효기간이 경과된 간이상수도용 소독약품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약품구입시 제조일자 확인후 구입 사용토록 조치하기 바람	두 서 면 환경관리과 (시 정)
	11	태풍피해복구 철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피해 예방을 위하여 주민입회하여 현장조사와 설계를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재 난 관 리 과 언 양 읍 상 복 면 (건 의)
	12	도시공원 확충	○언양읍은 도시공원, 쉼터 등이 부족하므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산 림 과 언 양 읍 (건 의)
	13	종합장사시설 관련 주민숙원 사업 추진 철저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20개 확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이 늦어지므로 광역시 및 군과 연계협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복 지 사 업 과 삼 동 면 (건 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1	예산수반 중요사항 결정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구할 것	○ 덕신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 회관 기공식시 즉흥적으로 주민들에게 3층 으로 증축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과장상 의 문제가 있음. 향후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사안 결정시 사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	지역경제과 (시 정)
	2	주택가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및 체납세 징수 대책 마련	○ 주택가 주·정차 야간단속의 경우 사전예고 제를 통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주·정 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단체 를 벤치마킹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단 의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경제과 (시 정)
국	3	대우버스, 무학소주, 삼성 SDI PDP 증설에 따른 지역민 고용창출 문제 해결 노력	○ 상북 대우버스, 삼남 무학소주, 삼성 SDI PDP 증설 등에 대해 기업유치차원에서 행정 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는데 반해 지역 민의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동일 조건에서는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 도록 기업체에 협조요청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건 의)
	4	광업권 설정 허가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 산업자원부 산하 광업권 등록 사무소의 광 업권 설정 허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시 산 주 및 주민 등과 접촉하여 주민의견이 충분 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경제과 (건 의)
	5	언양지역 주차장 설치 검토	○ 언양의 만성적 주차해소를 위해 국유지 등 필요한 곳(하천쪽 고가도로 지하 나대지 부 분 등)을 선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제 국	6	해외시장 개척단 사후관리 철저	○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에 있어서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참여업체 중 체납업체는 없는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지역경제과 (건 의)
	7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철저 및 방치 화물차고지 조치방안 검토	○ 화물자동차의 경우 시외곽에 차고지 등록만 해놓고 대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며 미사용하고 방치된 차고지 조치방안도 검토 바람	지역경제과 (시 정)
	8	일시사역인부 사역 부적정	○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계속사역을 금지하고 있음. 운수업체 보조금 신청 전산입력 일용 인부의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 사역하고 있음.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으로 계속 사역이 불가피하다면 상용 또는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지역경제과 (시 정)
	9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추진 철저	○ 버스 승강장 설치시 주민의견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과 필요없는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할 것	지역경제과 (시 정)
	10	기업하기 좋은 울주만들기 노력	○ 공장등록업소에 비해 공장취소업체가 많음.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업하기 좋은 울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경제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제 국	11	교환근무공무원 국제업무에 활용	○중국 문등시 교환공무원에 대하여 국제 감각을 익힌 공무원을 양성하였다면 시장 개척단 참여 등 유사 업무에 참여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시 정)
	12	범서공설시장 건립 검토 요구	○범서읍의 경우 5일장과 요일장의 불법노점상 난립으로 교통체증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범서공설시장 건립을 검토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건 의)
	13	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 조기 수립	○2005. 5. 30 환경기본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것은 관심부족에서 기인함. 우리군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있는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14	상수원 보호구역 인력배치 지역별 형평성 고려 및 사유재산권 보호대책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인력배치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바람. 보호구역 내 훼손설치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주민불편이 없는지 확인하여 조치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15	대곡댐 주변지역 축산폐수처리 사후관리 철저	○대곡댐 주변지역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 축산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16	축산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마련	○2011년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됨. 이에 대해 퇴비화시설 등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관리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제 국	17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의견 반영	○수변구역 주변 주민들은 공동사업보다는 현금 지원 등 직접지원을 원하고 있음.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18	1사 1하천 자연정화활동 활성화 방안마련	○1사 1하천 자연정화활동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회사가 다수 있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 참여업체에 대한 단체 표창 등 격려책을 마련하기 바람	환경관리과 (건 의)
	19	각종사업 설계변경요인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각종사업 설계 변경이 많은데 사업시행전에 철저한 현장조사나 주민의견 수렴으로 설계 변경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20	간이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철저	○현재 시설 노후로 일부 마을의 간이급수시설은 갈수기에 수량 부족과 수질불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21	유해조수 포획허가 사후관리 철저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당년도 포획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익년도에는 유해조수 포획허가에서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22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간절곶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미흡함.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관리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23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대행업체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에 권역조정에 대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었듯이 2006. 7. 20로 권역조정 용역계약을 하였고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진한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됨. 빠른시일내 청소대행업체 권역조정이 되도록 조치할 것 ○ 각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법정인력 채용여부, 장비현황, 근무위반사항 등을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시 정)
	24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전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속시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허가사항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여 상가의 영업에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할 것 	자원위생과 (시 정)
국	25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일반음식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자원위생과 (시 정)
	26	공중위생업소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이 다소 부진함.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요구, 일시사역인부, 청경 활용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할 것 	자원위생과 (시 정)
	27	진공흡입차를 활용한 시가지 청소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남구와 울주군 경계의 경우 도로청소 상태가 차이가 남. 읍단위의 시가지 지역의 청소는 환경미화원 등 인력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진공흡입차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자원위생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제 국	28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 확보 방안 강구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현재 타 구에 위치한 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군 관내에 자체 시설을 확보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건 의)
	29	민간경상 보조금 정산철저	○ 제7회 음식문화축제의 정산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산검사를 미 실시 하였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자부담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일치하여야 하나 통장사본이 없으며,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입금확인서가 없는 등 정산검사가 부적절함. 향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시 정)
	30	삼남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쓰레기 봉투 제작 활용 방안 검토	○ 쓰레기 봉투 제작회사 중 삼남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제작 발주 비율을 높혀 장애인 고용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자원위생과 (건 의)
	31	관공서 쓰레기 분리수거 솔선수범 참여	○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은 군청,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여 실시하여야 함.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자원위생과 (건 의)
	32	분리된 사무실 통합 방법 마련	○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어 민원 불편은 물론 직원들 또한 불편이 많을 것임.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 등과 사무실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관부서에 건의할 것	자원위생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33	“울주 밥상” 만들기 계획 수립 검토	○ 울주에는 황우쌀, 오리쌀, 미나리, 배, 한우 등 특산물이 많지만 울주군을 대표하는 음식은 없는 실정임. “울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으로 “울주밥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농 산 과 (건 의)
	34	울주 알리기 방안 검토	○ “울주배”와 원협외 “보배”를 명칭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울주를 통일하는 단일명칭 개발 ○ “울주부추” 상표 등록 추진 ○ 황우쌀, 오리쌀, 우렁이쌀 명칭 앞에 대표성 있는 “울주쌀”이라는 말을 넣어 생산하여 울주 알리기에 활용	농 산 과 (건 의)
제	35	수해복구농가 지원 철저	○ 제3호 태풍 “에위니아”피해 농가에 대한 농지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사후에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회수한 사례가 있음. 향후 업무 추진시 사전파악을 철저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농 산 과 (시 정)
국	36	영농자재 지원사업 재검토	○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상토공급보다는 각 읍·면별로 육묘장 설치를 하여 모판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농 산 과 (건 의)
	37	동해펄프 회야강 유지수 공급을 목적으로 한 양수장 건립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취소 방안 검토	○ 온산읍 삼평리 441번지에 한국농촌공사가 동해펄프에 회야강 유지수를 공급용수 공급목적으로 한 양수장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변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분이므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농 산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제 국	38	농산물 직판장 건립 계획 백지화에 따른 사후 대책 마련 철저	○농산물 직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주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예산낭비, 행정불신의 결과만 초래하였음. 향후 농민회관 건립시에는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농 산 과 (시 정)
	39	농기구 보관창고 건립 지원 건의	○농가에서 농기구 보관창고가 부족한 실정임. 마을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시설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농 산 과 (건 의)
	40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	○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비부담을 늘여 피해면적이 적은 농가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선정에 있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 볼 것	농 산 과 (시 정)
	41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철저	○후계농업경영인인연합회 가족전진대회와 봉계황우쌀 축제와 관련하여서 보조금교부 신청서와 정산서 내역 불일치, 10만원 이상 계좌입금 미이행, 보조금 신청과 정산시 자부담분과 보조분 미구분, 통장사본 미첨부 등 정산검사가 부적절함. 향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농 산 과 (시 정)
	42	무허가 낚시터 지도단속 철저	○무허가 낚시터 현황 작성에 누락사항이 있음.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무허가 낚시터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	농 산 과 (시 정)
43	일시사역인부 사역 부적정	○농지조성비 및 농지원부전산화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04.10.6.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속 사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농 산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44	각종사업 설계변경요인 최소화 방안강구	○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이 너무 많음. 사업시행전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할 것	농 산 과 (시 정)
	45	수매가 보전대책 마련	○ 2004년 이전에 지원한 것을 참고로 하여 수 매가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직접지원 이 어렵다면 간접지원방법을 검토할 것	농 산 과 (건 의)
	46	소 부루세라병 대책 마련	○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지원액을 늘 여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강구 ○ 농가에 살처분 매몰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몰 대책을 마 련할 것	축 수 산 과 (건 의)
국	47	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	○ 설사에 의한 송아지 폐사율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축협은 약품 지원, 행정에서 인건비 부담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 법을 검토해 볼 것 ○ 또한 인공수정사의 책임수정제 시행과 수정 료 조정 등을 협회에 요청하여 농민부담최 소화에 노력할 것	축 수 산 과 (건 의)
	48	진하해수욕장 모래유실 원인규명 철저	○ 진하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대하여 해양수산 부의 용역진행이 늦은감이 있음. 하구쪽 방 파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으로 빠른시일내 원인을 규명하여 모래유실 예방 에 노력할 것	축 수 산 과 (시 정)
	49	간절곶 회센타 건립과 관련한 민원 적극 해결 노력	○ 간절곶 회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법을 지키 지 않는 무허가 업주만 보호한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문제해결을 어촌계에만 맡기지 말 고 행정에서 직접 나서 민원을 최소화할 것	축 수 산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경 제 국	50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연속적 추진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축사 에어쿨러 등 단기성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므로 시정하기 바람	축수산과 (시 정)
	51	울주 고유 브랜드 개발	○수산물 고유브랜드가 없으므로 울주군의 위상에 맞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할 것 ○한우 브랜드 사업을 축협에서 포기했다더라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방법을 강구할 것	축수산과 (건 의)
	52	내실있는 한우불고기축제 추진	○올해 한우불고기 축제에 있어서 거리축제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향후 축제 행사 계획 수립시 이를 잘 반영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축수산과 (시 정)
	53	불가사리 구제사업 재검토	○일부 어촌계의 내부분쟁으로 인해 불가사리 구제사업 전체가 중단된 것은 잘못임. 다른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경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을 재검토 할 것	축수산과 (시 정)
	54	어촌분야 지원사업 확대	○다른 예산에 비해 어촌분야 지원예산이 미약함. 어촌계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축수산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설 도시 국	1	회야강 유지수 공업용수 공급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야강 농업용수 잉여수를 동해필프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한국농촌공사의 하천점·사용허가건에 대해 잉여수에 관한 정확한 근거나 자료없이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허가를 해 준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음 ○ LG화학의 회야강 공업용수 취수량에 대해서도 점검 한번 하지 않고 수년간 점·사용료를 부과한 잘못이 있음 ○ 향후 업무추진시 신중한 처리를 하기 바람며 회야강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회야강 마스터플랜”수립과도 연계하여 환경보전을 염두에 두고 처리하기 바람 	건설과 (시정)
	2	삼동 암리 진입로 선형문제 해결 노력 및 상출강 마을진입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동 암리 진입로 부분에 선형구간으로 인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교통 소통 또한 원활하지 못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기 바람 ○ 삼동 상출강 마을 진입로의 사정이 아주 열악함. 확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주기 바람 	건설과 (건의)
	3	사업추진 중 중단된 사업 조속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산 도시계획도로(소1-2호), 웅촌 와지도로가 사업추진 중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 주민불편 등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주와 재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과 (시정)
	4	각종사업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사업 설계변경이 너무 많고 특히 민원 발생 등의 사유가 많은데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 변경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건설과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5	성실한 감사자료 작성	○ 감사자료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2005. 11. 3 최인식 의원이 “범서읍 구영리 1128-25번지 도로폐지”와 관련하여, 2006. 10. 16 한성울 의원이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군정질문한 바 있는데 모두 자료에 누락되어 있음. 향후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건 설 과 (시 정)
	6	노견정리사업시 가로수 이식 후 공사시행 및 체계성 있는 도로정비	○ 관내 노견정리사업시 가로수를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노견만 재포장하여 경운기 등이 다니기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으므로 가로수를 이식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인 정리로 미관저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구간을 정하여 체계성있게 도로정리를 하기 바람 ○ 군도 구간 중 사유지 침범부분에 대해 정리하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	건 설 과 (시 정)
	7	무단하천 점사용 단속 철저	○ 범서읍 굴화리 강변그린빌 일원 태화강 하천구역내 농작물 경작행위 및 불법무단점용행위에 대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여 조치토록 할 것	건 설 과 (시 정)
	8	환지계획도면 발급과 관련한 민원 해결 노력	○ 범서 천상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무실 폐쇄로 토지소유주들이 환지계획도면을 발급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많음. 행정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도 시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9	원전위탁수수료의 공무원 복지사업 지원 조속시행	○ 원전 특별회계 예비비 중 원전위탁수수료 10억여원의 예비비를 공무원 복지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없음. 조속한 시일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도 시 과 (시 정)
	10	일시사역인부 사역 부적정	○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속 사역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전용지보상 및 지원사업 업무보조(4명)에 대해 3~4년동안 계속 사역하고 있음. 업무의 연속성 문제라면 다른 적법한 방안을 강구할 것	도 시 과 (시 정)
	11	각종사업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노력	○ 각종사업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데 사전에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 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 시 과 (시 정)
	12	도시계획입안시 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 도시계획결정은 시에서 하지만 도시 계획 입안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없음. 향후 위원 위촉시 검토하기 바람	도 시 과 (시 정)
	13	국비지원사업 조기 시행	○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 시행이 늦은 감이 있음. 향후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빠른 시일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도 시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14	원전 3,4호기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경기 부양책 마련	○ 현재 고리 원전에 지역출신 주민 취업률과 각종 공사·용역·구매 계약시 지역업체들의 참여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3,4호기 건립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 주민 고용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	도 시 과 (건 의)
	15	온천지구 활성화방안 검토	○ 관내 온천지구 내 업소들의 어려움이 많음. 활성화방안을 검토해 볼 것	도 시 과 (건 의)
	16	각종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지역 업체참여	○ 수의계약 79건 중 24건이 울주군 소재 업체임.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수의계약 발주시 울주군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도 시 과 (시 정)
	17	주택개량사업의 이율 조정 건의 및 홍보철저	○ 시중 이율이 10%대에서 6%대로 떨어졌는데도 주택개량사업의 이율이 수년간 3.5%를 유지하고 있음. 농사자금 등 타 정책자금의 경우 이율이 3%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자부에 건의하여 이율을 낮추어 주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것	건 축 과 (건 의)
18	민원친절 생활화	○ 민원인이 특히 많이 방문하는 부서인 만큼 민원친절에 각별히 유념하고, 같은 건으로 인해 여러차례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	건 축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19	방치된 건축물 공사장 관리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남 장백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 공사장의 경우 청소년 우범지역 우려, 외관상 문제 등이 있으므로 행정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건 축 과 (건 의)
	20	일시사역인부 사역단가 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사역인부 중 같은 내근적인데도 단가에 차이가 있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규정이 맞는지 검토하여 지급하기 바람 	건 축 과 (건 의)
	21	건축허가시 현장확인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서 수변공원 옆 건축허가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건축허가가 건축사 업무대행체제로 이루어지더라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범서 수변공원 옆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재협의, 관련법령 재검토를 통하여 공사중지 조치를 취할 것 	건 축 과 (시 정)
	22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철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한 아파트에 2년 연속 지원한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건 축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23	각종사업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노력	○ 각종사업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데 사전에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 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건 축 과 (시 정)
	24	각종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지역 업체참여	○ 수의계약 현황 중 울주군 소재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함. 지역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수의계약 발주시 울주군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건 축 과 (시 정)
	25	불법광고물 정비 및 한우불고기단지 입간판 정비철저	○ 불법간판 정비실적은 811건이 있는데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실적이 없음. 엄정한 법적용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 ○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단지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입간판 정비시 특구지역 내 모든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로 통일성을 줄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건 축 과 (시 정)
	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철저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2년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여 전체적으로 병증이 나타나는 나무에 대해 전량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일소에 효율적일 것 같은데 검토바람	산 림 과 (건 의)
	27	신불산 임도변 산악레저스포츠 지도점검 철저	○ 언양 자수정 동굴 입구 신불산 임도변에 불법 산악 사륜오토바이 체험장의 성행으로 환경파괴가 심하므로 철저히 현지확인하여 조치할 것	산 림 과 (시 정)
	28	산림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 신불산 역새군락지, 대운산 철쭉군락지, 치슬령 철쭉군락지 등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 언양 일원 수목원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산 림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29	간절곶 공원내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철저	○ 간절곶 공원내 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위 생업소가 난립하고 있음. 지도단속 철저로 무허가 업소 근절에 노력할 것	산 립 과 (시 정)
	30	각종사업 설계변경 요인 최소화 노력	○ 각종사업 설계변경이 너무 많은데 사전에 주변여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향후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설계 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할 것	산 립 과 (시 정)
	31	산림형질변경허가 시 산사태위험 등의 신중한 검토	○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피해를 보면 산림형 질변경 등 인위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곳 이 대부분이었음 향후 산림형질 변경허가시 이 점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를 할 것	산 립 과 (시 정)
	32	등산로정비사업 우선순위의 신중한 검토	○ 신불산 칼바위에서 해마다 인명사고가 나 고 있고, 가지산 쌀바위 위쪽에도 위험한 등산로 구간이 있음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악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급한 곳부터 등산로 정비사업 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산 립 과 (건 의)
	33	근린공원 및 가로수 관리 철저	○ 근린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음. 전 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 며, 또한 각 도로변마다 가로수 식재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구간이 많음.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산 립 과 (시 정)
	34	산불예방활동 만전	○ 울주군은 전체면적 중 산림면적이 70%를 차지함. 산림면적에 비해 산불감시원의 인 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보강 등의 방법 을 강구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산 립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35	현장 위주의 설계 및 공법 적용	○태풍 피해 지역 중 상습적인 곳이 많음.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의 기초가 가장 중요함. 기술적 차원보다는 현장 위주의 공법 적용, 설계를 하도록 하고 공사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	재난관리과 (시 정)
	36	태풍 응급복구 장비 투입 방법 개선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를 위해 장비가 747대나 투입되었음. 면에서 감독하는 장비의 경우는 아침일찍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군에서 감독하는 장비의 경우 작업시작시간이 늦는 경우가 다소 있었음. 이런 이유로 인해 장비투입량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장비투입 방법을 개선하고 공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할 것	재난관리과 (시 정)
	37	수해 피해 응급복구 공사시 주민명예감독관 선임 활용	○수해 피해 응급복구 공사시 공사감독을 할 인력이 부족하므로 각 마을 이장 등을 주민명예감독관으로 선임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재난관리과 (건 의)
	38	에위니아 인명피해재해 구호비 국비 확보 방안 마련	○태풍 에위니아 인명피해(사망)자에 대한 재해구호비 지급과 관련하여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입력 누락으로 국비 지원이 불확실하게 된 데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재난관리과 (시 정)

■ 2007년 행정사무감사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군정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 제고 및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의회에 부여된 역할수행에 충실하고자 함

2. 감사 실시 기간 : 2007. 11. 20. ~ 11. 26.(7일간)

3. 감사 실시 장소 : 의회 및 읍·면회의실

4. 감사대상기간 사무 : 2006. 11. 1. ~ 2007. 10. 31.(1년)

5. 감사반 편성

위원회별	대상 기관 (부서)	감 사 반	감 사 장 소
계	34개 부서		
의회운영 위원회	1개 부서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장 외 5명	제1회의실
내 무 위원회	22개 부서 (기획예산실, 총무국 4, 생활지원국 4, 보건소, 읍·면 12)	내무위원장 외 4명	제1회의실 읍·면 회의실
산업건설 위원회	11개 부서 (기업유치단, 지역경제국 5, 건설도시국 5)	산업건설위원장 외 3명	제2회의실

6. 감사 실시 절차

-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현지 확인 (검증)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질의 및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8. 감사 실시 결과

(단위 : 건)

구 분	계	의회운영위원회	내 무 위 원 회	산업건설위원회
계	157	10	84	63
시 정	48	4	20	24
건 의	109	6	64	39

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의 회 사 무 과	1	상임위원장과 평의원 일정 조정	○외부에서 볼 때 업무추진비 및 여비 사용은 의원들의 활동과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의원 간의 일정 등을 조정하여 형평에 맞게 조율	시 정
	2	전직 의원 행사 참여시 의전 준비 철저	○각종 군 단위 행사시 현 의원들에 대한 의전과는 달리 전 의원들의 의전에 있어서는 자리배석 등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미흡하므로, 총무과와의 긴밀한 협조로 전 의원들에게 예우를 다하여 의회의 위상 제고 노력	시 정
	3	의정활동 일지의 작성	○민원상담일지와는 별개로 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현장 방문 등의 기록을 일지로 남겨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건 의
	4	인사권의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소신껏 보좌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시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희망하는 보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함	건 의
	5	의회 방청 활성화	○의회 방청이 저조하여 의회 활동이나 의회의 역할이 군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의회 방청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이 의회에 친숙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홍보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건 의
	6	의원집무실 일용 인부의 상용화	○의원집무실의 일용 인부에게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 의원들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의회사무과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와 상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의 회 사 무 과	7	의원집무실 인력 보강	○부속실 여직원은 의장, 부의장 2명의 의원을 수발하는 데에 비해 의원집무실 여직원 같은 경우 평의원 5명 및 상임위원장 3명 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까지 혼자 응대하여야 하므로 업무량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력보강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건 의
	8	체계적인 의회 운영	○행사 등의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의원들의 개인 스케줄이 의회 활동과 겹치거나 마찰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며, 티타임 등의 갑작스런 모임 공지로 인해서 계획된 개인 활동에 불편을 갖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음. 사전의 충분한 통지와 보고를 통하여 의회 운영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장이 의장과 의회 운영위원장 및 의원들간 교량 역할을 잘 해 주기를 바람	시 정
	9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국으로의 전환	○인구가 18만이 넘는 우리 군의 위상에 맞는 의회지위 확보와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설치가 타당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	건 의
	10	의회 홈페이지 개편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신선하고 역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타 구 및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개편을 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건 의

【내무위원회 소관】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 획 예 산 실	1	내실있는 용역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 조직진단 용역완료 후 2007.6.1.조직개편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준비 및 용역을 실시함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사전에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기획예산실 (시 정)
	2	서울사무소 운영방안 개선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울산광역시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국·시비 확보 등 여러 가지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무보조원 문제 해결과 사무실을 울산광역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기획예산실 (건 의)
	3	명예군민감사관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군민감사관은 기존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장,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과 개선책을 토론하는 워크숍이나 대형 공사장 견학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실제적인 감사관으로서의 역할 부여 강구 	기획예산실 (시 정)
	4	초과근무수당 집행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법적으로 초과근무를 기재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 도입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획예산실 (시 정)
	5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진료비지급구상금소송에 패소하였는데도 사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 도로, 농로,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실시와 주의가 요망됨 	기획예산실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 획 예 산 실	6	각종 위원회 정비	○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난 1년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음. 가능하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유명 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으로 위원회 정비가 요구됨	기획예산실 (건 의)
	7	무기계약근로자 공정하게 선정 및 퇴직금 정산	○ 무기계약근로자 선정시 어떤 기준을 정하여 그 자리에서 적절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1년이상 고용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일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예산실 (시 정)
	8	영어마을 조성사업 장기비전 제시	○ 영어마을팀의 비전임계약직의 원활한 업무 부여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장기비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바람	기획예산실 (시 정)
	9	군정 4대 중점.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검토	○ 군수공약사항 등 군정4대 중점·역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기획예산실 (건 의)
	10	감정평가사 선정 규정 마련	○ 각종 공사 및 부동산평가 보상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평가사 선정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획예산실 (건 의)
	11	공무원 증원통제 및 인력관리 철저	○ 사업의 다양성 등으로 행정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총액인건비제 하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이나 무기·기간제근로자 포함 공무원 증원에 신중을 기하여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인력배분이 되도록 바람	기획예산실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1	원칙·기준있는 인사운영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교환근무 등 과거 근무이력을 참조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으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함에도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 그 사람의 자질, 능력 등을 잘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기준있는 인사운영이 되어야 하며, ○ 직급 불부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바람 	총 무 과 (건 의)
	2	각종 행사 의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사의전을 통해 우리군의 위상을 엿볼 수 있음. 행사시 의전 잘못으로 군의 위상이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행사주최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의 위상제고에 노력 바람 	총 무 과 (건 의)
	3	아름다운 울주 소식지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홍보지인 아름다운 울주 소식지가 매월 3만부씩 제작되어 읍·면등에 배포되는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부되는지 의심스러움 ○ 수요예측을 하여 필요한 수량만 제작 배부하고, 주민이 알아야 될 홍보사항 및 조례 등 입법예고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 강구 	총 무 과 (건 의)
	4	직원들의 후생관 이용편리성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에 청내 식당이용 시 자리가 없어 직원들이 식판을 들고 기다리는 불편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음 ○ 외부 상시이용자의 시간조정 등으로 우리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총 무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5	연수·행사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 각종 연수 및 행사 등으로 부서인원 다수가 자리를 비운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업무시간 내 민원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인원동원 등 연수활동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총 무 과 (시 정)
	6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지원	○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치행정을 펼치는 것이겠으나 지역간 소득수준이나 인구밀도, 장소 등으로 제약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군에서는 읍면 자치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고 부족한 프로그램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총 무 과 (건 의)
	7	공유재산 중 미활용재산 관리 철저	○ 공유재산 중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재산이 있음에도 총괄부서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각종 사업을 위한 부지선정 시 미 활용재산부터 먼저 확인하여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바람	회계정보과 (시 정)
	8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인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회계정보과 (시 정)
	9	공유재산 체납 대부분 징수 및 무단점유 관리 철저	○ 국·공유재산체납 대부분 징수 대책으로 재산압류, 공매, 대부계약 미체결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대부실익이 없을 경우 매각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 무단 점·사용자는 철저히 찾아 추정하되, 역으로 우리군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 매입 정리 바람	회계정보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10	전 보건소 및 관사 매각처분 등 강구	○ 전 보건소 건물 및 올림푸스아파트 관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므로 매각처분 또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 에 노력 바람	회계정보과 (시 정)
	11	경리업무의 책임성 부여 및 관리 철저	○ 연간 3천억원 이상이 경리팀을 통하여 지 출이 되고 있고 그 책임성 또한 막중함. 지 출업무를 그 책임성에 상응한 직급으로 보 강하여 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절차 등을 보완하여 관리 에 철저를 바람	회계정보과 (건 의)
	12	국·공유대부료 관련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국·공유지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사유 로 대부료가 높아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데, 문제점을 찾아 매각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 바람	회계정보과 (건 의)
	13	정보화시범마을 활성화 방안	○ 두서 활천, 서생 민등마을, 온양 외고산 정 보화 시범마을의 일환으로 컴퓨터 등이 지 원되고 있는데 고령화 등의 이유로 그 사 용이 저조함에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회계정보과 (건 의)
	14	채납자에 대한 대책 강구	○ 지방세 과년도 채납액과 고질채납액의 비중 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지 방 세 과 (시 정)
	15	직원할당제 활성화방안강구	○ 채납액 해소를 위한 직원할당제가 실효성 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기부여 차원 에서 채납액 징수 우수공무원에게 인사고 과 반영 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 토하여 실효성 있는 직원할당제 시행 바람	지 방 세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총 무 국	16	군금고 협력사업 지원 확인 및 군금고 검사철저	○울산광역시 등의 사례 등을 토대로 군금고 지정에 따른 약정체결시 지역지원 및 환원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고, 군금고 및 수납대 행점에 대한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방세과 (건의)
	17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구분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상시 1/2씩 분할 고지하는데 그 고지서에 대해 색상 변경 등 납세자가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고지 바람	지방세과 (건의)
	18	과오납 최소화	○이중납부 등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 례도 있지만 행정의 착오로 발생하는 과오 납분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업무 철저 바람	지방세과 (시정)
	19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사후관리 철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있어 토지매매거래 후 허가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 철저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
	20	민원조정위원회 공정성방안검토	○민원조정위원회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의 참여 가 필수라고 보는데 외부인사의 참여 실적 이 전무함. 회의 시 외부인사가 참여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민원지적과 (건의)
	21	개발부담금 징수 및 채납관리 철저	○개발부담금 채납액은 대부분 고액자임. 채 납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산압류, 공매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 고, 징수 불가능 시 결손처분 등 채납관리 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
22	개별공시지가 조사 철저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각 종 세금 및 공과금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일시사역인원 으로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화 시키는 방안 을 강구하여 군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활 지 원 국	1	평생학습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군민 및 기관수요 설문조사 실시 결과 활용방안과 평생교육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 도시간 네트워킹 지원사업 등 사전에 타당성을 잘 검토하여 추진하고, ○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개최가 한번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여 울주군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바람 	생활지원과 (건 의)
	2	주민복지상담실 운영활성화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에 있어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 저조한 읍·면도 있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바람 	생활지원과 (시 정)
	3	종합사회복지관 내 보육실 활성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관 내 보육실의 이용이 저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용 보육교사 배치의 타당성 검토 및 보육실을 희망스타트 사업 등과 연계한 활용 방안 검토 	생활지원과 (건 의)
	4	복지신청 불가대상 지원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대상자 신청민원 불가 대상자 중에도 어렵게 생활하는 대상이 많으므로 주민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차상위계층 지정 등 지원방안 검토 	생활지원과 (건 의)
	5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의 자원봉사인증제도를 참고하고 우수봉사자 국제교류 및 표창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봉사활동 참여 동기 부여에 노력바람 	생활지원과 (건 의)
	6	국·시비 보조금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시비 보조금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부당한 미집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집행은 사유를 분석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생활지원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활 활 지 원 국	7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철저	○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에 인접하여 폭 25m의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소음 및 진출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8	사회복지시설 인가시 정확한 검토	○ 울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의 70% 이상이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군민 이용률은 저조하고 대상인원에 비해 시설이 과다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인가시 정확한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립될 수 있도록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9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의 면밀한 검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시설장을 선정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수탁자인 국공립 시설장이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 확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 선정시 면밀한 검토와 위탁시 접수료 공개 및 공개입찰 등의 검토 ○ 아동위원회 회의 참석율을 높이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운영 조례에 따라 인구비율에 의한 위원 구성 준수	복지사업과 (건 의)
	10	장애아동 지원 대책 마련	○ 장애정도를 파악하여 특수한 장애원아가 아닌 한 일반인과 장애아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시설의 부족 등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	복지사업과 (건 의)
	11	성공적인 희망스타트사업 추진	○ 성공적인 희망스타트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팀장 확보 등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원봉사자, 학교, 기업 등을 연계한 사업지원 등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 활 지 원 국	12	사회단체 보조금 적정지원 검토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의 내부갈등등 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음. 지회사무실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 관리에 철저를 기 하기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13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홍보 철저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경쟁률이 높은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맞벌이부부 어린 이 등 입소 우선순위를 몰라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없도록 입소자 선정시 신중을 기 하고 대상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1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서비스 욕구조사결과 활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욕구조사 설문 지 결과를 욕구빈도별로 파악하여 수급자 가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바 람	복지사업과 (건 의)
	15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조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및 관 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복지사업과 (건 의)
	16	울주7봉 명칭 통일성 검토	○우리군 중점사업인 울주7봉 문화콘텐츠사 업이 울산광역시 및 지역언론 등에 통일성 있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홍보 요망	문화관광과 (건 의)
	17	용역결과물 활용방안 검토	○각종 용역결과물을 사장하지 말고 연계된 사업에 접목하고 새로운 용역시 이전 결과 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이 될 수 있도 록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 활 지 원 국	18	축제행사 지원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행사가 대부분 인기성, 이벤트성 위주 공연행사가 추가되고 추가되어야 할 실제적인 행사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많은 보조금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주체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행사관련 담당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에 해당된다고 봄 ○ 행사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준을 확립하여 축제행사가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계획과 지도 및 자문에 충실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19	울주향토사료관 토지 및 건물 매입 강구	○ 울주향토사료관 이용 토지 및 건물을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에 매입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문화관광과 (건 의)
	20	범서생활체육 공원 이용문제 검토	○ 범서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빈도가 높은 토·일요일에 고정적인 축구교실 운영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발생에 대한 이용 방안 검토	문화관광과 (건 의)
	21	간절곶스포츠파크 이용홍보 제안	○ 간절곶스포츠파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개최할 수 있는 전국 중등부 축구대회나 전지훈련팀 간 리그전 등 대회 개최를 제안하니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22	보조금 정산 철저	○ 진하 달맞이 행사 정산에 있어 통장사본 미첨부 및 1백만원 이상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영수증(달집정비용 등)이 첨부되어 각종 보조금 정산규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요구	문화관광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활 지 원 국	23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확보 만전	○울주7봉 문화콘텐츠 사업, 울주종합운동장, 문예회관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 기 바람	문화관광과 (건 의)
	24	국제윈드서핑대회 개선 검토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는 울주군이 아닌 울산광역시의 행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간절곳 해맞이 행사와 같이 울산광역시가 주관하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시 정)
	25	소음공해 문제 해결방안 검토	○대형 공사장(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가 많으므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우수사례인 실시간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검토 요망	환경관리과 (건 의)
	26	음식물류 배출종량제 시행 홍보 철저	○2008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배출자 부담 원칙 적용 및 감량화 유도를 위하여“배출종 량제”가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철저	환경관리과 (건 의)
	27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점검 강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계약조건 위반 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상시 점검 등 강화 요구	환경관리과 (건 의)
	28	재활용품 사용 극대화 강구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재활용현수막을 이용하여 재활용포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읍·면 및 건축과와 협의하여 철거된 현수 막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포 대는 읍·면 환경미화 및 각종 행사의 청 소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	환경관리과 (건 의)
	29	폐형광등 및 폐비닐수거철저	○폐형광등 안의 수은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교육청과 연계 홍보하여 수거함의 형광등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을 검토하여 수거에 철저를 바람	환경관리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생활 지 원 국	30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 소음분진 민원 해결 노력	○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에 있어 환경영 향평가서에 의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분진막 설치 미비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집단민원이 신고리원자력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에 대한 환경감독 을 철저히 바람	환경관리과 (건 의)
보 건 소	1	방역사업 만전	○ 읍·면별 방역일지 내용 중 부정확한 자료 (날씨오류나 비온 날 방역실시 등)가 있으 므로 방역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이 될 수 있 도록 조치 ○ 방역이 끝나는 10월 중에는 도시화된 인구밀 집지역 등에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할 것임	보 건 소 (시 정)
	2	출생아 지원사항 검토 요망	○ 군민의 욕구에 맞게 출생용품 지원의 다양 화와 불량품 처리 안내 홍보 ○ 출생아 복지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검 토, 보완 바람	보 건 소 (건 의)
	3	농어촌 의료지원 관리 철저	○ 진료소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규정에 따 라 지정받은 근무지역 및 일상생활권역내 거주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 어촌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보 건 소 (시 정)
	4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립 추진 철저	○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립부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보 건 소 (건 의)
읍· 면	1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 강구	○ 온산읍 주민복지상담실의 상담건수가 가장 많고 상담일지 정리가 잘되어 있는 반면 실적이나 내용이 부진한 읍·면이 있으므로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바람	읍·면공동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읍·면	2	산불대비 장비관리 및 산불감시원 관리 철저	○산불대비 산불방제차량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불조심의 인식확산을 위해 동파 등 위험이 없는 한 산불방제차량을 읍·면 주차장에 위치할 필요가 있고, ○산불감시원의 출퇴근 등의 관리 철저 바람	읍·면공통 (시 정)
	3	읍·면 민원업무 통일성 있는 민원처리 요망	○읍·면 민원업무가 통일성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대민업무에 더 친절 요망	읍·면공통 (건 의)
	4	업무추진비 사용 철저	○단체 등에 격려금, 격려품 지급 등에 있어 형평성, 공정성을 잘 따져서 집행	온 산 읍 (건 의)
	5	울산국제외국어고 유치 노력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과 당위성 등 검토 노력	온 산 읍 (건 의)
	6	소규모 포괄사업비 집행 검토	○소규모 포괄사업에 있어 예상되는 농로 및 용수로 공사는 사전에 당초예산 등에 편성하여 관련 부서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언 양 읍 (건 의)
	7	범서읍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 노력	○읍청사 재건립 시 범서종합복지회관을 임시청사로 사용할 경우 사전 홍보 철저 ○읍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최선을 바람	범 서 읍 (건 의)
	8	구영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노력	○구영지구 한국토지공사 환수금(83억원)으로 조성되는 생활체육공원 부지선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 주민의견을 모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범 서 읍 (건 의)
	9	해맞이 행사를 위한 해안쓰레기 청소 철저	○해안쓰레기수거인부임의 미집행액이 많으므로 해맞이 행사 대비 많은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생면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12월중에 미집행액을 집행하여 해안쓰레기 청소에 노력 바람	서 생 면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읍·면	10	서생면 청사신축의 통일성 요구	○서생면 청사부지에는 면사무소 및 복지센터,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보건소 등 3동이 설치되는데 서로 연계된 복합적인 배치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 건축에 노력 바람	서 생 면 (건 의)
	11	청량면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 노력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금으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기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청 량 면 (건 의)
	12	신산업단지 이주대책 방안 노력	○오대·오천 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의 요구사항인 택지분양면적을 60~70평에서 100평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주민의견을 파악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청 량 면 (건 의)
	13	회야댐 상류지역 발전용역 실사업 반영 노력	○용역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역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용역결과물이 실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	응 촌 면 (건 의)
	1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적극 노력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되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적극 노력 바람	두 동 면 (건 의)
	15	민원서류 신속처리 철저	○민원서류 등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 요망	두 서 면 (시 정)
	16	종합장사시설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 노력	○종합장사시설 유치건립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삼 동 면 (건 의)
	17	음식폐기물 자원화 사업장 민원해결 노력	○기존 음식폐기물 자원화 사업장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중인 신설 사업장에 대해 완벽한 악취제거시설 설치 등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	삼 남 면 삼 동 면 (건 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기 업 유 치 단	1	군청사 이전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청사 이전이 2007. 7. 4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특별한 진척 사항이 없는 등 군청사 이전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임 ○군청사 이전은 올해 초 울주군 4대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군수 부재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재원확보, 추천후보지 적정성 등 종합적 법률 검토로 사업유보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소식지 등을 활용해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할 것 	기업유치단 (시 정)
	2	지역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조건에서는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인상 시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기업유치단 (건 의)
	3	예산편성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액에 비해 집행실적이 저조함. 이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 	기업유치단 (시 정)
	4	산업단지 조성계획 도시기본계획 반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것 	기업유치단 (건 의)
	5	외국인 기업체 유치를 위한 적극적 홍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초청여비 5,600천원을 편성하여 놓고도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외국인 기업체 유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만 확보하여 사장하지 말고 외국인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기업유치단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1	봉계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계재래시장이 1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대식 건물로 새단장되었지만 시장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고 건물 또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시장경기활성화와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조례제정 등으로 재래시장의 상설시장화 방안과 2층다목적실을 헬스장 등 주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 강구 	지역경제과 (건 의)
	2	교환공무원 관리 업무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교환 근무 경력이 있는 국제감각을 지닌 고급 인력을 현재 국제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공무원의 파견, 국제 우호 업무라는 측면에서 교환공무원 관리 업무를 총무과에 이관할 것 	지역경제과 (건 의)
	3	공예품 전시회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2차례에 걸쳐 개최한 공예품 전시회의 경우 군 보조금액에 비해 가시적으로 보이는 판매실적이 너무 부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경제과 (건 의)
	4	봉계 한우불고기단지 홍보광고탑 설치사업 추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계 한우불고기단지 홍보 광고탑의 당초 설치장소를 두서 활천 784번지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불가하다 하여 의원들이 현장방문하여 위치지정한 곳을 사전보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두서 전읍 352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음 ○ 이는 사업계획시 입지요건 등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사업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 	위 생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5	한우불고기 축제 기간 중 우수비육 공급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불고기 축제 기간 중에 오히려 한우 육질이 떨어져 축제행사장보다 행사장 인근지역 업소가 봄비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불고기 축제 행사의 주목적이 우수 한우불고기 홍보에 있는 만큼 축제 기간 중에는 더 우수한 비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번영회, 축산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할 것 	위 생 과 (건 의)
	6	강양 회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 7. 30 강양을 회단지로 지정해 놓고 안내표지판 설치, 간판 전기료 지원 외에는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단지로 지정하였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위 생 과 (건 의)
	7	식품접객업소 수저소독기 설치사업 지역별 균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소 수저소독기 설치사업에 있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공정성을 기할 것 	위 생 과 (시 정)
	8	내실있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미비한 실정임 ○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만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내실을 기할 것 	위 생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9	서울 국제 음식 박람회참가행사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서울 국제 음식박람회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한우불고기 홍보관 부스만 설치하여 홍보물 배부만 하는 등 행사 내용이 매우 부실하였음 ○향후 보조금 지원시 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단체와 사전조율을 통해 지역특산물 홍보, 특산물 시식회 등 행사내용에도 내실을 기할 것 	위 생 과 (시 정)
	10	위생업소 행정 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경기에 지역업소들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단속과 병행하여 철저한 행정지도로 관련법 위반 사전예방에 노력할 것 	위 생 과 (건 의)
	11	직불제 보조금 지원 실태 및 휴경지 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농민피해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는 농민들이 지으면서도 직불제 보조금은 농지소유주가 지원받아 사업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음 ○또한 들 가운데 휴경농지가 있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음 ○이런 사례들로 인해 순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수조사 등 관리와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 	농 산 과 (시 정)
	12	친환경 채소류 학교급식지원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중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품목이 쌀과 과일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채소 등은 거의 없으므로 행정, 교육청, 농협 등이 연계하여 군지역 친환경 채소류 재배를 유도하여 급식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 산 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13	간절곶 해안길 도로 지정	○간절곶 입구에서 평동 방파제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 인근 지주들이 건축 행위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도로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부를 정리하여 주민 피해를 해결하도록 할 것	농 산 과 (시 정)
	14	예산편성철저	○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액에 비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 이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연초부터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	농 산 과 (시 정)
	15	각종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당초 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거나 기본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초 설계시 지역상황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계변경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농 산 과 (시 정)
	16	농업관련단체의 합동 행사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전진대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합하여 농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명실상부한 농민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바람	농 산 과 (건 의)
	17	불법농지전용 조치 철저	○ 불법농지전용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확인 결과 원상복구상태가 미흡하였음 ○ 향후 업무처리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하여 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농 산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18	무허가 낚시터 근절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무허가 낚시터에 대해 지적하여 왔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음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 	농 산 과 (시 정)
	19	울주배 브랜드명 통일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군 내에서 울주배, 보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배가 판매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울주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명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농 산 과 (건 의)
	20	녹색농촌 체험 마을 조성사업 지역농협 연계 추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시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술적·경제적 도움이 가능하여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방안을 검토바람 	농 산 과 (건 의)
	21	소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소부루세라병 발생농가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축 수 산 과 (건 의)
	22	축산분뇨 톱밥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농가에 지원해주고 있는 톱밥 지원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군비부담을 높이고 공급업체로 하여금 공급가격을 현시세에 맞게 공급하도록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축 수 산 과 (건 의)
23	축산지원사업 홍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톱밥지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업 등 각종 축산지원사업에 있어 신청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다수 있으므로 축산농가가 신청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축 수 산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24	나사어항도로 공부 정리	○나사원전마을에서 나사 방파제까지 어항도로를 개설해 놓고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 인근 지주들이 건축 행위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공부를 정리하여 주민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요청할 것	축수산과 (건의)
	25	간절곶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조속 완료	○당초예산 편성시 간절곶 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부기변경없이 환경조형물 설치공사에 변경 집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 ○간절곶은 울주군을 대표하는 명소인 만큼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는 시급한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공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공원과 (시정)
	26	간절곶 근린공원 조성시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달 초 의원들이 강원도 속초시 설악해맞이 공원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조형물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갖가지 볼거리들이 많았음 ○이런 곳을 벤치마킹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 간절곶 공원을 조성할 때 활용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건의)
	27	산지전용 미준공지 조기준공 조치 방안 마련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행위를 하다가 그대로 휴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으로 태풍이나 강우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건의)
	28	신불산 임도변 산악레포츠 체험시설 지도 점검	○신불산 임도변에 불법 산악 사륜 오토바이 체험장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현장확인 후 철저한 조치로 산림파괴행위를 근절할 것	산림공원과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지 역 경 제 국	29	산불감시원 사역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산불감시원은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5월말까지는 산불발생요인이 많으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산불감시원 사역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아울러 산불감시원 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불만이 없도록 할 것 	산림공원과 (건 의)
	30	작천정 벚꽃 축제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작천정에 개화기마다 많은 상춘객들이 방문하고 있음 ○ 30~40년 명성의 작천정 벚꽃길과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축제 행사를 마련한다면 울주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벚꽃축제 개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건 의)
	31	덕신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7. 덕신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최종 보고된 이후 사업에 대해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음 ○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이 더욱 지연될 것이고 도로개설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공원과 (시 정)
	32	신불산 삭도 설치 조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이 얼음골에 삭도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능동터널이 개통될 경우 산악관광 주도권을 밀양에 빼앗길 우려가 있음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삭도설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기에 삭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산림공원과 (건 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1	쌍용하나빌리지 정화조 온산종말 처리장으로 오수관로 연결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용하나빌리지의 정화조는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해 대북천을 통해 회야강으로 방류되고 있음 ○ 이런 자체 처리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회야댐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와 협의해서 처리구역을 용연종말처리장에서 온산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여 오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 설 과 (건 의)
	2	pool성 사업비 집행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하천정비 pool성 사업비 중 봉계 불고기 축제 행사장 정비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축제 행사장 정비는 불고기 축제 보조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부분임 ○ 긴급하천정비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엄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건 설 과 (시 정)
	3	상수원 보호구역내 사유재산권 보호대책 마련 및 감시원 인력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사유지에 훼손설치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근무태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면적에 비해 감시원 인력이 부족하므로 시에 요청하여 인력을 보강할 것 	건 설 과 (건 의)
	4	무단 하천점·사용 단속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화강과 회야강 주변 제방에 불법 농작물 경작이 성행하고 있음 ○ 제방유실 우려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 	건 설 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5	남천천 주변 산책로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교에서 경동청구 입구까지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는데 비상계단이 없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비상계단을 설치하기 바람 ○겨울에 냉해로 인한 잔디 고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시와 협의하여 산책로 건너편의 제방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조성을 고려할 것 	건 설 과 (건 의)
	6	태화강 상류 발원지 정비사업 조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화강 상류 발원지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상북의 경우 인근지역보다 동절기 추위가 심해 공사에 어려움이 많음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조기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할 것 	건 설 과 (시 정)
	7	광역상수도 가정인입 자부담 완화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상수도 가정 인입시 개인이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원수를 울주군에서 제공하고 그 혜택은 울산시민들이 보는 반면, 군민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조례 개정시 시에 요청하여 주민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건 설 과 (건 의)
	8	노견정리사업시 가로수 이식 후 공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견정리 사업시 가로수나 전주 등 지장물을 이설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농기계 통행 불편, 교통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미관저해까지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사계획시 지장물 이설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교통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9	주변여건을 고려한 사업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도34호선 응촌 대북입구와 등간선에 설치된 휨스의 경우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여론도 다수 있음 ○통행인들의 안전도 고려해야겠지만, 각종 사업 계획시 주변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도록 할 것 	도로교통과 (건 의)
	10	온산위험지구 선형개량공사 조속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산 덕신 백골부대 앞 도로(대로1-9호)에 대해 2005년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선형개량공사를 하였으나 편입부지 보상불가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음 ○이로 인해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도로관리청인 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잔여 구간에 대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교통과 (시 정)
	11	청량 상남 5694번지 일원(소2-7호)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와 사유지간 경계 옹벽이 너무 높아 주변 지가 하락, 건축행위시 불편 초래 등 옹벽설치로 사유재산권 피해 우려, 시야 미 확보로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불편이 있으므로 확인 후 설계변경 검토 바람 	도로교통과 (건 의)
	12	두서 구량교 재가설 공사 조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두서 구량교의 경우 마을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써 우수기에는 잠수교가 되고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가설공사가 시급함 ○당초 설계시 1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주변여건과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어 사업시행이 늦어졌음 ○향후 사업설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교통과 (시 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설도시국	13	사업추진 중 중단된 사업 조속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촌와지도로, 능산도로 등 사업추진하다가 편입부지 보상불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어 주민 불편과 함께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음 ○ 향후 공사계획시 미리 사용승낙서를 징구한다든지,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최종 보상 미협의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단사업이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도로교통과 (건의)
	14	국도 24호 정체문제 해결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서의 인구가 현재 45,000여명에 이르고 올해 연말까지 구영리에 6,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 24호의 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에서 추진하는 구영에서 다운동간 간선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로교통과 (건의)
	15	척과 초등학교 인근 노견정비 구간 인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과 초등학교 인근 노견정비 구간에 행락객들의 불법 주정차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인도를 설치해 주기 바람 	도로교통과 (건의)
	16	화물자동차 주차단속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외곽에 차고지 등록만 해 놓고 야간에 대로변에 불법주차하는 대형 화물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차단속과 함께 홍보 안내판 부착, 차고지 등록 법인에 불법주차 자제 협조공문 발송 	도로교통과 (건의)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설도시국	17	군도 11호 (구영~척과) 굴곡선 선형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영에 많은 인구 유입으로 시내로 가기 위해 군도 11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음 ○ 구영에서 척과 구간에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 선형 개량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도로교통과 (건의)
	18	신고리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정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리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 재정비시 애항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엄선하여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이 위촉하여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과 (건의)
	19	그린벨트 임지내 과수 경작 양성화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그린벨트 내 임지에 과수를 경작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주었는데 현재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불법사항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 ○ 수년간 과수원으로 과수를 경작하고 있는 순수 영농자의 경우 이를 양성화 해 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 바람 	도시과 (건의)
	20	원전 3,4호기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경기 부양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3,4호기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제품 구매 등 지역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도시과 (건의)
	21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형평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한 아파트에 2년 연속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적 편중없이 형평성 있게 시행하기 바람 ○ 또한 지난해 지원받은 아파트의 경우 당년도 우선순위에서 배제 	건축과 (시정)

구분	번호	제 목	지 적 내 용	소관부서
건 설 도 시 국	22	한우불고기 특구지역 간판정비사업 추진 만전	○ 한우불고기 특구지역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소의 독창성이 없어져 영업에 불이익이 온다는 생각으로 업소의 호응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언양·봉계 불고기 번영회와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것	건 축 과 (건 의)
	23	주택개량사업 포기분에 대한 대체 신청 철저	○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년내 미착공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포기토록 하여 대체 신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당해연도 사업포기자에 대해서는 익년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방안 검토	건 축 과 (건 의)
	24	온산소도읍 지정 · 육성 노력	○ 울주군에 4개의 읍이 있지만 현재 온양과 언양에 대해서만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중임 ○ 온산의 경우 정주권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지역개발 혜택이 타 읍지역에 비해 적은 편임 ○ 조기에 소도읍으로 지정·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건 축 과 (건 의)
	25	지속적인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시	○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연간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지도단속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주차장을 설치한 후 준공검사만 받고 주차장을 없애 버리는 등 위반사항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 ○ 건축허가 후 준공결격사유로 사전입주한 미준공 건물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건 축 과 (시 정)
	26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위촉 시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주민대표 선임	○ 풍수해 현장순찰 감시인 위촉 시 상습위험지구 인근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주민대표를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풍수해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이장의 경우 수당 이중 지급에 해당되므로 감시인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안 검토	재난관리과 (건 의)

제3편 | 기타 의정활동



Ujugun Council

군정질문과 답변

구 분	발 의 자	건 명	발 의 일
서면질문	서우규의원	군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2006. 07. 10.
서면질문	서우규의원	군청사 이전문제 추가질문	2006. 08. 01.
서면질문	한성율의원	회야강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06. 10. 16.
서면질문	이수선의원	범서읍 범서공설시장 조성 건의	2006. 11. 02.
서면질문	서우규의원	신불산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2006. 11. 28.
서면질문	이순걸의원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2007. 01. 31.
군정질문	한성율의원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및 목도상록수립과 관련하여	2007. 05. 04.
군정질문	서우규의원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하여	2007. 05. 14.
서면질문	한성율의원	온산공단내 근린공원 재정비와 관련하여	2007. 08. 21.
군정질문	이순걸의원	울주군청사이전, 울주영어마을조성 및 울주군 조직 개편과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2007. 12. 05.

〈서면질문〉 군 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 일 시 : 2006. 07. 10.
- 질문의원 : 서 우 규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군수님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심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1997년 울산광역시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재정적인 분야는 물론 각종 행정 수요도 팽창하고 있으며, 인구도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많은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에 이은 생활지원국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및 복식부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실시 등 행정제도도 매우 급속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와 문화관광에 대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출도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지금까지 지어진 시설은 물론 향후 계획된 시설이 완공되면 그 유지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운용을 필요로 하며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행정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사의 이전문제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울주군청사는 군청이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남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청사의 위치를 옥동에 잡은 결과이며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동안 좁은 군청사의 주차문제로 우리의 주인인 군민들께서 민원을 보기 위해 군청에 방문해도 차를 댈 자리가 없어 불편을 느끼고 하여 급기야 주차요금을 받는 미봉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팽창하는 행정의 결과 사무실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제2별관을 신축하였고, 또 50억을 들여 제3별관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전국의 제일가는 울주군,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이 남의 행정구역에서 더부살이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산이 없다. 남부와 서부로 분리되어 있는 지형 탓만 하실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이고 누구나 성공의 척도를 자수성가라 하여 주거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남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루 빨리 군청사를 울주군지역으로 이전하여 그동안 구겨진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진정한 군의 발전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군 청사를 중심으로 뿔뿔 뭉쳐 군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군 청사를 영원히 울산광역시 남구에 둘 것인가?
2. 만일 옮긴다면 언제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군청사 이전문제는 비용측면에서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군과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며 미래의 우리 군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현재의 군 청사는 연건평이 3,250여평으로 1979년 본관을 신축준공한 이후 민원봉사실인 제1별관을 1992년 증축하였고 제2별관을 2004년에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군청의 관내이전은 군민의 큰 관심사항으로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발전의 동력으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현안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청이전을 통한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전 군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전체군민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수긍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선부른 이전논의로 지역간·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과거 구체적인 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사사로운 개인의 의사에 따른 이전논의의 표출로 지역주민간 대결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군청사 이전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입주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소요가 예상되는 장기사업이고 또한 21세기 선진도시건설을 위한 우리 군의 미래도시계획과도 연관된 중대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청사이전은 우리 군의 주인인 군민이 이전의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써 현 상태에서 이전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하여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가능한한 재임기간 중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물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치경찰제 실시 등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에 따른 사무실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청사 부지내에 추진중인 제3별관 증축건은 청사 이전문제와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질문〉 군 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2

- 일 시 : 2006. 08. 01.
- 질문의원 : 서 우 규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군수님

지난번 군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재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청사이전 문제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이라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는 매우 긴박하며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 최고의 지자체가 되고 우리 군민이 가장 행복한 복지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뱃사람이 폭풍우를 만나 길을 헤맬 때 바라보는 북극성과 같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군도 비전을 설정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비전보다는 군청사와 같은 눈에 보이는 상징적 의미의 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 청사 이전은 매우 시급하며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청사 이전이 장기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함께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는 사업이지만 기본계획이라도 빨리 세울 수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소한 군 청사 이전 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세워 주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 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군 청사 이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밝혔듯이 군 청사 이전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군민 대부분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 청사 이전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시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추진코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칭 「청사 이전 기획단」구성, 기금조성 등에 대하여 현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 군민의 화합과 동참을 통한 성공적인 청사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청사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대구달성군 등 타 자치단체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가급적 올해 안에는 거시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청사 이전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발전을 기약하는 사업인 만큼 이전부지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울산국립대 유치방법 등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군민과 각계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모쪼록 우리군의 염원사업인 군 청사 이전 문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 일 시 : 2006. 10. 16.
- 질문의원 : 한 성 율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먼저 1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엄창섭 울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우리가 지난 여름 땀 흘린 만큼의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이며, 우리는 높고 푸른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정말 일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배산임수로 도시가 발달되어 왔으며, 제법 규모가 있는 도시에는 강이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로 돌려준 것은 물론 복개되어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였던 청계천을 개발하여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또 다른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서울의 한강과 청계천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태화강과 회야강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과 산, 바다는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은 것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과 산, 바다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開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보존과 가꾸기란 말을 사용합니다. 전, 답, 임야는 사람이 자연을 빌려 만든 것입니다. 즉 開發한 것입니다. 회야강 開發事業이란 틀린 말입니다. 지금

황폐화된 회야강을 그 옛날 모습으로 만드는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50년전의 즉 온산공단과 덕신 이주단지 건설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거나 본적이 없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가꾸고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태화강은 울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강이며 우리 군에서 발원하여 울산시민의 안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또 하나의 강인 회야강은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급물결 속에서 이수와 치수에만 국한된 하천으로 전락하여 다양한 자연경관에 걸맞는 생태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야강은 댐을 막아 우리에게 마시는 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화강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강입니다. 특히 온산과 온양 그리고 서생을 가로지르는 강 하류에는 다양한 철새들이 모여들어 보금자리를 트는 생태하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야강 인근에 덕신근린공원이 조성되고 진하자연공원이 계획되고 있지만 회야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그리고 군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가까운 수변환경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바야흐로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웅촌면과 청량면 그리고 온양읍과 온산읍, 마지막으로 서생면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회야강은 단순한 차원의 개발 계획으로는 투자의 효율을 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절곶, 진해해수욕장, 울산온천 등과 회야강을 하나의 코스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화강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가꾸어져서 신화를 창조한 것처럼 회야강도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울주군의 젓줄의 하나인 회야강의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방법의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 만약에 『마스터플랜』을 세우신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관리 주체의 문제를 따지면 준용하천이라 울산광역시에서 연차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에 울주군의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이 회야강 개발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야강에 자라나 연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울주군의 현명하고 성의있는 추진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회야강은 웅촌, 청량, 온산, 온양, 서생 등 5개 읍·면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총 연장 34.3km의 지방2급 하천으로써 하천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하천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심지 외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태화강과 같은 생태개념의 도입없이 치수 위주의 단순 하천정비에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임
- 그러나, 2004. 1. 20. 개정된 하천법(제28조 제3항)에 의거 하천공사시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하였고, 자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고조로 최근 하천정비도 치수 + 이수개념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생태복원 쪽으로 정비방향이 변화해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회야강 마스터플랜』수립은 당연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우리군은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태화강마스터플랜』에 버금가는 『회야강마스터플랜』이 빠른 시일내에 수립되어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지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군도 용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음

〈서면질문〉 범서읍 범서공설시장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 일 시 : 2006. 11. 02.
- 질문의원 : 이 수 선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먼저 18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여념이 없으신 엄창섭 울주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범서읍 천상리(4일, 9일), 구영리(매주 화요일) 도로변에 5일, 7일장이 개장되고 있으나 열악한 도시기반으로 인하여 장날이 되면 시가지 전체의 교통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구나 주도로가 폭이 편도 1차선밖에 되지 않아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장날로 인하여 기존 300여개 점포는 개점휴업상태로 어려운 경제난에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범서지역 시장형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군 주변의 상인이 아닌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100%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상가 상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며 장세를 징수받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신설되는 덕신, 봉계 시장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범서읍은 주민이 연말로 43,000명을 육박하고, 2007년에는 7만명의 인구가 예상되는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인근 읍·면에 비해 인구면이나 면적에 있어서도 공설시장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군수님께서서는 일련의 사항들을 점검하시어 선량한 주민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상가의 도회를 막을 수 있도록 범서공설시장을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와,

둘째, 만약에 공설시장조성계획을 세우신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천상과 구영은 주거지역외는 G.B.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범서시장을 조성하는데 부지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우리주민이 구매하여야 될 것입니다. 영세상인들의 살 길도 도모하고 우리지역 농민들도 도울 수 있도록 군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현재 울주군의 공설시장은 남창, 언양, 덕하, 곡천공설시장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6. 11. 4일 개장한 봉계시장이 있으며,
- 또한, 원전특별회계의 사업비로 온산에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 복지회관, 예식장 등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천상지역과 구영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5일장은 현지 주민들의 수요욕구에 따라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의 인근상가는 장날 매출이 줄어들고 일부 주민들은 상인들의 불법도로 점용으로 교통에 불편을 주는 이유 등으로 시장형성을 반대하고 있음

- 범서읍의 경우 현재 인구는 42,500여명으로 천상지역에 19,300여명, 구영지역에 14,100여명, 기타 그 외 지역에 9,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 현재 천상지역에 1,000세대, 구영지역에 5,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또는 추진 중에 있어, 2007년 이후에는 30,000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천상과 구영지역의 주민이 편리하게 시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공감을 함
- 내년도 초에는 시장건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장부지 확보와 장소선정 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시장조사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 분석 후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천상과 구영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서면질문〉 신불산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 일 시 : 2006. 11. 28.
- 질문의원 : 서 우 규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웰빙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주민의 열망과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붐이 일기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러한 시대적 조류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선 울주군이 되기 위해 그동안 '관광울주'라는 슬로건 하에 많은 계획과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신불산 관광개발' 최종 용역보고가 끝나 이제 본격적인 실천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이 살 길은 공장 등 기업체의 유치와 관광개발입니다.

그러나 기업체는 투자유치단의 활동 등 많은 노력으로 결실을 볼 수 있지만 관광은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이라는 또 다른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광개발에 노력하여 왔지만 관광산업에 있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그 어떤 지자체보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축복받은 지역이지만 그동안 울산시민의 휴식처로서의 기능에 그치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관광지로써의 도약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여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한 산이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어져 한창 더운 여름철 계곡을 찾는 인파에 그치고 마는 반쪽 관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4계절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사계절 관광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으로써 그리고 침체된 우리군의 관광사업과 그로 인해 파급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획기적인 시책을 본 의원은 삭도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영남의 알프스라고 일컫는 이유 중 하나는 산불산의 억새밭일 것입니다. 이러한 산불산의 억새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생태숲(영남알프스)사업 등을 시행하여 멋있는 생태 숲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과 호흡하며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삭도이며 삭도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는 삭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국내에서도 무주 구천동으로 이름난 덕유산의 삭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긴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삭도가 들어선다면 그것은 사계절 관광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겨울 레포츠도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의 이륙 장소로 적합해져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KTX를 타고 울주군으로 몰려들 것이며, 울주군의 고속철역사 존재가치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그동안 부진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환경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삭도설치로 환경이 파괴되는 원인을 환경단체에서는 두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삭도 설치공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삭도설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정상에서 뽀뽀로 생길 수 있는 자연 파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신체 건강할 일부사람만이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며 삭도 설치과정의 환경파괴는 새로운 공법 도입 등으로 최소화 시키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구간은 임도의 개발로 산 자체가 이미 많이 파괴되어 향후 삭도설치로 인한 등산로 구간이 폐쇄되면 오히려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삭도는 제주도 한라산의 삭도개발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라산은 세계적인 희귀식물의 보고로 우리가 보존해야할 세계자연유산으로 우리 신불산 삭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업무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일과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의 표명 그리고 확실한 계획과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신불산 관광개발을 위한 삭도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불산의 삭도를 타고 불타오르는 단풍을 즐기며 아름답게 펼쳐진 우리군을 벽찬 감동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보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신불산 삭도설치 문제는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크게 2가지 측면을 들어 신불산 삭도설치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삭도설치는 신불산군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환경보전수단으로 필수적입니다. 신불산은 우리 울산의 산악지역을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우게 할 만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휴무 확대,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신불산을 찾으면서 등산로와 그 주변 지역의 자연훼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도 설치하는 신불산군립공원지역의 자연환경훼손 심화를 개선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관광교통수단의 개발로 효율적인 자연환경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삭도시설은 경사지의 파괴된 등산로 이용자를 수용함으로써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시켜 주는 효과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신체 조건상 신불산 방문이 어려운 울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환경보존의 측면과 더불어 사회형평성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둘째, 삭도 설치하는 신불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억집단지설지구를 포함한 신불산군립공원 지역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테마의 부족과 방문객의 외면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삭도설치는 신불산 지역의 산악관광이라는 테마를 부각시켜 이 지역의 관광매력도 향상시키고, 외부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시킴으로써 침체된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자가용 차량에 의한 교통 수요를 삭도와 연계한 모노레일, 등산열차, 저공해버스 등의 활용으로 신불산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의 효과도 도모하고, 이러한 교통수단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한 몫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신불산군립공원 용역 수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삭도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제시해 주신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불산에 삭도를 설치하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삭도 설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삭도설치에 따라 동·식물생태, 자연경관 등에서 일부 불가피한 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불산 삭도 설치시 자연환경변화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대책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삭도시설 이용객에 의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도록 삭도 상부 정차장 주변과 역사군락지 내에도 탐방로를 설치하여 지정된 지역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여 이용객에 의한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토록 계획하겠습니다.

현재 신불산 삭도시설 도입과 관련하여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공원계획(변경)을 통해 삭도를 신불산군립공원의 공원 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삭도설치는 실시설계 및 정밀조사분석을 통한 세부적 기술검토와 경제성 검토,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검토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 삭도설치가 가능하므로 삭도사업 시행시 우리군에서는 삭도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허가권자인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삭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상의하여 신불산군립공원에 삭도를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친환경 관광브랜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질문〉 군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 일 시 : 2007. 01. 31.
- 질문의원 : 이 순 결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결 의원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젊은울주, 힘찬울주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하여 각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창섭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악관광개발사업(울주7봉 문화컨텐츠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영남알프스로 잘 알려져 있던 서부지역 산들에 대한 명칭을 얼마전에 울주7봉으로 명명하기 시작하였는데, 명칭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타 구와 비교하여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광역시의 5급이상 인사로 100여명이 자리를 옮겼지만, 울산시와 울주군의 인사교류는 단 한명뿐이었으며, 그것도 일반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중인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기공식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하게 계획을 변경, 사업비를 55%나 증액하였는데, 본 의원은 보통 사업계획은 기공식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첫 삽을 뜨는 기공식 이후에는 사업계획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언론 등을 통하여 올해 6월말까지 부지선정을 확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아직 선정단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5만평의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절차상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처방안이나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주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262억중 200억을 원전에서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현재 원전지원금이 아닌 사업자부담금으로 200억을 지원하려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전측과의 양해각서체결 등 지원에 대한 협의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 울주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 『울주영어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한수원(주)과 부지확보는 우리군이, 건물건립은 한수원(주)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협의 후 추진하게 되었으며,
 - 서생면 명산리 485-1번지 일원에 부지 14,730평 건물 4천여평, 수용인원 100~150명 규모로 200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4,025평에 대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 금년 1월 29일 한수원(주)와 당초 협의한대로 건립조성비 200억원과 향후 운영비 부족액의 50%를 지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회신 결과에 따라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상반기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를 착공, 2008년 하반기 개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영어마을 운영은 텔라웨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원어민강사 수급,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2 군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군 청사 이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 청사 이전은 우리 군의 정체성 확립,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입니다.
- 따라서 2월 중에 군청사 이전 후보지 위원선정단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원칙, 평가기준, 추천기준 등 입지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사 이전 적지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 동시에 행정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공공청사이전에 따른 타당성 조사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 구역인 경우 해제절차)등까지 선행되어야 할 일련의 행정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으로 부지 선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아무쪼록 당면과제인 부지선정 과정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오니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 최근 타 구와 비교하여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잘되지 않고 있음

- 우리군의 인사교류는 개개인의 전공, 축적된 경험과 능력발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합류 등 근무 희망지(연고지)로 인사교류를 희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진출·입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는 대등하고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관간의 협의 조정에서 벗어나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이동을 의미하고 또한 잦은 교류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내지 조직의 생산성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 앞으로 우리군의 간부는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자리가 아닌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체류형 지위가 돼야하며 법상 인사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법대로 하더라도 인사교류를 못할 이유가 없어 현행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4] 현재 추진중인 덕신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 덕신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은 2001년 3월 주민들을 대표한 온산읍정자문위원회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현재까지 6년여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02.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을 시공하려 하였으나 영업 손실보상 등 무허가 상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간 주민과 상인간 수십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들에 대한 보상, 장옥 배분문제, 주민들은 주민의 돈으로 장옥을 지어 상인에게 임대해 줄 수 없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 2005년 당초예산에 재확보하여 다시 추진하여 왔으나 기존 상인들과 주민들 간의 의견충돌로 집약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민과 상인간 개별적인 의견 조율로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2006.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공식을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기공식이 무산될 우려도 있고 상인들은 하루빨리 건축을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온산읍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우선 기공식부터 먼저 한 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온 것으로 써 기공식 때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 개별적인 의견 제시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건의하면 검토해 보기로 하였던 바, 기공식 이후 2006. 11. 8일 덕신 2차시장 건립 공동추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단협의회 회장 등 38명으로부터 건립계획인 2층을 3층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예식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2007년 군의회 당초예산 심의시 28% 증액된(6억5천만원) 예산을 승인받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립공사는 기공식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온산읍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설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계획도 주민과 상인의 상호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의견수렴 등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악관광개발사업(기존 영남알프스를 울주7봉으로 명명한 사유)추진과 관련하여

- 천하명산 울주7봉은 울주군의 문화관광개발의 새로운 발상으로서 기존 영남알프스라는 명칭은 사대주의적 성격을 띠는 지적과 일제 잔재가 있다는 속설 등을 비롯해서 인접한 밀양과의 차별성을 두고 관광객들에게 영남알프스의 산들이 울주군의 관광명소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 울주7봉이라는 명명을 통해 우리군의 산악관광자원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7봉마다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존의 경유형 관광지에서 전국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도모키 위함

〈군정질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목도상록수림과 관련하여

- 일 시 : 2007. 05. 04.(제91회 임시회)
- 질문의원 : 한 성 율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업창섭 울주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규모 산업단지조성과 목도상록수림에 대하여 두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6일 울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울주군 중소기업혁신포럼에서 울주군 제조업체의 네트워크 분석과 공단조성 입지분석(GIS Mapping)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울주군 기존 중소기업체의 40%이상이 용지부족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온산 지역은 대단위 온산국가공업단지가 조성되어있고, 중·대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장·단기적으로 해안을 매립하거나 처용리 일원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등 국가공업단지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삼평리 일원과 온산공단내 공업지역

은 5백 32만 7천평 중 75만 3천평이 미 개발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써 공장용지로 편입되지 않은 전·답의 잔여지가 보존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로서는 보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삼평리 일원과 온산공단 주변의 임야를 제외한 전·답 보존녹지를 해제하여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면 명실상부한 공업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지역발전과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대기업 입주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의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고, 타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산공단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교통소통이 양호하여 울산과 온산공단내의 중·대기업과 원활하게 물류수송이 가능한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적절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서는 산업단지조성 대상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수립 시 웅촌, 삼남, 삼동 지역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주변과 삼평리 일원을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할 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된 목도상록수림은 1985년 이전까지 천연의 절경과 동백나무가 울창하게 있어 봄에는 동백꽃 구경을 오는 수많은 관광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1974년 온산국가공업단지로 지정고시 되면서 주민들의 철거와 상춘객들의 잦은 출입, 온산공단의 환경오염 등 관리소홀로 황폐화되어 2001년부터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출입통제 이후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목도 상록수림에 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관리를 한다면, 온산 국가 공업단지가 공해지역이 아닌, 또 다른 울주군의 명소가 되고 자연생태계의 살아있는 학습장으로써 지역 주민과 공단근로자의 휴식공간이 되리라 봅니다.

군청사 이전, 영어마을 조성, 산악관광 자원화사업, 회야강 친수 생태하천 만들기 사업 등 거시적이고 새로운 군정 4대 중점사업의 추진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주민들의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온산 주민들의 작은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이 또한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서는 목도상록수림을 살아 숨쉬는 자연 생태계의 자연 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선도적 자치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산업단지 대상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수립시 웅촌, 삼남, 삼동 지역 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주변과 삼평리 일원을 포함해서 용역을 의뢰할 수 없는지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대상지 타당성조사는 우리 군 관내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부지 중 현지조사, 부지조건 분석, 사업성 검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지 중 최적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후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촌, 삼남, 삼동 지역 뿐만 아니라 온산공단 주변과 삼평리 일원 역시 대상지가 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춘 부지라면 군 관내 어디라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입지여건 개선과 공장부지 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을 위해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목도상록수림을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의 자연 학습장으로 개발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도상록수림은 우리군 온산읍 방도리 산13번지에 위치한 15,074㎡의 작은 섬으로서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다양한 상록수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상록수들은 울산의 자연과 한반도의 난·온대 기후를 대표하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1962년 12월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도상록수림은 빼어난 자연적인 경관과 특수한 위치성으로 인하여 많은 군·시민들이 휴식처로서 애용하여 왔습니다만

자연문화재의 훼손방지와 국가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러방면의 전문가들과 의회의 고견을 수렴한 후 출입제한 해제가 긍정적이라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하여 자연적인 보존방안과 동시에 자연생태계의 학습장으로써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의 여러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책마련에 대하여

- 일 시 : 2007. 05. 14.(제91회 임시회)
- 질문의원 : 서 우 규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의원입니다.

18만 울주군민의 복지 증진과,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협상 체결로 울산은 농·축·수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실보다 득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 구와는 달리 농업이 주요산업을 이루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많은 도·농 복합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 농업 분야인 만큼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미 FTA의 협상결과에 우리 농민들의 위축감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농업부문에서, 특히 축산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보상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이에 대한 군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최근 한우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00~150만원 정도 폭락하고, 배, 단감 등의 과수도 수출액 감소와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등 농민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공산품 수출 환경변화 및 농·축산물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농민들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축산업 육성 등 피해품목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울주군의 위상에 맞는 군 차원에서의 농민 보호정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특히, 언양·봉계 지역이 전국에서 최초로 한우불고기 먹거리 특구로 지정되는 등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이 때 한·미 FTA로 허울만 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혈통한우 육성 및 생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였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협상타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미 FTA 타결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의 피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 울주군의회 제91회 임시회 기간동안 1회추경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미 FTA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축산, 과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FTA(자유무역협정)로 모든 무역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농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서우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울산이 FTA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농가는 바로 축산농가와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이미 농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축산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축산의 대표인 '한우' 산업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언양·봉계를 한우불고기 특구로 지정해 한우사육과 수급 조절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불고기 특구단지에 한우수급을 위한 대규모 방목장조성 및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사육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한우불고기 특구로 만들어 갈 계획이며, 축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집중 추진하여 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는 품종개량과 브랜드사업을 통하여 품질 고급화로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돼지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친환경 산업기반을 육성할 것이며, 낙농은 시설 자동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과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불만에 귀 기울여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여 대처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과수농가에 대해서도 우리군은 일찍이 DDA와 FTA를 대비하여 준

비하여 왔습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수원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며 배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친환경 재배방법으로 육성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복합 친환경 배 단지를 서생면에 시범단지로 조성하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군 전체가 친환경 농업의 메카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로도 다변화하여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 할 예정입니다.

미국시장은 농산물 분야에서 일본에 이어 2대 수출시장이고 금번 한·미 FTA로 배, 단감, 파프리카 등 대미수출 주력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만큼 농산물의 미국 수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한인사회가 있는 도시에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미국 전역으로 수출 지역을 다양화 하여 많은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한·미 FTA 및 앞으로 한·EU FTA 체결을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과수 명품화에 온 힘을 다하여 황산화배, 셀라늄배의 기능성 배지원·육성, 친환경 과수단지(GAP)를 조성,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지역 과수와 차별화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과수명품화 단지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FTA를 이겨낼수 있는 농촌의 대체작물로서 고소득 수출 유망품목인 파프리카, 화훼, 천마 등을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 보급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울주가 울산의 모태로서 산업수도 울산이 지향하는 큰 울산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산업의 개방화에도 대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군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온산공단내 근린공원 재정비와 관련하여

- 일 시 : 2007. 08. 21.
- 질문의원 : 한 성 율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한성율 의원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와 지역고충을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젊고,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산공단내 근린공원의 재정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4년 온산읍의 전 지역이 온산국가 공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던 온산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온산국가공단내 입주기업체는 170여개가 있고, 15,000명의 공단근로자들이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종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1990. 1. 17일 온산읍 화산리 869번지 외 3필지에 15,700평의 근린공원이 지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곳 근린공원에는 온산공단 전망대라는 허울좋은 명칭만 있을 뿐, 옳은 시설하나 없는 공원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이기지 못하고 환경오염지역으로 주민이 철거된 그 자리에는 공

장이 들어서 연간 울주군 지방세 중 41.7%인 824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울주군의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공원내에 새로운 전망대와 팔각정, 파고라, 진입로 정비 등 휴식 공간을 설치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초가삼간에 고향을 잃은 주민들의 서러움과 애환이 담겨 있는 망향비도 함께 세운다면, 남아있는 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온산공단 근로자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작은 쉼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군수님께서서는 공해 없는 공업단지를 만드시고, 공단 전체가 한 눈에 훤히 바라 볼 수 있도록 현재 유명무실한 온산공단 근린공원을 재정비하여,

지역주민과 공단 근로자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새로이 세워지는 망향비에 대하여 1년에 한번씩 망향제를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온산공단내 유명무실한 근린공원의 진입로 정비, 휴식공간 및 망향비 설치 등 근린공원 재정비 계획이 없는지와

온산공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일부를 지원하여 1년에 한 번씩 망향제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군 공원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으로 구분되며, 우리군은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3개소, 근린공원 27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 2개소는 가지산도립공원과 신불산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45개소만 조성완료 되었으며, 간절곶 근린공원은 조성중에 있고, 진하도시자연공원 및 온산 덕신근린공원은 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조성계획승인 절차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원은 미조성지로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온산읍 화산리 869번지는 면적 51,825㎡로 1990년 1월 17일자 건고 제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되어 미조성되어 있는 화산근린공원입니다.

앞서 한성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온산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지정되어 현재 170여개의 입주기업체에 15,000명의 공단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내의 자체 휴식공간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어 미조성지로 남아 있는 화산공원에 온산국가산업단지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비롯하여 팔각정, 운동시설, 조경시설, 고향을 잃은 주민들의 서러움과 애환이 담겨있는 망향비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남아있는 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온산공단내 근로자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및 운동공간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와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7조(공원의 사무구분)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중 면적 5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광역시장이 조성권자로 되어 있어 면적이 51,825㎡인 화산근린공원의 조성계획수립 및 공원조성은 울산광역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대, 망향비 등은 공원시설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승인을 득하여 조성 사업시행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먼저 화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권자인 울산광역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산근린공원 조성계획수립시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망향비가 공원시설로 계획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하겠습니다,

조성계획수립 후 공원조성사업으로 망향비가 세워지면 망향제를 올릴 수 있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흡하겠지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기전까지 우선적으로공단근로자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휴식공간과 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울주가 울산의 모태로서 산업수도 울산이 지향하는 큰 울산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와 여가시간 증대로 생활권내에서 편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이 갖는 중요도가 날로 증가함을 인식하고

주거생활권 및 관광개발권내에서 자연경관보호와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2003년부터 공원조성계획수립 및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 관내 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군정질문〉 울주군 청사 이전, 울주 영어마을 조성 및 울주군 조직개편과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 일 시 : 2007. 12. 05.(제95회 제2차 정례회)
- 질문의원 : 이 순 결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결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젊은 울주, 힘찬 울주, 인구 30만 울주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장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장열 부군수님의 취임 이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바람이 최근 언론에 비판적 여론으로 날로 팽배해져 가는데 있어 그 진위가 무엇이며 우리군정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주군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신 서우규 의원이 지난 2006년 7월 10일과 2006년 8월 1일 2회에 걸쳐 군청사 이전에 대하여 군정 질의한 바 있으며, 당시 엄창섭 군수님은 2007년도 시정연설에서 군 청사를 이전하여 더 큰 미래로 인구 30만 울주 준비와 울산의 중심도시로서의 성장 동력 발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 군민의 자긍심과 새 시대에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 2009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군은 어렵게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 읍·면 주민대표 12명 등 총 27명의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 지역에 대한 후보지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장열 부군수님은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관계, 추천입지의 적정성 여부, 우리군의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하여 우리 의회와 청사입지선정위원회와의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2007년 11월 26일자로 전원 해촉하고 청사 이전을 사실상 백지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사입지선정위원들의 임기도 입지선정 완료할 때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는 행위와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27명의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와 각 읍·면을 통하여 후보지를 접수한 이유, 청사입지선정위원회 해촉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에 따른 현재 지방세과에서 사용 중인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6년 7월에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청사이전계획으로 1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당초 계획을 변경 하였는 바 있습니다.

청사 이전의 사실상 백지화는 이전을 너무나 갈망하는 18만 울주 군민의 기대를 하루 아침에 지워버리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어지며, 군청사 이전을 엄창섭 군수가 복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 그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는 것은 8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18만 군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결집시켜야 할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과 소신이 없는 무사안일한 처사라 생각되어집니다.

둘째, 울주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우리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영어교육 환경 제일의 “경쟁력 있는 도시 울주”로 만들어 기존 영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기유학 열풍으로 인한 경제적 폐

해를 해소하는 등 언어능력을 갖춘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서생면 일대에 총 2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000평 규모 건축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며, 건축 건립에 따른 재원 확보에 있어 당초에는 우리군에서 62억원을 지원하고, 한수원에서는 2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한수원에서는 당초 200억원으로 건물을 건립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신고리 3·4호기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한수원에서 부담할 200억원의 사업비를 2009년까지 앞당겨 달라는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거절하고 6년에 걸쳐 분할 지원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협의하였으며 향후 영어마을 건립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생각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서생면의 주민자치위원회과 이장단에서는 주민을 동원하여 한수원과 우리군에 강력한 반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 조직 개편 및 인사교류입니다.

우리군은 약 5개월 전에 조직을 개편하여 현재 4국, 1실, 1단, 18과, 의회, 보건소, 4읍, 8면의 조직으로 800여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그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조직을 개편한지도 약 5개월여 밖에 안된 상황이고 현재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조직의 개편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의원 총회나 간담회 등을 통한 우리군 의회와 사전 조직개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뒤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도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군은 울산광역시와 인사 갈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타 구청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진

급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과 울산광역시와는 서로 떼놓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조하여 각종 행사 및 예산지원에 있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더욱 강화하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필요한 사업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는 울산광역시와 원만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군이 현재 처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장열 부군수님!

우리군은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지역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보다도 발전 가능성 많은 곳이기도 하며, 인구 18만, 재정규모 3,600억원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 군단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시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도 우리군 의회 의원과 18만 울주 군민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더욱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순걸 운영위

원장께서 질문해 주신 울주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각 읍·면을 통하여 후보지를 접수한 것과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해촉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은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야 할 18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아니하면 지역간 갈등이 오히려 군정발전의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어 조례제정을 거쳐 전문가와 읍·면대표가 참여하는 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입지선정위원 결정과 청사 입지선정에만 너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되는 재원확보방안, 청사 및 부지구모의 적정성, 각종 법적 절차의 이행 등의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청사이전 위치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도 특정지역을 잠정 결정해 두고 청사이전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불식하고자 위원회에서 부지면적 16만5천㎡로 후보지 추천 기준을 정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후보지를 추천토록 하여 5개 읍·면 6개 지역을 접수받았습시다만, 예기치 못한 군수부재로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법적인 절차와 추진방안을 검토한 결과 추천된 후보지 대부분이 도시기본계획변경, 그린벨트 해제 등 법적 절차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써,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의 승인과 또한 울산광역시의 협의 및 승인 절차 없이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 그 실현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재원 확보계획도 논의된 바 없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추진하고자 유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지선정위원들께서 끊임없이 청사이전추진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부 부지역에서는 유치비용 경비를 사용하는 등 유치과열경쟁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입지선정위원장으로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군청이전이 시작단계부터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혼란된 양상에 직면하여 권한대행인 부군수로서는 그 한계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어 군청이전은 정상적인 군수체제하에서 추진하여야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심사숙고 끝에 선정위원들을 2007. 10. 26.자로 해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을 해촉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와 입지선정위원회에 사전협의 없이 결정하였다는 집행부의 경솔함에는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군 청사이전 추진관계는 내년도 울주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후보지의 적정성 등 제반 법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공정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한수원 200억원 연차적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과 서생면 주민들의 사업자 지원사업비 영어마을 건립사용 반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건립계획 발표시부터 건립비확보와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립비 확보는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한수원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사업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부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07년 1월 29일 한수원 본사에 건립비와 운영비 부족분 50%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3월 14일 실무담당자와 협의, 9월 6일에 2차 협의 후 9월 20일 회신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제가 직접 고리원전본부를 방문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한수원의 일관된 입장은 “건립 후 기부채납은 불가하며,

건립비 200억원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6년간 연차지원하고, 그 지원이 완료되는 이듬해부터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말 군 의회 의장단과 한수원 관계자 간담회시 논의된 당초 한수

원에서 영어마을을 건립 후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내용을 이행할 것과 만일,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 건립부지는 절차를 거쳐 울주군에서 한수원에 사용 승낙 하도록 하고

한수원에서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우리군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한수원 본사에 공문으로 재요청 하였습니다.

결과 회신에 따라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만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우선 원전특별지원금 151억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부족액 49억원은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시 교육청, 한수원과 협의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08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 후 개관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숙·통학형의 결정, 학생수급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영어마을 건립비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생면이장단과 구동지역발전협의회에서 2차례에 걸쳐 군청을 방문하여 영어마을 건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지역주민, 한수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 조직 개편 및 울산광역시와의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개편 및 인사교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거쳐 도로교통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군 본청 조직을 4국 1실 1단 18과로 개편하고, 또한 내년 9월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위해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새로운 조직을 개

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울산광역시와 우리군 직원들 간의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도 정기 인사시 시와의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2008년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조직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내년도 지방세과 분리 등 계획을 이번 연말로 앞당겨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여론수렴 과정에서 지방세과 분리와 일부 업무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조직 개편은 능률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당분간 좀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표출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案을 마련하게 되면 의회와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개진하여 행정조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 수련관, 문예회관, 행사비 등 예산지원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울산광역시와 원만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의회와 협력하여 우리군이 울산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울주군 청사 이전, 울주 영어마을 조성 등은 우리군이 자치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큰 진통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댐주변 수물민 망향비 및 공원 관리 촉구의 건

- 일 시 : 2008. 06. 26.
- 질문의원 : 서 우 규 의원
- 답변자 : 울 주 군 수



질문내용

19만 울주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과 복리증진 그리고 권익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장열 울주군수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댐 주변 수물민 망향비 및 공원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사연댐, 대암댐, 회야댐 그리고 대곡댐이 위치하여 울산광역시민의 식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댐 중 첫째, 대곡댐은 2004. 12. 1일 두동면, 두서면, 언양읍, 범서읍 일원 5,185km²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울산권 광역상수도로 두동면 천전리 일원에 낙동강 폐놀사건이 발생한 지난 95년에 착공하여 10년만인 2005. 6. 17일 준공하였으며, 총사업비 2,790억원이 투입되어 취수원인 대곡댐 및 대체도로 10.45km와 관로 9km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댐은 사연댐 상류에 위치하여 두 댐의 연계운동을 통하여 울산지역에 하루 22만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그 동안 수질이 좋지 않은 낙동강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울산시 지역에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댐 조성으로 상·하 삼정리, 양수정, 방리, 구석골 등 5개마을 180여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어 우리 군에서는 두동면 삼정리 산 141-3번지 일원에 2005. 3. 31일 5억여원을 투입하여 망향각, 주차장 부지조성, 망향비 등을 설치하여 고향을 떠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소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둘째, 회야댐은 울산시가 1986. 5. 14일 준공하여 생활용수 전용댐으로 조성하였고 1991. 6. 8일 청량면 중리, 응촌면 통천리 일원 4,374km²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댐 조성 당시 신전, 신리, 통천마을 등 250여 가구가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는 회야댐 상류지역 응촌면 통천리 268번지 일원에 2006. 9. 22일 1억여원을 투입하여 애향비 1개소, 팔각정자 1개소, 조경공사 등으로 고향을 떠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소공원을 조성한 바 있으나 출입구에는 철조망으로 시전장치가 채워져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2001. 9. 23일 망향공원이라는 곳에도 조성된 또 다른 망향비가 있으나 관리주체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 세 곳의 소공원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음에도 이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이곳을 찾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위 두 곳의 망향비와 소공원을 조성할 때는 무슨 이유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여 조성하게 되었는지와 지난 시절 새마을 사업으로 우선 공사 후 소유권 정리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온 사례를 들먹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시에는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정리는 물론 그 시설물의 용도에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소공원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과 울산시민의 생활용수를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군민의 건강 및 휴양과 정서생활을 함양할 수 있는 관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서우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곡·사연댐과 회야댐은 110만 울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댐 건설로 수많은 수몰민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과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우리군은 2002. 1월 청량면 동천리 산80번지 일원의 망향비 설치를 시작으로, 2005. 3월 두동면 삼정리 산 141-3번지 일원의 망향소공원 조성, 2006. 9월 회야댐 부지내 통천소공원을 각각 조성하게 되었으며, 3개 공원조성에 총 5억2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이 중 군비는 3천8백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4억8천3백만원은 수자원공사의 지원금과 시비로 충당 하였습니다.(세부 사업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조성된 소공원이 수몰민에게는 소중한 만남의 장소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후 관리부재로 인한 쓰레기와 잡초 등으로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찾아온 수몰민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군정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군은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관계법에 의거 소공원으로 지정·관리토록 함은 물론, 미비한 점은 개선하여 수몰주민에게는 만남과 화합의 장소로 지역주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미흡하나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

소공원 조성사업 현황

○ 대곡댐 망향각 및 망향비 설치공사

- 위 치 : 두동면 삼정리 산141-3번지 일원
- 공사 개요
망향각 설치(6각 정자 5평), 주차장 부지조성 1식, 망향비 설치 등
- 공사 기간 : 2004. 7. 13. ~ 2005. 3. 31.
- 공사 금액
총 공사비 : 417,572,000원 / 도 금액 : 402,820,000원/
관급자재대 : 9,292,000원 / 용지보상비 : 5,460,000원

○ 통천 소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응촌면 통천리 268번지 일원
- 공사 개요
애향비 1개소, 팔각정자 1개소, 조경공사 등
- 공사 기간 : 2006. 8. 24. ~ 2006. 9. 22.
- 공사 금액
총 공사비 : 100,596,000원 / 도 금액 : 83,496,000원
관급자재대 : 17,100,000원

○ 망향의비 비문좌대 각자 설치공사

- 위 치 : 청량면 동천리 산80번지 일원
- 공사 개요
비문좌대 설치 1식
- 공사 기간 : 2001. 12. 01. ~ 2002. 1. 15.
- 공사 금액 : 3,331,990원

4분 자유발언

≫ 일 시 : 2006. 10. 16.

≫ 발 언 자 : 서 우 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울주군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엄창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우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의 심의를 앞두고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노인들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로당의 운영실태, 설치기준 등에 대한 평소 본 의원이 느낀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읍·면에 총 348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333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는 매월 운영비 10만원과 연 100만원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기준에 다소 부적합한 온양읍 사양마을 등에 미등록된 8개 경로당은 우리군으로부터 아무런 예산지원도 받지 못하여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경로당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급증하는 노인에 대하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 8월에 자체적으로 신축기준을 정하여 경로당을 신축할시 건립부지는 행정마을의 경우 건립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 정도이며, 자연마을과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건립부지는 기부채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마을의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건축 소요경비를 모두 군에서 지원하고, 자연마을 등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군에 토지를 무상양여하여야만 건축 소요경비를 지원받아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하여 해당 마을 주민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원으로 직접 매입한 부지와 건축물은 군수명의로 공유재산취득은 당연하지만, 마을에서 힘들고 어렵게 구입한 부지를 마을공동 재산으로 취득하지 않고 무상양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군에는 행정마을이라도 집단취락권으로 분산되어 있는 자연마을이 많이 있는데 자연마을간 근접거리가 500m 정도의 거리라고 해서 경로당 건립지원이 어렵다는 관계공무원 의견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노인복지행정도 바뀌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지매입에 있어 전국적인 지가 상승과 아울러 우리군의 전 읍·면 지역에도 지가가 매우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적정한 부지매입이 가능할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엄창섭 군수님께서서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경로당 지원 및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원점에서 획기적으로 재검토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울주군이 2006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는 엄창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울주군의회와 군민 모두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개정

- 발의일자 : 2006. 08. 25.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3인
- 이 조례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됨으로써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수입원을 갖지 못하는 장수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6. 10. 02.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4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세수입의 1.5%범위 안에서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5억 7,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방자치시대의 관심사항인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6. 11. 08.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2인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빈곤 노인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세대, 모·부자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7. 04. 05.
- 발 의 자 : 이순걸 의원 외 7인
- 앞으로 울산시 울주군민 중 아이를 3명 이상 출산하는 부모들은 셋째 아이부터 복지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의 영아를 대상으로 군이 1인당 매달 3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을 받는 보장성 보험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7. 04. 23.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8인
- 2007년 4월 23일 울주군의회 송정문 의원 외 8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의 누설금지, 재산신고, 윤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규정으로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7. 07. 09.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6인
- 이 조례는 6.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7. 10. 08.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2인
-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해 울주군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당 최고 3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소득피해를 보전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된 생산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울산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7. 11. 16.
- 발 의 자 : 이순걸 의원 외 2인
- 이 조례는 지금까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울주군 용역심의 운영 규정”을 한 단계 끌어올려 외부인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학술용역의 경우 1천만원 이상 사업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시행으로 고도의 과

학기술을 응용하여야 할 사업과 시설물에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 업무를 이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사전에 심의를 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8. 01. 11.
-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외 5인
-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행사초청, 의전상의 예우, 유공자표창, 위문,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발의되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

- 발의일자 : 2008. 04. 23.
- 발 의 자 : 이순걸 의원 외 8인
- 이 규칙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고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8. 03. 13.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4인
-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포상, 향토지 공적 게재, 애국지사 조문 등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

- 발의일자 : 2008. 03. 13.
- 발 의 자 : 송정문 의원 외 4인
- 이 조례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고자 울주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로 뛰는 의정

≫ 울주군의회 영어마을 견학 실시

- 울주군 의회 의원들은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 양일간에 걸쳐 전북 전주, 경기도 파주, 성남 등 선진지 영어마을 견학을 실시하였다.
- 이 날 견학은 우리군의 영어 체험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사례를 견학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영어 체험타운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루어졌으며,
- 의원들은 타 지자체 영어마을의 철저한 벤치마킹으로 군내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영어교육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영어마을 설립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 삼성 SDI 견학 실시

-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장 등 의원 7명은 2006년 8월 29일 삼남면 가천리 소재 삼성 SDI 현지 공장을 방문, 사측으로부터 PDP 공장증설 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증설공장현장을 시찰하였다.
- 이날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삼성 SDI가 지역민들을 위한 고용창출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근지역 군 사격장 문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2006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장과 의원들은 2006년 11월 6일 2006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 이날 현장방문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전 현장 확인을 통한 내실 있는 감사 실시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어느해보다 더욱 알찬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 의원들은 이날 school zone 설치와 관련하여 응촌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춘해 대학 진입도로, 응촌 와지도로 개설공사현장, 삼동 암리 진입로 현장 등 10곳을 둘러보았다.
-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은 “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전에 현장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서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향후 예산편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현장확인 실시

-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충제)는 2007년 1월 16일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 이날 방문은 최근 아파트 재건립과 선택지조성 및 공동주택입주로 주민수가 급증하여 행정리 신설이 필요한 온양읍과 범서읍, 온산읍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행정리 신설 적정여부 및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봄으로써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해 마을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 한편, 울주군은 2008년 1월 11일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월 31일까지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울주군의회 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의회의 최종 승인절차가 끝나게 되면 울주군의 행정리는 현재 322개에서 324개로 늘어나 이장도 2명이 늘어나게 된다.

≫ 목도 상록수림 자연정화활동 실시

- 울주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2007년 1월 29일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온산읍 방도리에 소재한 목도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 이 날 자연정화활동은 천연기념물 제65호로 지정돼 있는 목도 상록수림의 장관을 직접 확인하고 해안변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해 지역의원으로서 관내 소재한 문화재의 보존에 앞장서고자 이루어졌으며, 쓰레기수거 뿐만 아니라 자연정화 캠페인 실시까지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 이 날 행사는 의원들이 관내에 소재한 천연기념물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문화재를 보존하는 이런 뜻깊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짐하였다.
- 목도 상록수림 자연정화활동 실시로 의원들은 유리병, 폐비닐 등 해안쓰레기 약 0.5ton을 수거하였다.

▶▶ 군청사 이전·산악관광개발 울주군의원 선진지 벤치마킹

-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 의원들은 2007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달성군청과 비슬산 군립공원 자연휴양림, 창녕 화왕산 등산로 및 산림욕장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 이 날 견학은 최근 울주군의 중점사업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군청사 이전과 산악관광개발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본 사업 시행시 군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몽원 군의회 의장은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집행부서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견학 첫날인 22일에는 대구 달성군청을 방문해 군청사 이전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달성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비슬산 군립공원 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수목원 조성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였으며, 2일째인 23일에는 경남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을 방문해 도시숲 및 등산로 조성·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2007년 나무심기행사 참여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7년 3월 23일 서생면 나사리 일대에서 실시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나무심기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림피해지 복구조립을 통해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려 국토녹화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 울주군 중소기업 혁신 포럼 참석

- 울주군 중소기업 혁신 포럼이 2007년 2월 26일 오전 울산대학교 경영관 215호에서 열렸다. 이몽원 울주군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주군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전의원들과 함께 축하하였고, 우리군의 경우 중소기업체의 입지가 산업단지로 일원화되지 않아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라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한편 울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소규모 공단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포럼을 마련하였다.

≫ 2007 청도 소싸움축제 견학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7년 3월 28일 경북 청도에서 실시하는 소싸움 축제 견학을 실시하였다.
- 이 날 견학은 전국적 명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한 몫을 하는 등 성공적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도 소싸움축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울주군 한우축제행사에 접목시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내실있는 축제행사를 만들어보고자 이루어졌으며, 이몽원 울주군의회 의장은 “청도군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행사내용에 대해 배울 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울주군의 한우축제행사도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관광객 유치와 울주군을 알리는 데 집행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창 기미 4·8독립만세 운동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7년 4월 8일 온양읍 남창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된 일제에 대항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울주군 남창지역 선열들의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행사에 참여하였다.
- 이 날 재현행사는 참가자 전원이 대형 태극기와 풍물놀이를 앞세우고 남창시가를 행진한 뒤 당시 나무전과 포목상이 있던 남창시장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벌였던 만세운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 고속철 공사 가축피해 쌍수마을 현장 방문

-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 의원들은 2007년 4월 24일 오전 경부고속철 공사로 송아지 사산 등 가축피해를 보고 있는 삼남 쌍수마을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4월 23일 새벽 공사현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모(65)씨의 축사에서 임신 8개월된 암소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흥분하여 마을어귀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공사와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자 주민들의 민원해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 의원들은 시공사인 극동건설 측으로부터 가축피해조사 용역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현장설명을 들은 후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 쌍수마을 이장 최은택 씨는 “고속철 공사가 시작된 이후 마을에서 사산한 한우가 몇 마리나 되며 다 자란 한우도 몸무게가 정상에 크게 못 미치는 등 피해가 극심한데도 시공사의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적절한 피해보상과 공사중단을 촉구하였다.
-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장은 가축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시공사에 당부하였고 의회에서도 시공사와 주민들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 태풍피해 복구지역 현장점검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7년 7월 3일과 7월 10일 2회에 걸쳐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피해복구 추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였다.
- 상북면 소호리와 궁근정리, 양등리 일원과 언양읍 서부리 등은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가 심했던 지역으로 현재 피해복구 공사의 추진사항을 현장 점검하여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구가 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하였다.

≫ 간절곶 조형물 설치현장 방문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7년 8월 22일 간절곶 근린공원내 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용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대상지 여건, 환경조형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 울주군의회, 국유지 불법행위 현장방문

-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 의원들은 2007년 9월 19일 오후 대암댐 상류 국유지를 무단 훼손하여 불법으로 별장을 조성한 현장을 방문하였다.
- 이날 현장방문은 언양읍 구수리 산 232-1번지 보전임지 일대에 대규모 별장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국유지를 무단 훼손하였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라 진상확인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불법건축물, 조경시설물, 진입로 확장, 슈아베기 등 불법 산림훼손현황을 확인하고 1만여㎡에 달하는 불법시설물이 행정예에 의해 수년 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위 및 향후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 송정문 부의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경찰청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에서도 공정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관련 현장방문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7년 10월 18일 삼남 방기리 공유지내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던 농수산물 유통직관장 건립이 경쟁력저하를 이유로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은 배, 단감, 시설채소 등의 농산물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수확기 위주 출하로 인한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보관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삼남면 방기리 590-3번지 공유지내에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수립중에 있다.
-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농산물 물류창고건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획정리지구내 지가가 상당한 공유지는 앞으로 활용가능성이 많으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류창고는 지가가 낮은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해 사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언론보도 및 집단민원에 따른 현장방문 실시

-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는 각종 언론보도 및 주민집단민원 발생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안을 초기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 이러한 일환으로 2008년 3월 7일에는 국립대 건립에 따른 이주 문제점과 언양동부주공아파트 지반침하, 삼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신축부지를, 2008년 3월 12일에는 천황산 일원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예정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 및 현안을 파악하였다.
- 「국립대 건립에 따른 이주 문제점」 언양읍 반연리 이주지역 주민들의 반연리 산72번지 임야에 이주택지 조성요구에 대해 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대 건립을 추진중인 울산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 「연양동부주공아파트 지반침하」 연양읍 동부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지역 대단위 아파트(경남 아너스빌) 건립 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 내 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주민과 관계공무원, 경남 아너스빌 공사관계자와 함께 현장실사를 한 후 아파트주민과 공사관계자가 서로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악취발생에 대한 피해우려로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울주군에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건축물허가신청을 반려처분 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1심에서 사업자가 승소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 「천황산 일원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경상남도과 밀양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예정지인 천황산 일원을 방문하여 울주 7봉의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초대형 풍력발전기 22기를 건설할 계획인 '밀양풍력발전단지'는 울주군과 밀양시의 경계지점인 능동산, 천황산 일원의 능선을 따라 설치되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 약 50MWh는 천황산~배내골 주암계곡~신불산~단조늬~삼남면 연양변전소까지 약 18㎞ 구간에 대해 송전철탑 등을 설치하여 송전 및 판매할 계획이어서 울주군을 포함한 영남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의원들은 주장하였다.

≫ 2008년도 주민과의 대화 참석

- 울주군의회(이몽원 의장) 의원들은 2008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2008년도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여 군정현안사항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구별로 하루에 3개 읍·면씩 실시되었으며 집행부의 국·실·소장 및 담당 읍·면장이 참석해 주요 군정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등을 청취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등을 청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현장방문 및 닭고기 시식

-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2008년 5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등 방역 및 이동제한 초소 현장을 방문했다.
- 4월 28일 웅촌면 대북리에서 발생한 닭 폐사의 원인이 5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체제로 전화하여 총력방역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는 시점에서 군민과 함께한다는 취지아래 이동 방역통제소를 방문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과 통제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또한 의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동참하여 노력할 것이며 원활한 예산지원 등 피해농가 및 지역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7일에는 울주군청 구내식당에서 울주군 의원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의 안전성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삼계탕을 점심으로 먹으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계농가와 음식점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리고 다음날인 8일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종식 및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예비비 선집행에 따른 집행부의 사전 설명회를 통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뒤돌아보는 제4대 전반기 의정활동

-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는 지난 2006년 7월 4일 제4대 울주군의회를 개원하면서 울주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제85회~제98회 임시회까지 임시회 10회, 정례회 4회 총 172일의 일정으로 정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167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매월 의원정례간담회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산악관광개발사업 발굴 및 자료조사를 위한 산악탐방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활용한 각종 회의진행 및 회의록 CD 제작 등 전자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 주민의 여론청취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의원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왔다.
- 의회관계자는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군민에 의해, 군민을 위한 의정이라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회기운영

- 울주군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기타 주요안건 등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및 정례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매월 15일 의원정례간담회를 열어 의회 협의사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반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내실 있는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지난해까지 90일이었던 회기일수를 올해부터는 100일로 늘려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심의 및 현장활동을 강화했다.

» 직접 찾아가는 의정활동

- 울주군의회는 주민불편사항 및 각종민원 해소를 위해 비회기중에도 각종 언론보도 및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 내실화를 꾀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일환으로 국립대 건립에 따른 이주 문제점, 언양동부주공아파트 지반 침하, 삼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신축, 천황산 일원 밀양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주민의견 및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산악관광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견학·체험학습 중심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의정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울주군의 명산을 찾아 등산로 확인 및 등산객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올 1월에는 지역별로 읍·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읍·면장의 격려와 그 지역의 주요현안사항 청취와 의견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고충에 대한 상호 협조와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한층 더 피부에 닿는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원들은 밝혔다.

» 전자의정활동 강화

- 특수시책으로, 전자정부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임시회 및 정례회 시 노트북 활용을 통하여 안건내용 확인 및 법령 등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 파악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또한 회의록을 책자가 아닌 전파파일로 CD에 저장 제작 후 배포·보관하여 종이문서를 줄여 예산절감 효과 및 전자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국회 및 국무회의, 기업체 등 각종회의에 있어 컴퓨터를 이용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울주군의회에서도 작년 11월 제95회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원 개인별 노트북을 이용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트북에 안건 및 회의자료 파일을 입력 활용하며 각종 법령 등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심사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도 면에서는 종이문서와 함께 시범적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순수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각종 임시회 및 정례회 후 회의록을 책자형으로 발간하여 배포·보관하던 것을 2008년 1월 제96회 임시회부터 CD로 제작하여 배포·보관하고 있다. “전자적 파일관리로 종이문서 감소와 예산절감 및 보관공간 축소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전자의정의 이미지 홍보로 더 발전된 의회 위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의회관계자는 밝혔다.

부록



Ujugun Council

제4대 의원 후보자별 특표현황

제4대 의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 비례 군의원

(최종)

읍면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명) / 득표율(%)		무효 투표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계 (부재자)	127,642 (2917)	73,773 (2602)	57.80%	20,671 (885)	50,465 (1635)	2544 (78)	
득표율				28.02%	68.41%	3.45%	
제 1 선 (가)	소 계	37,380 (619)	20,261 ()	54.20%	5,529 27.29%	14,052 69.35%	665 3.28%
	온산읍	15,952 (227)	8,167	51.20%	2,351 28.79%	5,522 67.61%	288 3.53%
	온양읍	15,586 (279)	8,579	55.04%	2,494 29.07%	5,853 68.22%	224 2.61%
	서생면	5,842 (113)	3,515	60.17%	684 19.46%	2,677 76.16%	153 4.35%
제 2 선 (나)	소 계	45,777 (1009)	25,123 ()	54.88%	7,438 29.61%	16,863 67.12%	814 3.24%
	범서읍	26,489 (633)	15,004	56.64%	4,797 31.97%	9,737 64.90%	466 3.11%
	청량면	11,779 (195)	6,248	53.04%	1,631 26.10%	4,419 70.73%	193 3.09%
	웅촌면	7,509 (181)	3,871	51.55%	1,010 26.09%	2,707 69.93%	155 0.04
제 3 선 (다)	소 계	44,485 (1289)	25,787 ()	57.97%	6,819 26.44%	17,915 69.47%	987 0.04
	언양읍	18,070 (405)	10,211	56.51%	2,612 25.58%	7,314 71.63%	281 0.03
	두동면	3,378 (341)	2,405	71.20%	548 22.79%	1,550 64.45%	254 0.11
	두서면	3,256 (138)	2,098	64.43%	565 26.93%	1,434 68.35%	100 0.05
	상북면	7,351 (156)	4,260	57.95%	1,288 30.23%	2,813 66.03%	153 0.04
	삼남면	10,809 (178)	5,819	53.83%	1,517 26.07%	4,141 71.16%	159 0.03
	삼동면	1,621 (71)	994	61.32%	289 29.07%	663 66.70%	40 0.04

≫ 군의원 - 가

(최종)

읍면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명) / 득표율(%)						무효 투표수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	무소속	무소속		
				한재화	이몽원	이순걸	김민식	김용원	한성율		
계 (부재자)	37,380 (619)	20,816 (555)	55.69%	1,844 (95)	4,846 (163)	5,337 (137)	1,998 (45)	2,718 (26)	3,593 (72)	479 (17)	
득표율				8.86%	23.28%	25.64%	9.60%	13.06%	17.26%	2.30%	
제1 선거	소계	37,380 (619)	20,261 ()	54.20%	1,749 8.63%	4,683 23.11%	5,200 25.67%	1,953 9.64%	2,692 13.29%	3,521 17.38%	462 2.28%
	온산읍	15,952 (227)	8,167	51.20%	536 6.56%	2,573 31.50%	602 7.37%	653 8.00%	828 10.14%	2,803 34.32%	174 2.13%
	온양읍	15,586 (279)	8,579	55.04%	938 10.93%	1,315 15.33%	3,934 45.86%	1,129 13.16%	693 8.08%	399 4.65%	169 1.97%
	서생면	5,842 (113)	3,515	60.17%	275 7.82%	795 22.62%	664 18.89%	171 4.86%	1,171 33.31%	319 9.08%	119 3.39%

≫ 군의원 - 나

(최종)

읍면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명) / 득표율(%)						무효 투표수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민주 노동당	무소속		
				최인식	송정문	이수선	이한걸	홍정연	이동석		
계 (부재자)	45,777 (1009)	26,028 (905)	56.86%	4,666 (255)	5,287 (221)	5,051 (126)	4,560 (95)	3,913 (95)	2,024 (102)	524 (10)	
득표율				17.93%	20.31%	19.41%	17.52%	15.03%	7.78%	2.01%	
제2 선거	소계	45,777 (1009)	25,123 ()	54.88%	4,411 17.56%	5,066 20.16%	4,925 19.60%	4,465 17.77%	3,818 15.20%	1,922 7.65%	514 2.05%
	범서읍	26,489 (633)	15,004	56.64%	3,334 22.22%	3,572 23.81%	4,090 27.26%	596 3.97%	2,702 18.01%	469 3.13%	240 1.60%
	청량면	11,779 (195)	6,248	53.04%	678 10.85%	828 13.25%	465 7.44%	3,081 49.31%	750 12.00%	292 4.67%	152 2.43%
	응촌면	7,509 (181)	3,871	51.55%	399 10.31%	666 17.20%	370 9.56%	788 20.36%	366 9.45%	1,161 29.99%	122 0.03

≫ 군의원 - 다

(최종)

읍면별	선거인수 (부재자)	투표인수 (부재자)	투표율	후보자별 득표수(명) / 득표율(%)					
				열린우리당 김지호	열린우리당 정위진	한나라당 권영호	한나라당 김영철	한나라당 조충제	
계 (부재자)	44,485 (1289)	26,929 (1142)	60.54%	2,404 (128)	1,283 (56)	3,945 (192)	2,947 (105)	3,091 (103)	
득표율				8.93%	4.76%	14.65%	10.94%	11.48%	
제 3 선 (다)	소 계	44,485 (1289)	25,787 ()	57.97%	2,276 8.83%	1,227 4.76%	3,753 14.55%	2,842 11.02%	2,988 11.59%
	언양읍	18,070 (405)	10,211	56.51%	741 7.26%	745 7.30%	1,411 13.82%	872 8.54%	2,125 20.81%
	두동면	3,378 (341)	2,405	71.20%	47 1.95%	29 1.21%	96 3.99%	47 1.95%	53 2.20%
	두서면	3,256 (138)	2,098	64.43%	81 3.86%	53 2.53%	165 7.86%	70 3.34%	86 4.10%
	상북면	7,351 (156)	4,260	57.95%	999 23.45%	131 3.08%	1,411 33.12%	208 4.88%	247 5.80%
	삼남면	10,809 (178)	5,819	53.83%	290 4.98%	238 4.09%	533 9.16%	1496 25.71%	397 6.82%
	삼동면	1,621 (71)	994	61.32%	118 11.87%	31 3.12%	137 13.78%	149 14.99%	80 8.05%
읍면별	후보자별 득표수(명) / 득표율(%)						무 효 투표수		
	민주노동당 송수근	무소속 김진근	무소속 서완영	무소속 서우규	무소속 이종욱	무소속 정희식			
계 (부재자)	2,440 (83)	1,928 (55)	2,140 (165)	4,408 (180)	585 (21)	749 (22)	946 (29)		
득표율	9.06%	7.16%	7.95%	16.37%	2.17%	2.78%	3.51%		
제 3 선 (다)	소 계	2,357 9.14%	1,873 7.26%	1,975 7.66%	4,228 16.40%	564 2.19%	727 2.82%	917 0.04	
	언양읍	1,264 12.38%	312 3.06%	524 5.13%	1,256 12.30%	183 1.79%	457 4.48%	319 0.03	
	두동면	49 2.04%	16 0.67%	79 3.28%	1,784 74.18%	13 0.54%	34 1.41%	105 0.04	
	두서면	85 4.05%	30 1.43%	1,060 50.52%	355 16.92%	12 0.57%	29 1.38%	73 0.03	
	상북면	313 7.35%	76 1.78%	90 2.11%	232 5.45%	296 6.95%	83 1.95%	171 0.04	
	삼남면	583 10.02%	1270 21.83%	156 2.68%	494 8.49%	45 0.77%	109 1.87%	207 0.04	
	삼동면	63 6.34%	169 17.00%	66 6.64%	107 10.76%	15 1.51%	15 1.51%	42 0.04	

의정백서 (2006. 7. 1.~2008. 6. 30.)

2008. 12월 인쇄

2008. 12월 발행

발행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발행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
(TEL : 257-8107)

인쇄 : 신정종합인쇄사

〈비매품〉

Ujugun Council



울산광역시 울주군의의회